

# 『원양어업 통계조사』

## 통계정보보고서

2024. 9.

본 이용자용 통계정보보고서는 정기통계품질진단 수행과정에서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한 보고서로 작성기준 시점에 따라 현재의 통계작성 정보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작성일자: 2024.9.1.



해양수산부

# 〈차 례〉

I. 조사개요 .....	1
II. 통계의 작성목적 및 이용 .....	5
III. 조사설계 .....	15
IV. 자료수집 .....	59
V. 행정자료 활용(행정자료 활용통계) .....	88
VI. 자료처리 .....	91
VII. 통계추정 및 분석 .....	139
VIII.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	140
IX. 통계기반 및 개선 .....	170
X. 참고문헌 .....	172

## ◆ 보고서 개요 ◆

이 보고서는 「원양어업 통계조사」 통계를 생산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설명한 것이다. 보고서의 작성목적은 조사의 배경, 연혁, 이용자 및 용도와 조사에서 이용되는 개념과 방법론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알고자 하는 통계작성 담당자(통계 전문이용자, 품질진단자 또는 승인담당자)에게 통계과정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조사표개발, 표본설계, 자료수집, 자료 입력 및 처리, 통계추정 및 분석, 통계공표·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통계기반 및 개선 등에 대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

# I. 조사개요

## 1. 통계명

- 원양어업 통계조사

##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18조에 의해 일반통계 제114048호로 승인된 통계조사

## 3. 조사방법

- 전문 조사원에 의한 사업체 방문면접조사
  - 이메일, 면접 방식 병행

## 4. 통계작성기관/부서명

- (주관)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실시) 한국원양산업협회 해외수산협력센터

## 5. 조사 및 공표주기

- 조사기준기간 : 2023. 1. 1. ~ 12. 31.
- 조사실시기간 : 2024. 4. 15. ~ 5. 9.
- 결과공표시기 : 2024. 8. 31.
- 조사/공표 주기 : 1년

## 6. 통계작성과정 개관

- 일정 및 일정별 수행 내용(2023년)

업 무	· 수 행 내 용	일 정
조사기획	· 통계조사 기본계획 수립	1~2월
	· 이용자 의견조사 및 사전회의 실시	
조사준비	· 조사표류 설계(조사표류 보완 및 확정, 조사지침서 등 작성)	3월~4월
	· 조사대상 확정(조사명부 작성)	
	· 조사인력 관리(조사인력 채용, 조사원 교육, 업무분장 등)	
조사실시	· 방문, 이메일, 팩스조사 병행 실시 및 조사기간 내 실사지도 · 응답 오류, 누락건은 전화조사로 보완	4월~5월
자료처리, 데이터크리닝, 통계 추정	· 수신조사표 내용검토 및 수정입력	5월~8월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자료처리	
분석 및 공표	· 조사 결과 분석 및 결과표 작성	8월
	· KOSIS 입력 및 공표	
통계관리 및 이용자 서비스	· 보고서 발간 · 통계설명자료 업데이트	8월~12월

## 7. 조사연혁

### □ 최초 개발 시기

- 해양수산개발원과 원양산업협회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원양어업 통계조사 개발, 2012년 11월23일 통계작성승인(승인번호 제11448호) 받음

### □ 개발배경

- 2008년 원양산업발전법 제정 이후 원양어업의 산업적 면모를 갖추고 주요 조업 경쟁국 및 국내 업종간 비교분석을 통해 산업발전 전략을 세우며 국내 원양산업 기업체가 해외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짐
- 이에 따라 원양산업에 대한 현황, 생산량, 종사자, 경영실태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함으로써 원양산업 정책의 기초자료 및 원양산업자들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 □ 변경 또는 개편 이력

- (2010년) 원양산업 총조사를 위한 기초조사 연구용역
  - 연구기관 : (주관)해양수산개발원, (공동)부경대, 디오피니언
  - 원양산업 총조사 시스템 구축, 조사표 개발, 표본조사 실시
- (2011년) 원양산업 총조사 연구용역
  - 연구기관 : (주관)해양수산개발원, (공동)한국원양산업협회
  - 변경사항
    - ① 재무제표 및 사업종류 구체화
    - ② 종사자 육상직(한국인, 외국인), 해상직(한국인, 외국인) 구분
    - ③ 신규투자계획 추가
    - ④ 승선원 현황 선장, 기관장, 직원(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부원(갑판부 등) 구분
    - ⑤ 연간 어로원가 세부항목 구분
    - ⑥ 생산 및 판매현황 세부항목 구분
    - ⑦ 행정자료 활용 확대(원양산업 통계연보 수출 통계자료 대체)
- (2012년) 원양어업 통계조사 연구용역
  - 연구기관 : (주관)해양수산개발원, (공동)한국원양산업협회, 포커스컴퍼니
  - 통계작성 승인('12.11.23, 승인번호 11448호)
- (2013년) 원양어업 통계조사 사업
  - 수행기관 : 한국원양산업협회
- (2014년) 원양어업 통계조사 사업
  - 수행기관 : 한국원양산업협회
  - 변경사항
    - ① 조사명, 조사법적근거, 협조요청, 문의사항 연락처 등 조사안내사항 추가
    - ② 조사항목 제목 변경

- ③ 신규투자계획 및 생산전망 삭제
- ④ 유형자산을 재무상태표 내 유형자산의 하위항목으로 삽입
- ⑤ 판매비와 관리비를 손익계산서 내 판매비와 관리비 하위항목으로 삽입
- ⑥ 여성가족부의 성별구분 요청에 따른 성별 구분 추가
- ⑦ 재무상태표 내 단위변경 및 현금및현금성자산, 기타당좌자산, 유형자산 등 항목 추가
- ⑧ 손익계산서 내 단위변경 및 매출총손익, 영업손익, 판매비와관리비 등 항목 추가
- ⑨ 제조원가 내 단위변경 및 당기총제조비용, 기초재공품원가, 노무비 등 항목 추가
- (2015년) 원양어업 통계조사 사업
  - 수행기관 : 한국원양산업협회
  - 변경사항
    - 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조직규모에 중견기업 추가
- (2016년) 원양어업 통계조사 사업
  - 수행기관 : 한국원양산업협회
  - 변경사항
    - ① 국가승인번호 변경(11448호 → 114048호)
    - ② 조사표 명칭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2016 원양어업 통계조사 원양어업(단독) 조사표	2016 원양어업 통계조사 조사표
I. 원양어업(단독) 기업체 일반현황	I. 기업체 일반현황
II. 원양어업(단독) 기업체 생산·수출실적	II. 기업체 생산·수출실적
III. 원양어업(단독) 기업체 경영실태	III. 기업체 경영실태

- ③ 법인등록번호 추가
- ④ 결과표 분류체계 개선(원양어업, 도소매업, 제조업, 기타 → 원양어업, 기타)
- ⑤ 종사자현황 내 명칭변경(월평균 종사자수 → 종사자수)
- ⑥ 국가별 어종별 수출현황 추가
- ⑦ 제조원가의 감가상각비는 기타경비에 포함되었으나 기타경비를 개별항목으로 분리
- ⑧ 조업현황 추가
- ⑨ 선원현황 내 명칭변경(월평균 승선원수 → 조업 승선원수)
- (2017년) 원양어업 통계조사 사업
  - 수행기관 : 한국원양산업협회
  - 변경사항
    - ① 조사시기 변경(매년 6월~7월 → 매년 5월~6월)
    - ② 결과표 허가기준 기업체 및 어선 현황 추가
- (2018년) 원양어업 통계조사 사업
  - 수행기관 : 한국원양산업협회
  - 변경사항
    - ① 조사시기 변경(매년 5월~6월 → 매년 4월~5월)

② 공표시기 변경(매년 9월 → 매년 8월)

○ (2019년) 원양어업 통계조사 사업

- 수행기관 : 한국원양산업협회
- 변경사항

① 조직규모 분류체계 변경(대기업, 중소기업 →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 (2020년) 원양어업 통계조사 사업

- 수행기관 : 한국원양산업협회
- 변경사항

① 결과표 해역별 기타항목 추가(태평양 기타, 대서양 기타, 인도양 기타, 남빙양 기타)

○ (2021년) 원양어업 통계조사 사업

- 수행기관 : 한국원양산업협회
- 변경사항

① 조사표 선원임금 조사방법 변경(월평균급여액 → 총연간급여액, 승선기간(개월))

## II. 통계의 작성목적 및 이용

### 1. 통계의 작성목적

#### □ 작성 배경

- 원양산업발전법 제정 이후 원양어업의 산업적 면모를 갖추기 위한 기초통계 마련이 필요
- 국내외적으로 FTA 체결, 입어국의 갑작스런 조업규제 및 쿼터 상실, 입어국 및 해외 진출국의 투자정책 변화 등 다양한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규모 산정, 신속한 정책 방향 설정 등을 위해 신뢰성 높은 통계의 작성 필요성 대두

#### □ 조사 목적

- 원양어업 국적선사의 일반·생산·수출·경영실태와 그 업체의 어선별 생산·선원현황, 어로원가 등을 파악
- 국가의 원양어업 정책수립, 연구기관의 연구분석·평가, 관련 업체의 원양어업 활동을 위한 기초 정보로 제공

#### □ 활용 분야

- 원양산업 정책에 활용
  - (고유현황) 사업체 단위의 고용구조 및 노동수요 파악
  - (비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활용현황, 비정규직법 제도 효과 등을 파악
  - (생산현황) 국내외 FTA 체결, 입어국별 입어료 및 쿼터 협상 대비 해역별, 업종별, 어종별 생산현황 파악, 어선규모별, 업종별 생산성 비교
  - (수출현황) 국내외 FTA 체결 대비 어종별 수출현황 파악
  - (경영실태) 국내외 정책에 따른 원양어업 경영실태
  - (선원현황) 한국인, 외국인 선원 현황 파악을 통해 외국인 수급 관련 정책 수립
  - (어로원가) 해역별, 업종별 어로원가 비교하여 업종별 정책 마련
- 각종 사례집 및 연차보고서 게재
  - 원양어업 통계조사, 해양수산 통계연보, 해양수산 주요통계 등
-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자료제공
  - 해양수산통계시스템(<https://www.mof.go.kr/statPortal/>), 통계포털(<http://kosis.kr>),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https://www.ofis.or.kr>) 등
- 원양어업 통계를 통해 정책수립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정책은 원양산업발전법에 의거해 5년 단위로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에서는 원양업체 및 어선현황, 어종별·해역별 생산현황, 한국인·외국인 선원현황 등의 통계를 활용하여 원양어업 정책 목표를 수립

## □ 관련 법령 간 사전 검토 내용

### ○ 원양산업발전법

- 우리나라 원양산업과 관련한 대표적인 법은 원양산업발전법이며 기존에 다른 여러 법에 산재해 있던 원양관련 법제도를 한 데로 묶은 법이라는 측면에서 원양산업총괄법이라고 할 수 있음
- 원양산업발전법 상 원양어업을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수역에서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사업으로 정의함
- 원양어업과 관련해 사전허가제와 조업실적 보고의무 규정을 둬으로써 국내 법인인 원양어업자에 대한 기본현황, 원양어업에 활용되는 어선정보 및 조업활동 등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정보 파악이 가능하도록 함
- 원양산업발전법 제19조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원양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각종 통계의 확보 및 활용 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5조는 원양산업협회가 원양어업 통계조사의 작성 및 관리 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함

### ○ 수산물품질관리법

- 수산물품질관리법은 수산물의 안정성 강화 및 수산가공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해당 법에 따르면 수산물은 이식용수산물을 제외한 모든 수산동식물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연근해 수산물뿐만 아니라 원양수산물까지를 관리대상으로 함
-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우리나라 어선에서 이루어지는 선상수산물가공업의 경우 실질적인 가공량, 판매량 등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못함

### ○ 어선법

- 어선법은 어선의 건조·등록·설비·검사 및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어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어선을 어업,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매우 포괄적인 정의를 내림
- 어선법에 따라 어선 건조 등에 대한 허가제와 어선 등록제, 어선 검사제 등을 통해 원양어선 및 연근해어선에 대한 관리와 함께 국가승인통계인 등록어선통계가 작성되고 있음

### ○ 선원법

- 선원법은 선원의 직무, 근로조건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기본법으로서 어선법과 선박법에 의한 대한민국 선박, 대한민국 국적을 전제로 한 용선선박 등에 적용하며 선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선박 안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된 자로 선장, 해원 및 예비원을 모두 지칭함
- 선원법에 따라 승선 전 혹은 승선을 위한 출국 전에 해양수산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며 승하선 교대 사실 및 성명 등을 기재, 승무원 명부에 대해 해양수산관청의 공인을 받도록 함
- 또한 국가승인통계인 한국선원통계를 작성하며 연근해어선 및 원양어선 등의 선원 현황을 조사함

### ○ 관세법

- 관세부과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할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관세법은 수산물을

비롯한 모든 재화의 수출입 관련 규정을 포괄하는 법안으로 모든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기타 시행령으로서 정한 사항을 반드시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함

- 원양어업의 경우 ①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영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한 수산물의 경우 ② 국적선이 외국선박과 협력해 원양모선식 어업허가를 받고 외국과 협상에 의해 해외수역에서 해당 외국의 국적을 가진 어선과 공동으로 수산물을 채집 또는 포획한 경우 ③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자가 외국과 합작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이면서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를 한 자가 생산한 어획물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됨
- 관세 면제와는 별도로 수입신고는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원양산 수산물의 수입현황이 일부 파악될 수 있으나 원양산을 별도로 구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 관련 통계 간 사전 검토 내용

○ 국내 어업 관련 승인통계는 다음과 같음

- 국내 어업 관련 통계는 다수 존재하지만 원양어업 단독 결과표가 생성되어 직접적인 비교 가능한 통계는 한국선원통계, 등록어선통계, 어업생산동향임

	기업경영분석	어업경영조사	어업법인조사	한국선원통계	등록어선통계	어업생산동향
기관	한국은행	수협	해양수산부	(주관)해양수산부 (실시)선원복지 고용센터	해양수산부	통계청
주요 목적	국내기업의 경영 실태를 계수적으로 파악하여 정부의 산업정책, 중앙은행의 금융정책,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및 민간 기업의 경영합리화 등에 필요한 기초 자료 제공	주요 어업의 경영 실태를 계수적으로 파악, 각종 경영지표를 산정하여 어업경영 합리화 및 수산정책을 위한 통계자료를 제공	농어업법인의 생산 구조와 운영형태 및 경영수지 등에 관한 실태와 변화추이를 파악하여 농수산 정책수립 및 관련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 제공	선원수급 및 선원 복지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	어업의 기본적 생산 수단인 어선의 등록 사항을 파악하여 수산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수산물의 수급정책, 한일, 한·중 어업 협정, 수산자원 회복 사업, 원양산업 육성 등 수산업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및 수산관련 연구기관·단체 등의 연구 분석 및 평가 자료로 활용 제공
조사 대상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하는 상장기업과 각 업종을 대표하는 주요 비상장기업	어업을 영위하는 경영체	대법원에 법인등기가 등록된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선원법 적용대상 선사의 선박 및 선원	시·군·구에 등록된 모든 어선	일반해면(연근해) 어업, 천해양식어업, 내수면어업, 원양 어업의 생산량, 생산 금액, 어법, 품종, 판매상태
작성 주기	1년	1년	1년	1년	1년	월
공표 시기	조사기준년도 익년 10월	조사기준년도 익년 7월	조사기준년도 익년 5월	조사기준년도 익년 5월	조사기준년도 익년 12월	익월
조사 방법	가공통계	면접조사	면접조사	각 선사에 조사표 배부 후 자료 취합	어선등록관리 시스템에 의해 전산입력 처리	행정자료 활용, 계통조사

○ 기업경영분석

- 국제청 법인세 신고법인 중 어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등 법인세 신고자료를 가공하여 기업 경영규모, 수익성, 재무구조, 생산성 등을 작성, 분석
- 전 산업, 어업대비 기업 경영규모, 수익성, 재무구조 등 비교 분석 가능

- 어업경영조사
  - 연근해어업을 영위하는 어업 경영체의 자산 및 부채현황, 조업상황, 수지상황 등을 조사
  - 어업 대비 원양어업 자산 및 부채현황 등 비교 분석 가능
- 어업법인조사
  - 국내 어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운영형태, 경영수지 등을 조사
  - 어업 대비 경영수지 등 비교 가능
- 한국선원통계
  - 국내 선원법 적용대상 연근해어선, 외항선, 내항선, 원양어선 및 선원 현황 조사
  - 원양어업 통계조사와 한국선원통계의 선원통계 일치화방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양 조사는 월평균 임금에 대한 정의가 다르고, 선원 수 산출 기준에 차이가 있어 일치화하기 어려운 것으로 논의

원양어업 통계조사	조사 명칭	한국선원통계
조사기준년도 12월 31일 기준 해양수산부로부터 원양허가를 받은 모든 어선 중, 조사기준년도 1월 1일~12월 31일 기간 내 조업실적이 있는 어선 대상. 원양협회로부터 자료를 받아 선박현황 작성	선박 현황	조사기준년도 12월 31일 현재 운항 중인 어선 대상.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로부터 자료를 받아 선박현황 작성.
조업 실적이 있는 어선의 조업시 평균 조업 선원 수 기입.	선원 현황	조사기준년도 12월 31일 현재 조업중인 선원. 해양수산부 승하선자 DB 활용. 12월 31일 기준 어기 종료한 선박의 선원 수는 포함되지 않음.
조업 기간에 대한 월평균임금 공표. 1월 1일~12월 31일 기간 선원에게 지급한 연간급여액과 승선기간 조사하여 월평균임금=(연간 급여액/평균 조업 선원 수)/승선기간 계산	선원 임금	1개월에 대한 월평균임금 공표. 조사기준년도 12월 31일 기준 최근 3개월 지급한 평균 임금 조사. 생산수당은 전체 생산수당을 12로 나누어 계산(12개월)
조사시 내국인, 외국인 선원 구분하여 조사	비고	외국인 선원 수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로부터 자료를 받아 작성하며, 원출처는 원양산업협회임. 외국인선원 임금은 조사하지 않아 공표하지 않음

- 등록어선통계
  - 원양어업, 연근해어업, 내수면어업, 양식업, 운반선 등 국내 시·군·구에 등록어선 현황 조사
  - 원양어선 척수 비교 가능
- 어업생산동향
  - 연근해어업, 해면양식업, 내수면어업, 원양어업의 생산현황 조사
  - 원양어업 생산량, 생산금액 등 비교 가능

## 2. 주요 이용자 및 용도

### □ 통계의 주요 이용자

- 정부부처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해양조사원, 조업감시센터 등
- 연구기관 : 국립수산물과학원, 해양수산개발원, 수산경제연구원 등
- 학계 : 부경대학교, 해양대학교, 농수산대학교 등
- 원양업계 : 국내외 원양업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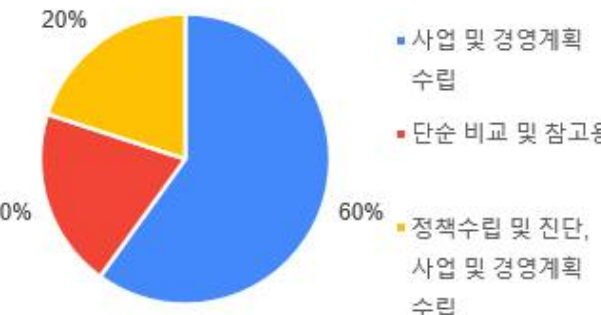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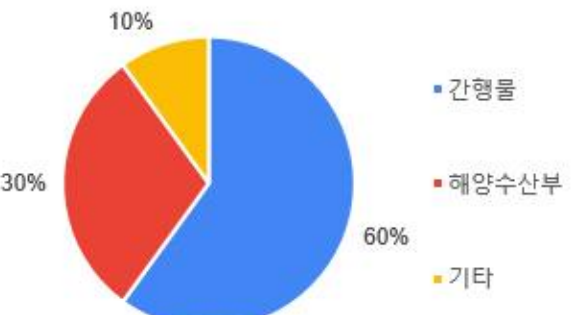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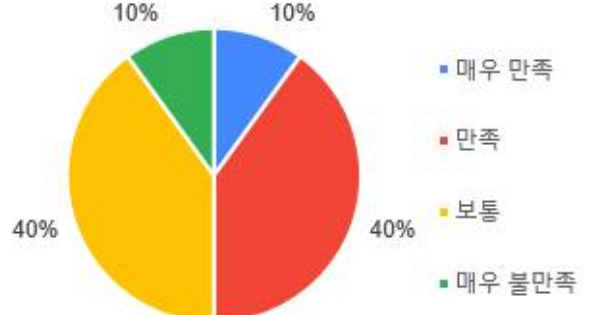
### □ 통계의 용도

- 해양수산부
  - 원양산업에 대한 기초통계 구축 및 기초자료 제공, 타산업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원양산업의 현 상태 진단
  - 어업인의 복지대책, 소득다변화 대책 등 정책기관의 정책방안 마련 지원
  - 입어료, 유류비 등 비용분석을 통해 수산제도의 조정·운영, 생산동향 및 어획품종 변화에 대응한 국내수산물수급 정책 등 수산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한국인, 외국인 선원 현황 파악을 통해 외국인 수급 관련 정책 수립
  - 사업체 단위에서의 장·단기적인 제도 등의 효과에 대한 평가 자료로 활용
  - 국내외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관련 기초자료로 활용
- 학계 및 연구기관
  - 원양수산물 생산량, 생산금액, 해구별 조업현황 등 관련 연구 자료로 활용
  - FTA 체결, 입어국별 입어료 및 쿼터 협상 대비 연구자료로 활용
  - 국내외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현황 및 규제 등 관련 자료로 활용
- 원양업계
  - 규모별 업체 간 경영실태 분석을 통한 기업체의 경영전략 수립
  - 업종별, 톤급별 수익 및 비용 분석을 통한 경제성 판단
- 기타 정부부처 및 연구기관에서는 비정규직 활용현황, 비정규직법 제도 효과, 최저임금제, 수입·수출현황 파악 FTA 대응 등을 위한 관련 자료로 활용

## 3. 이용자 의견수렴

### □ 통계 이용자 의견수렴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조사목적 : 원양어업 통계조사 이용자 대상 의견수렴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통계품질 향상 및 통계서비스 개선 도모
- 조사대상 : 해양수산부, 유관기관, 연구기관, 원양업체, 학계, 원양산업협회 등
- 조사기간 : 매년 1월~2월
- 설문문항 구성 : 통계조사 이용여부 및 목적, 만족도, 문제점, 개선방안
- 주요결과 : 조사결과 품질, 조사과정 품질, 조사환경 품질 및 조사 전반의 만족도 결과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p>1. 응답자 소속기관 (2023)</p> 	<p>2. 이용목적 (2023)</p> 
<p>3. 주 이용경로 (2023)</p> 	<p>4. 만족도 (2023)</p> 
<p>5. 개선방안 등 의견 (20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계조사 시기 조정 검토</li> <li>· 메일 발송 등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검토</li> <li>· 국내 원양 통계 및 해외 통계 제공</li> <li>· 사용자에게 원자료 제공</li> </ul>	

□ 관계기관 및 이용자 사전회의 개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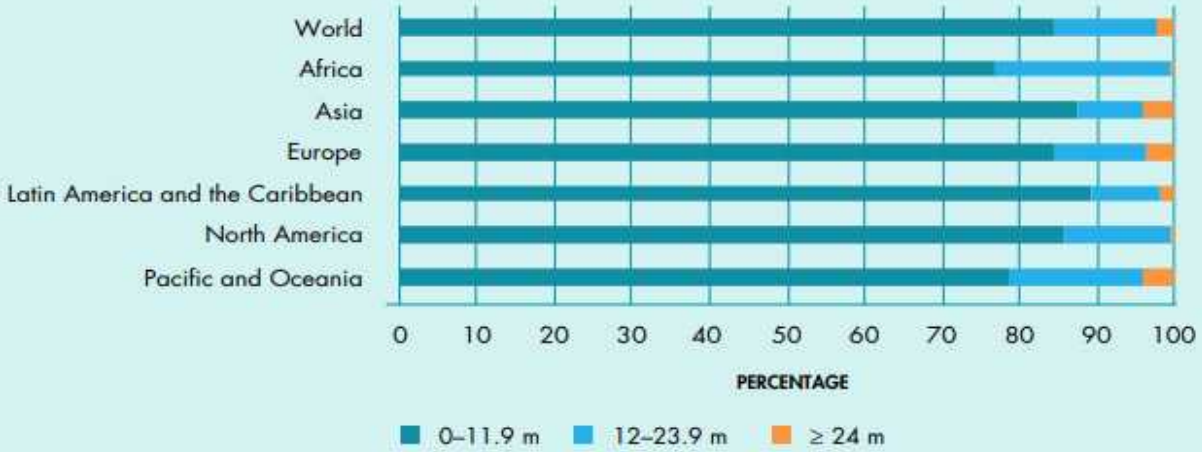
- 회의목적 : 원양어업 통계조사 개선사항 논의
- 참석자 : 유관기관, 연구기관, 원양업체, 학계, 원양산업협회 등
- 회의결과
  - 조사시기 변경
    - 통계조사 공표시기 개선을 위해 조기 조사 실시  
(’15년 : 5.26~6.19, ’16년 : 5.16.~6.10., ’17년 : 5.22.~6.16., ’18년 : 4.23.~5.18., ’19년 : 4.22.~5.17., ’20년 : 4.20.~5.14. ’21년 : 4.19.~5.13., ’22년 : 4.18~5.12, ’23년 : 4.17~5.11, ’24년 : 4.15~5.9)
  - 조사대상 업체 및 어선 확정
  - 조사표 분류체계 개선
    - (검토배경 1) 기존 매출액 비중에 따른 사업종류 구분(원양어업, 도소매업, 제조업, 기타)은 통계자료 이용의 어려움 존재
    - (결과 1) 자료의 연속성 및 정확한 기업 비교를 위해 사업종류 분류체계(원양어업, 도소매업,

제조업, 기타 → 원양어업, 기타) 변경(조사표 유지, 결과표 간소화) 필요

- (검토배경 2) 원양어업 중소기업의 50% 이상은 매출액 80억 원 이하의 소기업이나 매출액 1,000억 원 이하의 업체를 모두 중소기업으로 분류
- (결과 2) 정부 정책마련 또는 관련 연구에 상세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구분(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 결과표 국가별 어종별 수출현황 추가 검토
  - (검토배경) '16년 이용자 설문조사에서 수출현황에 대한 세부자료 요청
  - (결과) 국가별 어종별 수출현황은 업계에서 자료작성의 부담이 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 필요
- 결과표 감가상각비 분리 검토
  - (검토배경) 기존 제조원가의 감가상각비는 기타경비에 포함되었으나 실제 감가상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개별항목으로 분리
  - (결과) 회계전문가와 추후 논의 후 결정
- 조사표 어선-생산현황 간소화 검토
  - (검토배경) 출어횟수 및 어로일수, 반입량은 결과표 미사용 자료이며 신뢰성 부족 및 업체의 간소화 요구로 삭제 검토 필요
  - (결과) 출어횟수 및 어로일수는 연구기관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며, 현행 유지하되 추후 FMC의 조업데이터와 비교 검증하여 신뢰성 제고 필요
- 조사항목 기준마련 검토
  - (검토배경) 월평균 종사자 수 및 월평균 승선원 수의 작성기준 마련 필요
  - (결과) 원양어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월평균 승선원 수에서 조업 시 종사자 및 승선원 수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
- 결과자료 이용관련
  -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은 업체의 정보 보호를 준수해야 하므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통계청과 협의를 통해 검토 필요
- 요약자료 검토
  - (검토배경) 이용자의 편의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요약자료 첨부 필요
  - (결과) 원양기업의 성장성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 선정 후 해당 지표에 대한 기술 및 그래프 작성 추진
- 허가기준 추가
  - (검토배경) 기존 원양업체 및 어선현황은 조사대상 기간 실 조업 여부를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으나 원양어업 규모는 허가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음
  - (결과) 원양업체 및 어선의 전체 규모가 보여질 수 있도록 기존 결과표의 기업체 수, 어선 수를 실조업 기준에 허가 기준을 추가
- 조사표 어선길이별 분류 검토
  - (검토배경) 전남대학교에서 실시한 해양수산부 통계조사 개선방안 연구결과 국제기준에 맞춘 어선길이별 통계 작성 필요하다는 의견 도출
  - (결과) 시계열분석 및 국내 타 통계와 비교를 위해 현재의 톤수별 구분 기준 유지

FIGURE 12

SIZE DISTRIBUTION OF MOTORIZED FISHING VESSELS BY REGION IN 2014



#### □ 전문가 조사표 검토회의 개최

- 회의목적 : 조사표 검토 및 개선사항 논의
- 참석자 : 해양수산부, 통계청, 연구기관, 원양산업협회 등
- 회의결과
  - 조사표 명칭 변경
    - 응답자 및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조사표 명칭 및 세부명칭 변경
  - 법인등록번호 추가
    - 통계청 의견 반영하여 법인등록번호 추가
  - 사전회의 시 도출된 조사표 및 결과표 개선 필요사항 검토

#### □ 이용자 조사표 사전검증회의 개최

- 회의목적 : 변경 조사표 검토 및 개선사항 논의
- 참석자 : 원양업체, 원양산업협회 등
- 회의결과
  - 국가별 어종별 수출현황 결과표 추가, 15.제조원가 기타경비 내 감가상각비 분리 등 변경 사항 안내

#### □ 통계청 업무협약

- 회의목적 : 변경 조사표 검토
- 참석자 : 통계청, 원양산업협회
- 회의결과 : 조사표 변경사항에 검토

□ 이용자 및 전문가 의견 반영 내역

변경연도	변경사항	비고
2015	조직규모 분류기준 변경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014.1.21 제정, 2014.7.22 시행) 반영하여 조직규모 분류기준(대기업, 중소기업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변경(이용자 의견 반영)
2016	법인등록번호 추가	기업 확인을 위해 법인등록번호 추가(통계청 의견 반영)
	산업분류기준 변경	기존 매출액 비중에 따른 사업종류 구분(원양어업, 도소매업, 제조업, 기타)은 응답자 수가 2개 이하인 항목이 마스킹(***) 처리되므로 통계자료 이용의 어려움 존재하여 자료의 연속성 및 정확한 기업 비교를 위해 사업종류 분류체계(원양어업, 도소매업, 제조업, 기타 → 원양어업, 기타) 변경(전문가 의견 반영)
	국가별 수출현황 추가	세부 수출현황 작성을 위해 국가별 수출현황 추가(이용자 의견 반영)
	제조원가의 기타경비 중 감가상각비 분리	원양어업은 고정비가 크며 이에 따른 감가상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개별항목으로 분리(회계전문가 의견 반영)
	요약자료 추가	원양기업의 성장성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 선정 후 해당 지표에 대한 기술 및 그래프 작성 추가(이용자 및 전문가 의견 반영)
2017	허가기준 기업체 및 어선현황 추가	기존 원양어업 통계조사의 기업체 및 어선 현황은 실조업을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는 반면 정부 및 연구기관 등은 허가기준으로 원양어업을 관리하고 있음 기업체 및 어선의 전체 규모가 보여질 수 있도록 기존 결과표(실조업기준)에 허가 기준 추가(이용자 및 전문가 의견 반영)
2018	조사시기 및 공표시기 변경	결과표 제공시기 단축 요청에 따른 변경(이용자 의견 반영)
2019	조사표 기업분류 변경	기업분류 중소기업 항목을 중기업, 소기업으로 분류하여 변경
2020	결과표 해역별 기타항목 추가	해역별 기타항목 추가(태평양 기타, 대서양 기타, 인도양 기타, 남빙양 기타)
2021	선원임금 조사방식 변경	통계청 컨설팅 결과 반영하여 조사표 선원임금 조사방법 변경 (월평균급여액 → 총연간급여액, 승선기간(개월))

### Ⅲ. 조사설계

#### 1. 조사내용 및 조사표 설계

##### 1-1 조사항목

###### □ 조사항목 체계

○ 조사항목은 기업체, 어선으로 구성

- 기업체 조사항목은 일반현황, 생산·수출현황, 경영실태로 구분

- 어선 조사항목은 어선현황, 조업현황, 생산현황, 선원현황, 어로원가로 구분

구 분		항 목 명	
기업체	I. 일반현황	1. 기업체명 3. 사업자등록번호 5. 창설연월 7. 자본금 9. 사업종류 i. 산업분류부호 iii. 사업내용 10. 종사자현황 i. 상용근로자 수, 연간급여액 ii. 한국인·외국인 선원 수, 연간급여액 iii. 임시 및 일용근로자 수, 연간급여액 11. 어선현황 i. 보유어선척수 iii. 조사기준년도 조업척수	2. 법인등록번호 4. 대표자명 6. 소재지 8. 기업형태 ii. 주요 취급품목 iv. 매출액 비중 ii. 보유어선 총 톤수
	II. 생산·수출실적	12. 생산실적 i. 생산량 13. 수출실적 i. HSK코드 iii. 수출국 v. 수출금액	ii. 생산금액 ii. 품명 iv. 수출량
	III. 경영실태	14. 재무상태표 i. 자산 iii. 자본 15. 손익계산서 i. 매출액 iii. 매출총이익 v. 영업손익 vii. 영업외비용 ix. 법인세비용 16. 제조원가명세서 i. 당기총제조비용 iii. 기말재공품원가 v. 당기제품제조원가	ii. 부채 ii. 매출원가 iv. 판매비와관리비 vi. 영업외수익 viii.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x. 당기순손익 ii. 기초재공품원가 iv. 타계정대체액

어선별	IV. 어선현황	17. 어선현황	
		i. 선명	ii. 톤수
		iii. 진수년월	iv. 겸업여부
		v. 주업종부호	vi. 겸업종부호
		18. 조업현황	
		i. 업종부호	ii. 해구부호
		iii. 출어횟수	iv. 어로일수
		19. 생산현황	
		i. 품종부호	ii. 해구부호
		iii. 생산량	iv. 생산금액
		v. 반입량	vi. 업종부호
		20. 선원현황	
		i. 직급별 한국인 조업 승선원수, 1인당 월평균임금	
		ii. 직급별 외국인 조업 승선원수, 1인당 월평균임금	
		21. 연간어로원가	
		i. 출어비	ii. 임금 및 관리비

## □ 주요 개념 정의

### ○ 원양어업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의거한 원양어업 허가를 받아 해외수역을 조업구역으로 하는 어업

### ○ '사업체'와 '기업'의 차이

#### - 사업체

- 영리 비영리 또는 적법 위법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물리적 장소 또는 일정한 지역 내에서 하나의 주된(또는 단일) 경제활동에 독립적으로 종사하는 기업 또는 기업을 구성하는 부분 단위를 말함
- 사업체의 형태로는 회사(본사·점, 지사·점, 공장, 영업소, 출장소), 상점, 식당, 병·의원, 관공서, 학교, 주점, 창고, 물류센터, 종교단체, 신문사, 방송국, 금융기관 등이 있음

#### - 기업

- 동일자금에 의하여 소유되고 통제되는 법적 또는 제도적 경영단위로써 수입 지출에 대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와 기타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단위로 1개 이상의 사업체를 말함

### ○ 법인등록번호

- 상업등기소에서 부여하는 13자리로 구성된 법인 고유 번호로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등록 번호

****	**	-	*****	*
①	②		③	④

① 4자리 : 관할등기소 지방법원 관할등기관서 구분코드(1101~2850)

② 2자리 : 법인종류

상법법인		외국법인		민법법인		특수법인	
주식회사	11	주식회사	81	사단법인	21	학교법인	31
합명회사	12	합명회사	82	재단법인	22	사회복지법인	32
합자회사	13	합자회사	83			의료법인	33
유한회사	14	유한회사	84			}	}
유한책임회사	15	기타	85			협동조합	51
		유한책임회사	86			기타	71

③ 6자리 : 일련번호

④ 1자리 : 검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해당 사업장 세무서에서 부여하는 10자리로 구성된 사업자 고유번호로 사업자등록증 상의 등록번호

***	**	-	****	*
①	②		③	④

① 3자리 : 세무서번호

② 2자리 : 구분코드(개인/법인/관청 등)

개인 사업자	01-79	과세사업자
	80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및 다단계 판매업자
	89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90-99	면세사업자
법인 사업자	81, 86, 87	영리법인의 본점
	82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84	외국법인의 본, 지점 및 연락사무소
	85	영리법인의 지점
관청	82	비영리법인
	8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84	외국법인의 본, 지점 및 연락사무소

③ 4자리 : 일련번호

④ 1자리 : 검증번호

### ○ 자본금

- 기업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라고 생각되는 자가 사업의 밑천으로 기업에 제공한 금액,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의 자본금 항목 금액으로 보통주자본금과 우선주자본금의 합계

○ 기업형태

- 개인사업체
  - 개인이 소유·경영하는 사업체를 말하며 법인격을 갖추지 않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포함
- 회사법인
  - 상법상의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를 말함
- 회사 이외 법인
  -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법인이 아닌 법인을 말함
- 대기업
  - 기업 중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업종	구분	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규모	농업, 임업 및 어업	A	80억원 이하	1,000억원 이하	좌측 기준을 초과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광업	B	80억원 이하	1,000억원 이하		
	식품품 제조업	C10	120억원 이하	1,000억원 이하		
	음료 제조업	C11	120억원 이하	800억원 이하		
	담배 제조업	C12	80억원 이하	1,000억원 이하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80억원 이하	1,000억원 이하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120억원 이하	1,500억원 이하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120억원 이하	1,500억원 이하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80억원 이하	1,000억원 이하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80억원 이하	1,500억원 이하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80억원 이하	800억원 이하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20억원 이하	1,000억원 이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20억원 이하	1,000억원 이하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120억원 이하	800억원 이하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80억원 이하	1,000억원 이하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120억원 이하	800억원 이하		
	1차 금속 제조업	C24	120억원 이하	1,500억원 이하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20억원 이하	1,000억원 이하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	C26	120억원 이하	1,000억원 이하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80억원 이하	800억원 이하		
	전기장비 제조업	C28	120억원 이하	1,500억원 이하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20억원 이하	1,000억원 이하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20억원 이하	1,000억원 이하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80억원 이하	1,000억원 이하			

	가구 제조업	C32	120억원 이하	1,500억원 이하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80억원 이하	800억원 이하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10억원 이하	60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20억원 이하	1,000억원 이하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	30억원 이하	800억원 이하			
	수도업	E36	120억원 이하	1,000억원 이하			
	건설업	F	80억원 이하	1,00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G	50억원 이하	1,00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H	80억원 이하	80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I	10억원 이하	400억원 이하			
	정보통신업	J	50억원 이하	800억원 이하			
	금융 및 보험업	K	80억원 이하	400억원 이하			
	부동산업	L	30억원 이하	400억원 이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0억원 이하	600억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임대업은 제외한다)	N	30억원 이하	600억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P	10억원 이하	400억원 이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10억원 이하	600억원 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0억원 이하	600억원 이하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0억원 이하	600억원 이하			
	업종무관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독립성	업종무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닐 것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닐 것	①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②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법인의 피출자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2항1 호가목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등 제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것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것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2항1 호나목
			관계기업의 경우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중소기업규모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관계기업의 경우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기준 초과하는 기업		제2조2항1 호가목, 나목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1 항2호다목				

## ○ 산업분류번호

- 통계청에서 주요 수행 산업 활동을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각 산업에 대한 부호

구분	내용	산업분류부호	구분	내용	산업분류부호
어업	원양어업	03111	제조업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조제식품 제조업	10211
	연근해어업	03112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10212
	내수면어업	03120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10213
	해면양식어업	03211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10220
	내수면양식어업	03212	도소매업	수산물 도매업	46313
	수산물부화 및 종묘생산업	03213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46322
	어업관련 서비스업	03220		수산물 소매업	47213
그 외		99999		기타식료품 소매업	47219

## ○ 종사자현황

- 상용근로자
  - 임금근로자 중 개인, 가구, 사업체와 1년 이상의 고용계약을 맺은 사람 또는 일정한 기간의 고용계약을 하지 않았으나 정해진 채용절차에 따라 입사하여 인사관리규정을 적용 받거나 상여금, 퇴직금 등 각종 수혜를 받는 사람
- 임시근로자
  - 임금근로자 중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또는 일정한 고용계약을 하지 않았으나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사업완료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사람
- 일용근로자
  - 임금근로자 중 개인, 가구, 사업체와 1개월 미만의 고용계약을 맺은 사람 또는 일일단위로 고용되어 근로 대가를 일급이나 일당제로 받고 있는 사람
- 선원
  -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선원법 제2조)

## ○ 어선현황

- 보유어선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라 어업허가 신고를 한 어선과 제17조에 따라 시험어업승인을 받은 어선
- 조업어선
  - 원양산업발전법 제16조에 따라 조업상황, 어획실적, 양륙량, 판매실적 등을 보고한 어선

## ○ 수출실적

### - HSK코드

-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 Harmonized System of Korea)상의 10자리 품목부호

### - 품명

- 해당 HSK코드의 품명

## ○ 재무상태표

- 일정시점에서 기업의 자산, 부채 및 자본현황 등 재무상태를 기록한 표로 기업의 자금조달과 운용상태를 나타냄

### ① 자산

-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실체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으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

### ② 유동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판매·소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그 외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 또는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으로 당좌자산, 재고자산으로 구분

### ③ 당좌자산

- 판매과정을 거치지 않고 즉시 현금화될 수 있는 자산(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단기매매증권 등)

### ④ 현금및현금성자산

-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 증권,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금융상품으로서 취득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자산

### ⑤ 기타당좌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외 당좌자산

### ⑥ 재고자산

-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 또는 판매할 자산을 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소모될 자산(상품, 미착상품, 적송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등)

### ⑦ 비유동자산

- 유동자산이 아닌 자산으로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구분

### ⑧ 투자자산

- 기업 본래의 사업목적이 아닌 타기업을 지배, 통제하거나 유휴자금의 증식을 목적으로 장기간 소유하는 자산(장기예금,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등)

⑨ 유형자산

-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토지, 건축·구축물, 기계장치, 선박·차량운반구, 건설중인 자산 등)

⑩ 토지

- 공장 및 사무소의 대지와 운동장, 기술사, 사택 등의 대지

⑪ 설비자산

- 장기간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유형자산으로서 건물·구축물, 기계장치, 선박·차량운반구 등 다양한 형태의 설비자산이 있음

⑫ 건축, 구축물

- 공장, 기숙사, 기타 부속건물 및 승강기·냉방·통풍장치 등 이들의 부속시설 및 영업 또는 생산활동을 위해 소유하고 있는 도로, 철도, 교량, 담장, 굴뚝, 수조탱크, 송유관, 조선대, 궤도 등의 토목설비 공작물

⑬ 기계장치

- 발전기, 전동기, 공작기계 등 각종 기계류 및 기계장치 부설 설치물, 시설장치 등 포함

⑭ 선박, 차량운반구

- 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선박의 장부가격(감가상각된 가격 반영), 차량운반구 등 포함

⑮ 기타설비자산

- 건축, 구축물, 기계장치, 선박, 차량운반구 이외의 설비자산으로서 공구와 기구, 비품 등이 있음

⑯ 건설중인자산

- 업무용 유형자산의 건설 및 구입을 위해 지출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완공에 이르기까지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

⑰ 기타유형자산

- 토지, 설비자산, 건설중인자산을 제외한 유형자산

⑱ 무형자산

- 물적 실체가 없으며 소유함으로써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는 자산(영업권, 특허권, 어업권 등)

⑲ 기타비유동자산

- 장기대여금, 임대보증금 등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는 비유동 자산

⑳ 부채

-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실체에 의해 부담하고 미래의 경제적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

㉑ 유동부채

- 영업주기 내에 상환 등을 통하여 소멸할 것이 예상되는 매입채무와 미지급비용 등의 부채,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단기차입금 등의 부채, 보고

기간 후 1년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부채로 단기 차입금, 매입채무, 당기법인세부채, 미지급비용, 이연법인세부채 등을 포함

② 단기차입금

-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단기성 차입금

③ 기타유동부채

- 단기차입금을 제외한 유동부채로서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상환되는 선수금, 예수금,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미지급법인세, 선수수익, 단기부채성충당금 및 기타의 유동부채가 포함

④ 비유동부채

- 유동부채가 아닌 부채로 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장기차입금, 퇴직급여충당부채, 이연법인세부채 등을 포함

⑤ 장기차입금

- 상환기일이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차입금

⑥ 기타비유동부채

- 지급기한이 1년 이상인 비유동부채 중 장기차입금이외의 부채성충당금, 장기성 매입채무 및 기타의 비유동부채 등

⑦ 자본

-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액 또는 총재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또는 소유주의 잔여청구권 및 소유주 지분으로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으로 구분

○ 손익계산서

-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기업의 모든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는 표로 기업의 수익성 등 경영 성과를 판단할 수 있음

① 매출액

- 상품의 판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수입금액으로서 반제품, 부산품, 작업폐물 등을 포함한 총매출액에서 매출환입액과 에누리액을 공제한 순매출액을 의미

② 매출원가

- 매출을 실현하기 위한 생산이나 구매과정에서 발생된 재화와 용역의 소비액 및 기타 경비

③ 매출총이익

-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공제한 금액

④ 판매비와관리비

- 제품, 상품, 용역 등의 판매활동과 기업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매출원가에 속하지 않는 모든 영업비용을 포함(급여, 퇴직급여, 복리수행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 임차료, 감가상각비, 보험료, 지급수수료 등)

⑤ 급여

- 임원급여, 급료, 상여금, 제수당 등 포함

- ⑥ 퇴직급여
  - 당해연도 퇴직급여
- ⑦ 복리후생비
  - 종사자의 복지 및 후생을 위하여 사용된 비용
- ⑧ 수도광열비
  - 수도료, 전력료, 가스료 등
- ⑨ 세금과공가
  - 영업과 관계되는 조세 및 공과금으로 사업소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개인기업체의 소득세, 법인세는 제외)의 조세와 조합비, 협회비, 적십자회비 등과 같이 영업과 관계되는 공공적 지출로서 제조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공과금
- ⑩ 임차료
  -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비, 차량 등을 임차한 경우에 연간 지급되는 임차료
- ⑪ 감가상각비
  -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 ⑫ 접대비
  - 교제비, 기밀비, 사례금 등
- ⑬ 광고선전비
  - 제품 등의 판매촉진이나 기업 이미지 개선 등의 선전효과를 위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지출하는 비용
- ⑭ 보험료
  - 해당기업이 보험회사와 계약에 의해 지급하고 있는 보험비용
- ⑮ 운반·하역·보관·포장비
  - 운반비 : 물자를 물류거점관 및 소비자에게 이동시키는 활동에 지출된 비용
  - 하역비 : 물자의 운송과 보관활동에 있어서 동일 시설 내에서 물자를 상하좌우로 이동시키는 활동에 지출된 비용
  - 보관비 : 물자를 창고 등에 보관하는 활동에 지출된 비용
  - 포장비 : 판매수수료, 검사료, 진열비 등
- ⑯ 대손상각비
  -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등 매출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여 비용으로 처리된 금액
- ⑰ 지급수수료
  - 일정용역(서비스) 제공에 대해 지급하는 대가
- ⑱ 기타판매비와관리비
  -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의 하위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경비
- ⑲ 영업손익
  -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익
- ⑳ 영업외수익
  -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과 차익으로서 중단사업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자수익, 배당금수익(주식배당액 제외), 임대료, 단기투자자산

처분이익, 단기투자자산평가이익,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 지분법이익, 장기투자증권손상 차손환입, 투자자산처분이익, 유형자산처분이익, 사채상환이익,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을 포함

㉑ 영업외비용

-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비용과 차손으로서 중단사업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자비용, 기타의 대손상각비, 단기투자자산처분손실, 단기투자자산평가손실, 재고자산감모손실(비정 상적으로 발생한 재고자산감모손실에 한함),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 기부금, 지분법손실, 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 투자자산처분손실, 유형자산처분손실, 사채상환손실,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을 포함

㉒ 이자비용

- 이자비용은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지출과 기타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 장·단기차입금과 사채에 대한 이자비용, 사채발행차금상각(환입)액, 채권·채무의 현재가치 평가 및 채권·채무재조정에 따른 현재가치할인 차금상각액, 외화차입금과 관련된 환율 변동손익 중 이자비용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 금융리스이자비용 등을 포함

㉓ 기타영업외비용

- 이자비용을 제외한 영업외비용으로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 투자·유형자산처분손실, 지분법손실 등을 포함

㉔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 기업의 경상거래, 즉 영업거래와 영업외거래에 의하여 발생된 손익

㉕ 법인세비용

- 순수익에 대한 법인부담소득세

㉖ 당기순손익

- 법인세 비용차감 전 순손익에서 법인세 비용을 차감한 잔액으로 해당회계연도의 최종적인 경영성과

○ 제조원가명세서

- 일정기간 동안 제품 생산에 소요된 비용을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

① 당기총제조비용

- 당기에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 금액

② 재료비

- 제품의 생산을 위해 투입한 원재료, 보조재료, 부속품, 매입부분품 등

③ 노무비

- 제품의 생산을 위한 노동력의 대가로 임금, 급여, 상여수당 등을 포함

④ 경비

- 연료비, 전력비, 가스수도비, 외주가공비, 수선비 등 제품의 생산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당기총비용에서 재료비와 노무비가 제외된 금액

⑤ 연료비

- 어선운용을 위한 항해용 유류(중유, 경유, 윤활유 등), 취사용·난방용 유류 및 가스구입비

- ⑥ 전력비
  - 제조부문에서 소비된 전력비
- ⑦ 가스수도비
  - 제조부문에서 발생한 수도료, 연료비 및 유류비 등
- ⑧ 외주가공비
  - 하청업자에게 재료를 공급하여 가공을 의뢰한 경우 발생하는 임가공비용
- ⑨ 수선비
  - 공장의 건물, 기계장치 및 공·기구 등의 수선을 외부에 의뢰했을 경우 발생하는 비용
- ⑩ 감가상각비
  - 어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손익계산서 판매비와관리비의 감가상각비에 포함되지 않는 감가상각비)
- ⑪ 기타경비
  - 연료비, 전력비, 가스수도비, 외주가공비, 수선비,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경비
- ⑫ 기초재공품원가
  - 미완성된 제품인 재공품을 제조하기 위해 투입한 제조비용으로 전기에서 이월된 재공품 잔액(=전기의 기말재공품원가)
- ⑬ 기말재공품원가
  - 미완성된 제품인 재공품을 제조하기 위해 투입된 제조비용
- ⑭ 타계정대체액
  - 판매목적 외의 목적으로 지출한 제품의 제조비용
- ⑮ 당기제품제조원가
  - 당기중 제품생산을 위하여 소요된 총비용으로서 기초재공품원가에 당기 총제조비용을 가산하고 기말재공품원가와 타계정대체액을 차감한 금액

## ○ 업종

- 선박의 국적과 선박의 용도 및 종류, 조업형태 등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

- ① 원양연승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주낙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 ② 원양기선저인망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 ③ 원양트롤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망구전개판(網口展開板)을 장치한 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 ④ 원양선망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선망(旋網)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 ⑤ 원양자망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유자망 또는 고정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 ⑥ 원양봉수망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봉수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 ⑦ 원양채낚기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외줄낚시 또는 채낚기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 ⑧ 원양통발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 ⑨ 원양모선식어업
  - 냉장·가공설비와 그 밖의 처리설비를 갖춘 모선과 이에 부속되는 어로선에 의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 ⑩ 원양안강망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안강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업종	업종부호	업종	업종부호	업종	업종부호
참치연승	101	북양트롤	105	원양외줄낚시	109
저연승	102	원양트롤	106	모선식외줄낚시	110
참치선망	103	새우트롤	107	기타	111
원양봉수망	104	오징어채낚기	108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8조(원양어업의 종류)

법 제6조제8항에 따른 원양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6.>

1. 원양연승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주낙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2. 원양기선저인망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3. 원양트롤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망구전개판(網口展開板)을 장치한 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4. 원양선망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선망(旋網)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5. 원양자망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유자망 또는 고정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6. 원양봉수망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봉수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7. 원양채낚기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외줄낚시 또는 채낚기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8. 원양통발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9. 원양모선식어업 : 냉장·가공설비와 그 밖의 처리설비를 갖춘 모선과 이에 부속되는 어로선에 의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10. 원양안강망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안강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 조업현황

- 해구부호

- 원양어업 생산보고 시 사용하는 수역 및 해구 내용

조업수역		해구부호	조업수역		해구부호	조업수역		해구부호
태평양	북서부	61	대서양	북서부	21	대서양	동남부	47
	중북부	67		북동부	27	인도양	서부	51
	중서부	71		중서부	31		동부	57
	중동부	77		중동부	34	남빙양	동부	48
	서남부	81		동북부	37		서부	58
	동남부	87		서남부	41		중부	88

- 출어횟수

- 어로작업을 위하여 근거리항을 출항한 횟수

- 어로일수

- 출어 후 어장까지의 항해일수, 탐어·집어·어로일수 등을 모두 합한 실제조업을 위해 소요된 일수

○ 생산현황

- 품종부호

- 원양어업 생산보고 시 사용하는 어종 내용

품종	품종부호	품종	품종부호	품종	품종부호	품종	품종부호	품종	품종부호
어류								연체동물	
가오리류	1010	달고기	1160	물치다래	1300	백새치	1450	갑오징어	2010
가자미류	1020	대구	1170	민어류	1310	청새치	1460	문어류	2020
갈치	1030	민대구	1180	꼬리민태	1320	황새치	1470	오징어류	2030
고등어	1040	붉은대구	1190	새꼬리민태	1330	흑새치	1480	한치류	2031
꽁치	1050	은대구	1200	붉은메기	1340	기타새치	1490	기타연체동물	2990
넙치류	1060	기타대구	1210	방어류	1350	서대류	1500	갑각류	
능성어	1070	도미류	1219	복어류	1359	성대류	1510	게류	3010
다금바리	1080	갈돔	1220	볼락류	1360	임연수어	1520	남빙양새우	3020
가다랑어	1090	금눈돔	1230	붕장어류	1370	적어	1530	기타새우	3030
날개다랑어	1100	물릉돔	1240	삼치류	1380	정어리	1540	기타갑각류	3990
남방다랑어	1110	삿돔	1250	줄삼치	1390	전갱이류	1541		
눈다랑어	1120	통돔	1260	통치(은삼치)	1400	조기류	1550		
농어류	1121	하스돔	1270	홍삼치	1410	청어	1560		
참다랑어	1130	기타돔	1280	상어류	1420	촉수류	1570		
황다랑어	1140	명태	1290	녹새치	1430	홍어	1580		
기타다랑어	1150	메로(이빨고기)	1295	돛새치	1440	기타어류	1990		

- 반입량

- 원양산업발전법 제16조에 따라 수산정보포털을 통해 보고한 원양어획물 반입량

○ 선원현황

- 선장

- 해원을 지휘·감독하며 선박의 운항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선원(선원법 제2조)

- 기관장

- 기관부 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지며, 특히 기관의 안전운용과 선박운항에 관하여 선장을 보좌·협조하는 선원

- 직원

- 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통신장, 통신사, 운항장, 운항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원(선원법 시행령 제3조 : 어로장, 사무장, 의사, 어로장 내지 의사와 동등이상의 대우를 받는 해원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선원법 제2조)

- 부원
  - 직원이 아닌 해원(선원법 제2조)
- 해원
  -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장이 아닌 선원(선원법 제2조)
- 임금
  - 선박소유자가 근로의 대가로 선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모든 금전(선원법 제2조)
- 통상임금
  - 선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일정한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도급금액(선원법 제2조)
- 승선평균임금
  - 선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승선기간으로 나눈 금액(선원법 제2조)
- 생산수당
  - 어선소유자가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 월 고정급 외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획금액이나 어획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금액(선원법 제2조)
- 월 고정급
  - 어선소유자가 어선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선원법 제2조)

## ○ 어로원가

- 어업활동에 필요한 출어경비, 임금, 기타 관리비, 감가상각비 등
- 출어비
  - ① 어구비
    - 어구의 신규구입 및 수리보수를 위한 망지, 각종 부속구(로프, 부자, 침자, 보망사, 꼴탈 등), 집어 등의 구입비
  - ② 연료비
    - 어선운용을 위한 항해용 유류(중유, 경유, 윤활유 등), 취사용·난방용 유류 및 가스구입비
  - ③ 입어료
    - 조업국에 입어를 위해 지불하는 금액
  - ④ 소모품비
    - 전구, 청소용구, 못, 식도 등 선박소모품, 장갑, 휴지 등 선원소모품 등 어구비, 수리비, 주부식비에 포함되지 않는 제물품 구입비
  - ⑤ 주부식비
    - 쌀, 부식비, 간식, 식수 등의 구입비
  - ⑥ 후생비

- 선원 주류대, 담배값, 치료비 및 약품구입비, 출어수당, 4대보험 중 사업자부담분

⑦ 수리비

- 선체, 기관, 선박기기의 관리·수리를 위한 부품 및 재료 구입비, 선체수선 임부임, 상가비, 기관수리비 등 외부 수리대금

⑧ 기타출어비

- 임금 및 관리비

① 선원임금

- 고정급, 짓가림액, 상여금, 퇴직금, 특별수당 등 선원에게 지급한 임금

② 보험료

- 어선 보험료 및 공제, 어선원 보험료 및 공제 등으로 제조원가의 보험료 중 조사대상 어선 한 척에 해당하는 보험료(손익계산서 판매비와관리비의 보험료에 포함되지 않는 보험료)

③ 판매비

- 판매수수료, 운반비, 검사료, 진열비 등 판매에 소요된 경비

④ 조세공과

- 면허세, 재산세 등 지방세, 어선 입출항 수속비, 조합비 등 공과금

⑤ 기타관리비

- 관리비에서 조세공과, 보험료,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금액

⑥ 감가상각비

- 어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손익계산서 판매비와 관리비의 감가상각비에 포함되지 않는 감가상각비)

## □ 조사항목별 조사목적

### ○ 기업체 일반현황 조사표

조사항목	조사목적
1. 기업체명 2. 법인등록번호 3. 사업자등록번호 4. 대표자명 5. 창설연월 6. 소재지	기업체의 누락이나 중복을 방지하고 조사항목이 잘못 기입되었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때 질의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정보는 통계법에 의해 보호
7. 자본금	기간 중 기업의 변동(합병, 분할 등) 파악 기업의 규모별(자본금)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8. 기업형태	기업의 규모 파악을 통한 원양어업 규모 분석
9. 사업종류 i. 산업분류부호 ii. 주요 취급품목 iii. 사업내용 iv. 매출액 비중	원양업체의 매출액 비중 분석을 통해 매출 현황, 사업 추진 방향 등 파악
10. 종사자현황 i. 상용근로자 수, 연간급여액 ii. 한국인·외국인 선원 수, 연간급여액 iii. 임시 및 일용근로자 수, 연간급여액	기업 내 고용구조, 종사자규모 실태, 외국인 선원, 비정규직 현황 파악하여 선원 수급, 비정규직 고용 등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11. 어선현황 i. 보유어선척수 ii. 보유어선 총 톤수 iii. 조사기준년도 조업척수	어업 생산기반인 어선현황을 파악하여 수산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 기업체 생산현황 조사표

조사항목	조사목적
12. 생산실적 i. 생산량 ii. 생산금액	수산물 가격안정 및 수급정책 수립·추진, 수산물 생산 및 수급 전망 기초자료로 사용
13. 수출실적 i. HSK코드 ii. 품명 iii. 수출국 iv. 수출량 v. 수출금액	수산물 수급동향, FTA 협상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 기업체 경영실태 조사표

조사항목	조사목적
14. 재무상태표 i. 자산                      ii. 부채 iii. 자본	원양어업의 재무구조 및 성장성, 안정성 분석
15. 손익계산서 i. 매출액                    ii. 매출원가 iii. 매출총이익            iv. 판매비와관리비 v. 영업손익                vi. 영업외수익 vii. 영업외비용            viii.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ix. 법인세비용            x. 당기순이익	매출액 및 순이익, 비용 분석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주요 비용 변동 파악을 통한 수산업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16. 제조원가명세서 i. 당기총제조비용        ii. 기초재공품원가 iii. 기말재공품원가      iv. 타계정대체액 v. 당기제품제조원가	비용 분석을 통한 원양업체 개선점 도출

○ 어선현황 조사표

조사항목	조사목적
17. 어선현황 i. 선명                      ii. 톤수 iii. 진수년월              iv. 겸업여부 v. 주업종부호            vi. 겸업종부호	어선의 누락이나 중복을 방지, 어선현황을 파악하여 수산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18. 조업현황 i. 업종부호                ii. 해구부호 iii. 출어횟수              iv. 어로일수	업종별, 해구별 어선의 조업형태 파악을 통한 어선 관리·감독
19. 생산현황 i. 품종부호                ii. 해구부호 iii. 생산량                iv. 생산금액 v. 반입량                 vi. 업종부호	수산물 가격안정 및 수급정책 수립·추진, 수산물 생산 및 수급 전망, 어업료 협상 등 기초자료로 사용
20. 선원현황 i. 직급별 한국인 조업 승선원수, 1인당 월평균임금 ii. 직급별 외국인 조업 승선원수, 1인당 월평균임금	한국인·외국인 선원 현황 파악하여 선원 수급 등고용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21. 연간어로원가 i. 출어비                    ii. 임금 및 관리비	해구별, 업종별 비용 분석을 통한 생산성 파악

## □ 주요 개념에 대한 국내 기준

- 원양어업 통계조사의 주요 개념 및 용어 정의를 해양수산부의 한국선원통계, 어업경영분석과 비교한 결과임
  - 한국선원통계의 선원, 부원, 업종 정의는 선원법 및 해양수산연구정보를 활용하였으며 원양어업 통계조사는 선원법 및 원양산업발전법을 참고하여 일부 차이가 발생함
  - 원양어업 통계조사의 경영지표 정의는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의 개념을 활용함

용어	한국선원통계	원양어업 통계조사
선원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선장, 해원 및 예비원을 말함. 선장은 해원을 지휘감독하며 선박의 운항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선원을 말하며, 해원은 배 안에서 근무하는 선장이 아닌 선원을 말함(선원법 제2조)	<p>선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원을 지휘·감독하며 선박의 운항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선원(선원법 제2조)</li> </ul> <p>기관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부 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지며, 특히 기관의 안전운용과 선박운항에 관하여 선장을 보좌·협조하는 선원</li> </ul> <p>직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통신장, 통신사, 운항장, 운항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원(선원법 시행령 제3조 : 어로장, 사무장, 의사, 어로장 내지 의사와 동등이상의 대우를 받는 해원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선원법 제2조)</li> </ul>
부원	선원법상 선박직원이 아닌 해원으로 직종에 따라 갑판부원, 기관부원, 조리부원으로 구분되며 등급에 따라 장직, 수직, 원직으로 세분됨	직원이 아닌 해원(선원법 제2조)
업종	해양수산업업을 선박의 국적과 선박의 용도 및 종류, 조업형태, 항행구역, 조업구역 등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	선박의 국적과 선박의 용도 및 종류, 조업형태 등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
연승	긴 모릿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아릿줄을 달고 그 끝에 낚시를 매달은 주낙(어구)을 사용하여 어류를 낚아 올리는 어업(다랑어, 도미, 복어, 명태, 장어 등)	동력어선에 의하여 주낙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저인망	쌍끝이 기선저인망과 외끝이 기선저인망으로 구분되며 바다 밑바닥으로 끌고 다니면서 깊은 바다 속의 어류를 잡는 어업	동력어선에 의하여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트롤	자루그물 앞 양쪽에 날개가 달린 그물을 쓰며, 날개 앞쪽에 전개판을 장치하고 배로부터 양쪽 전개판에 이르는 끌줄에 의하여 그물을 좌우로 벌린 채 끌어서 어류를 잡는 어업(오징어, 가자미, 청어, 새우, 갈치 등)	동력어선에 의하여 망구전개판을 장치한 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선망	표층이나 중층에 있는 어군을 확인하여 그물로 둘러싸서 우리에 가둔 후, 그물의 아래쪽 변에 있는 조임줄을 죄어서 어획할 수 있도록 구성된 어망으로 어류를 잡는 어업(멸치, 고등어, 갈치, 병어, 다랑어 등)	동력어선에 의하여 선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자망	어구를 고정시키지 않고 흐름에 따라 흘러가게 함으로써 유영성 어족이 그물코에 낚히도록 해서 어류를 잡는 어업(조기, 꽃게 등)	동력어선에 의하여 유자망 또는 고정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봉수망	공치와 같이 불빛에 잘 따르는 어군을 어획하는 어구로 그물의 모양은 가운데가 오목한 보자기와 같으며, 집어등이 있는 현에 집어가 되면 배를 멈추고 투망현이 조류아래로 가도록 하여 그물을 완전히 전개시키고 유도등을 켜고 동시에 집어등을 꺼서 어군을 그물 위에 유도하는 어업(공치 등)	동력어선에 의하여 봉수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채낚기	낚싯줄 한가닥에 낚시 1개 또는 여러 개를 달아 어류를 채어 잡는 어업(오징어, 갈치, 복어 등)	동력어선에 의하여 외줄낚시 또는 채낚기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통발	일정한 장소에 정착, 서식하거나 미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한 생물을 대상으로 나무, 철사 등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고정틀에 그물이나 철망 등을 씌우고 상면 또는 옆면에 1~4개의 입구를 설치한 어구로 어류를 잡는 어업(게, 문어, 장어, 새우 등)	동력어선에 의하여 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모선식	-	냉장·가공설비와 그 밖의 처리설비를 갖춘 모선과 이에 부속되는 어로선에 의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안강망	조류가 빠른 곳에 어구를 큰 닻으로 고정하여 놓고 조류에 밀리는 물고기를 받아서 잡는 어업(조기, 오징어, 멸치 등)	동력어선에 의하여 안강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용어	어업경영분석	원양어업 통계조사
출어회수	어로작업을 위해 출항하여 입항한 회수를 기입	어로작업을 위하여 근거지항을 출항한 횟수
어로일수	잡어 및 어획의 유무에 불구하고 실제 어망, 어구를 해중에 투입하여 어로작업(어군탐색 일수 포함)을 수행한 일수를 기입. 다만 태풍 등 악천후로 인해 피항한 일수는 불산입	출어 후 어장까지의 항해일수, 탐어·잡어·어로일수 등을 모두 합한 실제조업을 위해 소요된 일수
어구비	신규조립 및 수리 보수를 위한 망지, 각종 부속구(로프, 부자, 침자, 쉬블 등), 집어등의 구입비를 기입	어구의 신규구입 및 수리보수를 위한 망지, 각종 부속구(로프, 부자, 침자, 보망사, 콜탈 등), 집어 등의 구입비
연료비	항해용 유류, 취사용난방용 유류 및 가스 구입비를 기입	어선운용을 위한 항해용 유류(중유, 경유, 윤활유 등), 취사용·난방용 유류 및 가스구입비
용기대	어획물 적재를 위한 상자, 바구니 등의 구입비를 기입	-
저장대	얼음, 소금, 냉매 구입비, 냉동·냉장료를 기입	-
소모품비	전구, 청소용구, 취사도구 등 선박 소모품과 장갑, 휴지, 신발, 장화, 삼 등 선원소모품과 장어통발어업, 연승어업의 경우 미끼대 등을 기입하며 이외는 주어구(자산)에 포함	전구, 청소용구, 못, 식도 등 선박소모품, 장갑, 휴지 등 선원소모품 등 어구비, 수리비, 주부 식비에 포함되지 않는 제물품 구입비
주부식비	쌀, 부식비, 간식, 식수 등의 구입금액을 기입	쌀, 부식비, 간식, 식수 등의 구입비
후생비	선주 제공의 선원 주류대, 담배값, 치료비 및 약품구입비, 4대보험 중 선주부담분 등을 기입 하되 주류대 및 담배 값이 짓가림제에 의해 선원 분배금액에서 공제된 경우에는 임금에 포함되므로 후생비에서 제외	선원 주류대, 담배값, 치료비 및 약품구입비, 출어수당, 4대보험 중 사업자부담분
수리비	수리부품 및 재료구입비, 수선비 등을 기입	선체, 기관, 선박기기의 관리·수리를 위한 부품 및 재료 구입비, 선체수선 임부임, 상가비, 기관 수리비 등 외부 수리대금
선원임금	고정급, 짓가림, 상여금, 어막인부(정치망, 권현망) 임금을 기입. 선원전도금과 고정급, 짓가림금액 등의 정산임금, 상여금 및 급식보조비 등 유사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기입하며 현물일 경우에는 금액으로 환산하여 기입. 임금지급이 어기단위, 월단위가 아닌 경우에는 매월 임금은 실제 지급된 금액을 기입하고 정산시 정산금액을 기입하며 동일직위, 경력 등에 따라 임금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 둘로 나누어 일반선원 (1), (2)로 구분하여 기입. 그리고 전도금의 경우 그 성격이 짓가림제에 의한 금액인지, 고정급제에 의한 금액인가를 먼저 파악하여 기입	고정급, 짓가림액, 상여금, 퇴직금, 특별수당 등 선원에게 지급한 임금

사무비	사무용 소모품비, 사무원 급료,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 통신비 등의 제반 어업경영을 위한 모든 사무비를 기입	
공제료 (보험료)	선주부담의 선원 및 어선공제료, 사무실 또는 어업용 건물 화재보험료 등을 기입. 단 보조금은 제외	어선 보험료 및 공제, 어선원 보험료 및 공제 등으로 제조원가의 보험료 중 조사대상 어선 한 척에 해당하는 보험료(손익계산서 판매비와 관리비의 보험료에 포함되지 않는 보험료)
판매비	수협위판장의 판매수수료, 운반비, 검사료, 진열비 등의 판매경비를 기입	판매수수료, 운반비, 검사료, 진열비 등 판매에 소요된 경비
조세공과	면허세, 어업용 재산의 재산세, 입·출항 수속비 등을 기입	면허세, 재산세 등 지방세, 어선 입출항 수속비, 조합비 등 공과금
기타관리비	용선료, 차선료, 선박검사료, 선원훈련비, 출어제 행사비용, 기타 잡지출을 기입	관리비에서 조세공과, 보험료,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금액
감가상각비	자산 및 부채상황표에 의거 어선과 기타어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표본별 감가상각비를 계산. 감가상각비는 내용년수에 따라 정액법으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어구는 연수가 짧아 구입, 조립, 부품대체 등이 모두 비용으로 계상되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음	어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손익계산서 판매비와 관리비의 감가상각비에 포함되지 않는 감가상각비)

**참고**

**2024년도 원양어업 통계조사 조사표**



**2024 원양어업 통계조사 조사표**



- 본 조사는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의한 승인통계로, 국내 원양업체의 생산·수출·경영실태를 파악하고, 국적선사의 어선별 생산·선원현황 및 어로원가 등을 파악하여 국가의 원양어업 정책수립, 연구기관의 연구분석·평가, 관련 업체의 원양어업활동을 위한 기초정보로 제공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 조사사항에 대하여 통계법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에 따라 성실하게 응답하여야 합니다.
-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작성 목적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 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사항 연락처 : 한국원양산업협회 해외수산협력센터 TEL. 044-868-7838

**I. 기업체 일반현황**

- 2023년 12월31일 기준(조사대상기간: 2023.1.1.~2023.12.31.)으로 작성해주십시오.

1. 기업체명	2. 법인 등록번호							
	3. 사업자 등록번호							
4. 대표자명	① 남 ② 여		5. 창설연월		년	월		
6. 소재지			7. 자본금		천원			
8. 기업형태	조직형태 : ① 개인사업체 ② 회사법인 ③ 회사 이외 법인 조직규모* : ① 대기업 ② 중견기업 ③ 중기업 ④ 소기업 * 작성요령서 참고하여 작성							
9. 사업종류	산업분류부호*	주요 취급품목	사업내용			매출액 비중(%)		
* 산업분류부호 : 5페이지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참고하여 작성								
10. 종사자현황	구분		종사자수(명)			연간급여액(천원)		
			남	여	계	남	여	계
	①상용근로자 (육상직원 및 선원)							
	육상직원							
	선원	한국인						
		외국인						
		선원 소계						
②임시 및 일용근로자								
합계 (상용, 임시 및 일용근로자) (①+②)								
연간급여액: [보험료, 근로조합비 공제 전 금액 기재] 기본임금(통상임금)과 시간외수당(생산수당 등), 상여금 포함 / 퇴직금, 복리후생비 제외								
11. 어선현황	보유어선척수		보유어선 총 톤수			2023년 조업척수		
	척		톤(G/T)			척		



		구분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15. 손익계산서	①매출액											
	②매출원가											
	③매출총이익(=①-②)											
	④판매비와관리비(=⑤+...+⑩)											
	⑤급여											
	⑥퇴직급여											
	⑦복리후생비											
	⑧수도광열비											
	⑨세금과공과											
	⑩임차료											
	⑪감가상각비											
	⑫접대비											
	⑬광고선전비											
	⑭보험료											
	⑮운반·하역·보관·포장비											
	⑯대손상각비											
	⑰지급수수료											
	⑱기타판매비와관리비											
	⑲영업손익(=③-④)											
	⑳영업외수익											
	㉑영업외비용(=㉒+㉓)											
	㉒이자비용											
	㉓기타영업외비용											
	㉔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㉑+㉒-㉓)											
	㉕법인세비용											
	㉖당기순손익(=㉔-㉕)											
16. 제조원가	①당기총제조비용(=②+③+④)											
	②재료비											
	③노무비											
	④경비(=⑤+⑥+⑦+⑧+⑨+⑩+⑪)											
	⑤연료비											
	⑥전력비											
	⑦가스수도비											
	⑧외주가공비											
	⑨수선비											
	⑩감가상각비											
	⑪기타경비											
	⑫기초재공품원가											
	⑬기말재공품원가											
	⑭타계정대체액(대체출-대체입)											
	⑮당기제품제조원가(=①+⑫-⑬-⑭)											

조사응답자	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9. 사업종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요약)

구분	내용	산업분류부호	구분	내용	산업분류부호
어업	원양어업	03111	제조업	수산물 훈제조리 및 유사제품 제조업	10211
	연근해어업	03112		수산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10212
	내수면어업	03120		수산물 냉동품 제조업	10213
	해면양식어업	03211	도소매업	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10220
	내수면양식어업	03212		수산물 도매업	46313
	수산물부화 및 종묘생산업	03213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46322
	어업관련 서비스업	03220		수산물 소매업	47213
그 외		99999	기타식료품 소매업	47219	

(17. 어선현황, 18. 조업현황, 19. 생산현황) 업종부호

업종	업종부호	업종	업종부호	업종	업종부호
참치연승	101	북양트롤	105	원양외줄낚시	109
저연승	102	원양트롤	106	모선식외줄낚시	110
참치선망	103	새우트롤	107	기타	111
원양봉수망	104	오징어채낚기	108		

(18. 조업현황, 19. 생산현황) 해구부호

조업수역		해구부호	조업수역		해구부호	조업수역		해구부호
태평양	북서부	61	대서양	북서부	21	대서양	동남부	47
	중북부	67		북동부	27	인도양	서부	51
	중서부	71		중서부	31		동부	57
	중동부	77		중동부	34	남빙양	동부	48
	서남부	81		동북부	37		서부	58
	동남부	87		서남부	41		중부	88

## 1-2 적용 분류체계

### □ 조사표 작성에 적용하는 항목 분류 체계

○ 원양어업 통계조사 조사표의 분류 체계는 기업체 산업분류, 어선 업종분류, 해구분류, 품종 분류임

#### - 산업분류

· 통계청 산업분류에 따른 어업, 제조업, 도소매업, 기타로 분류

구분	내용	산업분류부호	구분	내용	산업분류부호
어업	원양어업	03111	제조업	수산물 훈제, 조리 및 유사제품 제조업	10211
	연근해어업	03112		수산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10212
	내수면어업	03120		수산물 냉동품 제조업	10213
	해면양식어업	03211		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10220
	내수면양식어업	03212	도소매업	수산물 도매업	46313
	수산물부화 및 종묘생산업	03213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46322
	어업관련 서비스업	03220		수산물 소매업	47213
그 외		99999		기타식품 소매업	47219

#### - 업종분류

· 원양어업 허가기준 업종부호에 따른 분류

업종	업종부호	업종	업종부호	업종	업종부호
참치연승	101	북양트롤	105	원양외줄낙시	109
저연승	102	원양트롤	106	모선식외줄낙시	110
참치선망	103	새우트롤	107	기타	111
원양봉수망	104	오징어채낙기	108		

#### - 해구분류

· FAO 해구부호에 따른 해구부호에 따른 분류

조업수역		해구부호	조업수역		해구부호	조업수역		해구부호
태평양	북서부	61	대서양	북서부	21	대서양	동남부	47
	중북부	67		북동부	27	인도양	서부	51
	중서부	71		중서부	31		동부	57
	중동부	77		중동부	34	남빙양	동부	48
	서남부	81		동북부	37		서부	58
	동남부	87		서남부	41		중부	88

- 품종분류

· 원양어업 생산보고 기준 품종부호에 따른 분류

품종	품종부호	품종	품종부호	품종	품종부호	품종	품종부호	품종	품종부호
어류								연체동물	
가오리류	1010	달고기	1160	물치다래	1300	백새치	1450	갑오징어	2010
가자미류	1020	대구	1170	민어류	1310	청새치	1460	문어류	2020
갈치	1030	민대구	1180	꼬리민태	1320	황새치	1470	오징어류	2030
고등어	1040	붉은대구	1190	새꼬리민태	1330	흑새치	1480	한치류	2031
꽁치	1050	은대구	1200	붉은메기	1340	기타새치	1490	기타연체동물	2990
넙치류	1060	기타대구	1210	방어류	1350	서대류	1500	갑각류	
능성어	1070	도미류	1219	복어류	1359	성대류	1510	게류	3010
다금바리	1080	갈돔	1220	볼락류	1360	임연수어	1520	남빙양새우	3020
가다랑어	1090	금눈돔	1230	붕장어류	1370	적어	1530	기타새우	3030
날개다랑어	1100	물릉돔	1240	삼치류	1380	정어리	1540	기타갑각류	3990
남방다랑어	1110	셋돔	1250	줄삼치	1390	전갱이류	1541	X	
눈다랑어	1120	통돔	1260	통치(은삼치)	1400	조기류	1550		
농어류	1121	하스돔	1270	홍삼치	1410	칭어	1560		
참다랑어	1130	기타돔	1280	상어류	1420	촉수류	1570		
황다랑어	1140	명태	1290	녹새치	1430	홍어	1580		
기타다랑어	1150	메로(이빨고기)	1295	돛새치	1440	기타어류	1990		

□ 보고서 집계에 적용하는 항목 분류 체계

○ 원양어업 통계조사의 보고서는 기업체 산업분류, 조직규모, 어선규모, 어선톤수, 업종, 해역으로 분류하여 제시

대분류	세부분류	분류기준	
산업	원양어업	산업분류상 원양어업에 속하는 기업	
	기타	산업분류상 원양어업 이외에 속하는 기업	
조직규모	대기업	조직규모 분류상 대기업에 속하는 기업	
	중견기업	조직규모 분류상 중견기업에 속하는 기업	
	중기업	조직규모 분류상 중기업에 속하는 기업	
	중소기업	조직규모 분류상 소기업에 속하는 기업	
어선규모	1척	보유어선이 1척인 기업	
	2~5척	보유어선이 2~5척인 기업	
	6~9척	보유어선이 6~9척인 기업	
	10척이상	보유어선이 10척 이상인 기업	
어선톤수	~299	톤수가 299톤 이하인 어선	
	300~499	톤수가 300톤 이상 499톤 이하인 어선	
	500~1,599	톤수가 500톤 이상 1,599톤 이하인 어선	
	1,600~2,999	톤수가 1,600톤 이상 2,999톤 이하인 어선	
	3,000~	톤수가 3,000톤 이상인 어선	
업종	참치연승	업종이 참치연승인 어선	
	저연승	업종이 저연승인 어선	
	참치선망	업종이 참치선망인 어선	
	원양붕수망	업종이 원양붕수망인 어선	
	북양트롤	업종이 북양트롤인 어선	
	원양트롤	업종이 원양트롤인 어선	
	새우트롤	업종이 새우트롤인 어선	
	오징어채낚기	업종이 오징어채낚기인 어선	
	원양외줄낚시	업종이 원양외줄낚시인 어선	
	모선식외줄낚시	업종이 모선식외줄낚시인 어선	
	기타	위의 업종이 아닌 어선	
해역	태평양	북서부	주 조업해구가 태평양 북서부인 어선
		중북부	주 조업해구가 태평양 중북부인 어선
		중서부	주 조업해구가 태평양 중서부인 어선
		중동부	주 조업해구가 태평양 중동부인 어선
		서남부	주 조업해구가 태평양 서남부인 어선
		동남부	주 조업해구가 태평양 동남부인 어선
		소계	주 조업해역이 태평양인 어선
	대서양	북서부	주 조업해구가 대서양 북서부인 어선
		중북부	주 조업해구가 대서양 중북부인 어선
		중서부	주 조업해구가 대서양 중서부인 어선
		중동부	주 조업해구가 대서양 중동부인 어선
		동북부	주 조업해구가 대서양 동북부인 어선
		서남부	주 조업해구가 대서양 서남부인 어선
		동남부	주 조업해구가 대서양 동남부인 어선
	소계	주 조업해역이 대서양인 어선	
	인도양	서부	주 조업해구가 인도양 서부인 어선
		동부	주 조업해구가 인도양 동부인 어선
		소계	주 조업해역이 인도양인 어선
	남빙양	동부	주 조업해구가 남빙양 동부인 어선
		서부	주 조업해구가 남빙양 서부인 어선
		중부	주 조업해구가 남빙양 중부인 어선
		소계	주 조업해역이 남빙양인 어선

### 1-3 조사표 구성

#### □ 조사표 개선을 위한 전문가 회의

- 회의명 : 원양어업 통계조사 전문가 검토회의
- 참석자 : 해양수산부, 통계청, 연구기관, 원양산업협회 등
- 회의결과
  - 조사표 분류체계 검토
    - (검토배경1) 기존 매출액 비중에 따른 사업종류 구분(원양어업, 도소매업, 제조업, 기타)은 통계자료 이용의 어려움 존재
    - (결과1) 조사표는 기존 형식 유지, 결과표는 원양어업과 기타로 산업분류 구분 실시, 원양어업 및 기타에 대한 주석 필요

[참고] 결과표(분류체계) 신규대조표

변경 전					변경 후						
월평균 전체 종사자 수					월평균 종사자 수(전체)						
(단위: 명)					(단위: 명)						
		기업체수	전체 종사자					기업체수	전체 종사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합계					
산업 분류	원양어업					산업 분류	원양어업				
	제조업						기타				
	도소매업					조직 규모	중견기업				
	기타						중소기업				
조직 규모	중견기업					어선 규모	1척				
	중소기업						2~5척				
어선 규모	1척						6~9척				
	2~5척						10척이상				
	6~9척					※ 산업분류 상 원양어업, 기타는 기업체 매출액 비중에 따른 분류이며 기타는 제조업, 도소매업 등이 포함된다.					
	10척이상										

- (검토배경 2) 원양어업 중소기업의 50% 이상은 매출액 80억 원 이하의 소기업이나 매출액 1,000억 원 이하의 업체를 모두 중소기업으로 분류
- (결과 2) 정부 정책마련 또는 관련 연구에 상세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구분(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참고] 결과표(분류체계) 신규대조표

변경 전					변경 후						
월평균 종사자 수(전체)					월평균 종사자 수(전체)						
(단위: 명)					(단위: 명)						
		기업체수	전체 종사자					기업체수	전체 종사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합계					
산업 분류	원양어업					산업 분류	원양어업				
	기타						기타				
조직 규모	중견기업					조직 규모	중견기업				
	중소기업						중기업				
어선 규모	1척					어선 규모	소기업				
	2~5척						1척				
	6~9척						2~5척				
	10척이상						6~9척				
※ 산업분류 상 원양어업, 기타는 기업체 매출액 비중에 따른 분류이며 기타는 제조업, 도소매업 등이 포함된다.					※ 산업분류 상 원양어업, 기타는 기업체 매출액 비중에 따른 분류이며 기타는 제조업, 도소매업 등이 포함된다.						



- 결과표 감가상각비 분리 검토

- (검토배경) 기존 제조원가의 감가상각비는 기타경비에 포함되었으나 원양어업은 고정비가 크며 이에 따른 감가상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개별항목으로 분리 필요
- (결과) 기타 경비에서 감가상각비 분리

[참고] 조사표 및 결과표(제조원가) 신규대조표

조사표	변경 전					변경 후				
	구분	조	...	천		구분	조	...	천	
15. 제조원가	①당기총제조비용(=②+③+④)		...			①당기총제조비용(=②+③+④)		...		
	②재료비		...			②재료비		...		
	③노무비		...			③노무비		...		
	④경비(=⑤+⑥+⑦+⑧+⑨+⑩)		...			④경비(=⑤+⑥+⑦+⑧+⑨+⑩+⑪)		...		
	⑤연료비		...			⑤연료비		...		
	⑥전력비		...			⑥전력비		...		
	⑦가스수도비		...			⑦가스수도비		...		
	⑧외주가공비		...			⑧외주가공비		...		
	⑨수선비		...			⑨수선비		...		
	⑩기타경비		...			⑩감가상각비		...		
	⑪기초재공품원가		...			⑪기타경비		...		
	⑫기말재공품원가		...			⑫기초재공품원가		...		
	⑬타계정대체액		...			⑬기말재공품원가		...		
	⑭당기제품제조원가(=①+⑪-⑫-⑬)		...			⑭타계정대체액		...		
			...			⑮당기제품제조원가(=①+⑫-⑬-⑭)		...		

결과표	내역	원양어업		구성비	...
		금액			
		총계	평균		
당기총제조비용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연료비				...	
전력비				...	
가스수도비				...	
외주가공비				...	
수선비				...	
기타경비				...	
기초재공품원가				...	
타계정대체액				...	
당기제품제조원가				...	

결과표	내역	원양어업		구성비	...
		금액			
		총계	평균		
당기총제조비용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연료비				...	
전력비				...	
가스수도비				...	
외주가공비				...	
수선비				...	
감가상각비				...	
기타경비				...	
기초재공품원가				...	
타계정대체액				...	
당기제품제조원가				...	

- 조사표 어선-생산현황 간소화 검토

- (검토배경) 출어횟수 및 어로일수, 반입량은 결과표 미사용 자료이며 조사표 간소화 요청, 연구를 위한 자료 필요 등 다양한 의견 존재
- (결과) 현재 조사표의 품종별 해구별 출어횟수, 어로일수 작성에서 해구별 출어횟수, 어로일수 작성으로 조사표 변경 실시, 결과표 공표는 결과자료의 검증 후 실시 예정

[참고] 조사표(조업현황 및 생산현황) 신규대조표

변경 전	17. 생산현황	품종부호	해구부호	출어횟수	어로일수	생산량(톤/M/T)	생산금액(천원)	반입량(톤/M/T)	업종
		①							
		②							
		③							
		④							
		⑤							
변경 후	18. 조업현황	업종부호*		해구부호*		출어횟수		어로일수	
	19. 생산현황	품종부호*	해구부호*	생산량(톤,M/T)	생산금액(천원)	반입량(톤,M/T)	업종부호*		
		①							
		②							
		③							
		④							
		⑤							
* 품종부호, 해구부호, 업종부호 : 5페이지의 품종부호, 해구부호, 업종부호 참고하여 작성									

- 행정자료 활용 검토

- (검토배경) 통계의 정확성 제고, 조사대상자의 응답 부담 감소를 위해 행정자료 활용하여 대체 필요
- (결과) 생산통계 관련 조사항목 전체, 수출통계 일부 행정통계 활용(생산통계: 수산정보포털(업무) FMC-국립수산과학원 데이터, 수출통계: 한국원양산업협회 경유 세관 신고 데이터)

[참고] 조사표(생산현황 및 수출현황) 신규대조표

변경 전	생산량 톤(M/T)	생산금액 천원	HSK코드					품명	수출국	수출량(톤,M/T)	수출금액(천원)
			①								
			②								
			③								
변경 후	생산량	생산금액	HSK코드					품명	수출국	수출량(톤,M/T)	수출금액(천원)
			1. 행정자료* 활용으로 조사항목 제외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제34조에 따라 현지판매를 위해 한국원양산업협회를 경유하여 서울세관에 신고한 자료(원양수산물 신고)								
			2. 해당 기업체 수출 실적[별첨] 확인 후, 누락된 수출 실적은 추가 기입								
			①								
			②								

- 선원임금 조사방식 변경 검토

- (검토배경) '1인당 월평균임금' 계산 오류\* 감소 및 통계의 정확성 제고
- (결과) 선원의 직책별 1인당 월평균임금이 아닌 총 연간급여액, 승선기간 조사

[참고] 조사표(선원 임금) 신규대조표

변경 전	구분		선장		기관장	
			남	여	남	여
	한국인	조업 승선원수(명)				
		1인당 월평균임금(천원)				
	외국인	조업 승선원수(명)				
1인당 월평균임금(천원)						
변경 후	구분		선장		기관장	
			남	여	남	여
	한국인	평균 조업 승선원수(명)				
		연간 급여액(천원)				
	외국인	평균 조업 승선원수(명)				
		연간 급여액(천원)				
승선기간(개월)		개월				

## □ 조사표에 수록된 사항

-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응답자에게 조사 안내 공문을 보내며 현장조사 시 조사표, 작성요령서, 조사 소개 리플렛 배부

“ (특)한국원양산업협회 해외수산업협력센터에서  
**2024년 원양어업 통계조사**  
실시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특)한국원양산업협회 해외수산업협력센터  
30127 세종특별자치시 둔화대로 253 세종빌딩 6층 해외수산업협력센터  
Tel: 044-858-7838, E-mail: survey@kfish.org

### ㉔ 원양어업 통계조사란 무엇인가요?

<b>조사 목적</b>	• 원양어업 국외연선 및 합계선상의 달랑, 연안, 수중, 공양선과외 업체에 어선종류, 연안연선, 어선종류 등을 파악 • 국가에 원양어업 정책자료, 연구자료, 정책자료, 행정, 관련 법제에 원양어업 통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
<b>법적 근거</b>	•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승인된 일반통계 제144호(제12,13호)
<b>조사 기입할 일 기간</b>	• 조사대상기간 : 2022.1. ~ 2023.1. • 조사기간 : 2023.11.1 ~ 2024.1.
<b>조사 대상</b>	• 해양수산부로부터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모든 어선과 그 어선을 보유한 단체/기업체 • 해양수산부에 원양어업 신고를 한 기업체와 그 기업의 보유어선
<b>실시 체계</b>	• 주관: 실시 : 해양수산부 원양사업과 / (특)한국원양산업협회 해외수산업협력센터
<b>조사 방법</b>	• 방문 면접조사 또는 전화조사
<b>조사 항목</b>	• 업체명, 법인명칭, 연선, 수중선종, 경영형태, 어선명, 어선번호
<b>결과 공유</b>	• 공표(국외연선, 보고서별 2024.12월)
<b>문의처</b>	• (특)한국원양산업협회 해외수산업협력센터 Tel : 044-858-7838, E-mail : survey@kfish.org

### 2024 원양어업 통계조사

www.kfish.org  
www.kfish.or.kr

(특)한국원양산업협회 해외수산업협력센터

### ㉔ 조사 수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원양어업 통계조사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나요?**

- 원양어업에 관한 및 경영실적을 파악하여 원양어업 관련 정책 및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함(국외, 국내 원양어업을 대상으로 전문조사하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업체가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취급은 어떻게 보전되나요?**

- 원양어업 통계조사에서 수집한 정보는 통계법 제121조에 따라 수집되는 절차에 따라 수집되며, 통계법 제125조에 의하여 함의하게 보전됨(국외 포함 조사되는 내용은 통계법으로 처리(2023) 때문에 기업체 차별로 불가함(국외).

**조사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 매년 해양수산종합정보시스템, 해양수산부, 통계청 등 관련 홈페이지(아래참) 원양어업 통계조사 보고서(12월중) 통해 공표 하고 있습니다.

### ㉔ 원양어업 통계조사 결과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1) 홈페이지 상단에 검색  
2) 국내통계 ⇒ 주재별통계 ⇒ 수산업 ⇒ 원양어업 통계조사  
또는 [국내통계] ⇒ [주재별통계] ⇒ [통계과목검색] ⇒ [원양어업 통계조사] 입력 후 검색

• KOSIS 특징은  
- 우리나라 모든 공식통계 결과에 초점가능  
- 국가별 통계, 시점, 구분 등 검색조건 가능

**해양수산부 통계시스템**  
<https://www.mof.go.kr/statPortal/>

1) 통계메뉴 ⇒ 분야별통계 ⇒ 수산 ⇒ 수산업통계 ⇒ [순천] 원양어업 통계조사

• 해양수산부 통계시스템 특징은  
- 해양수산부 공식통계 초점가능  
- 국내외 통계, 시점, 구분 등 검색조건 가능

**OFIS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  
<http://www.ofis.or.kr>

1) [대시보드] ⇒ 원양어업통계조사 ⇒ 보고서

- 원양어업 통계조사 요약 및 보고서 다운로드 가능
- 원양어업 생산현황 정보 수록

(특)한국원양산업협회 해외수산업협력센터

- 한국원양산업협회 부설(국외) 해외수산업 협력 및 국제협업 업무 지원용 통계 국제 원양수산 역량 강화를 위한 설립
- 주요 업무
  -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원양산업 뉴스, 전망기 특별기고, 해외 수산업동향 등 수록
  - 국제협업 수산전문가 육성 관리
  - 국제원양수산관 운영
  - 연안 개발도상국 수산업(트러) 지원사업 운영
  - 원양어업 통계조사 및 원양산업 실태조사 실시
  - 해외수산 정보조사 실시
  - 해외수산 전문가포럼 지원
  - 해외수산수출지원센터 운영

### ㉔ 통계로 보는 원양어업 통계조사 (2022.1.1 ~ 2022.12.31)

#### 단독기업체

연세	2024년	2023년	2022년
업체 수	257개	254개	189개
연선	1,339명	1,339명	1,339명
어선 수	4,811명	4,811명	4,811명

원양어업 및 어선

연선: 1,339명 (100%)  
어선: 4,811명 (100%)

총계: 6,150명 (100%)

국외연선: 1,339명 (100%)  
국외어선: 4,811명 (100%)

#### 합작기업체

연세	2024년	2023년	2022년
업체 수	227개	227개	138개
연선	2,969명	2,969명	2,969명
어선 수	1,387명	1,387명	1,387명

원양어업 및 어선

연선: 2,969명 (100%)  
어선: 1,387명 (100%)

총계: 4,356명 (100%)

국외연선: 2,969명 (100%)  
국외어선: 1,387명 (100%)

#### 관련사업체

연세	2024년	2023년	2022년
업체 수	27개	27개	17개
연선	1,000명	1,000명	1,000명
어선 수	1,000명	1,000명	1,000명

원양어업 및 어선

연선: 1,000명 (100%)  
어선: 1,000명 (100%)

총계: 2,000명 (100%)

국외연선: 1,000명 (100%)  
국외어선: 1,000명 (100%)

## ○ 조사표에 포함된 사항

- 조사명, 승인번호, 국가승인통계로고, 작성승인번호, 조사기관 명시



# 2024 원양어업 통계조사 조사표



- 조사의 법적근거, 응답자협조사항, 조사협조 감사인사, 응답자 비밀보호정책, 문의사항 연락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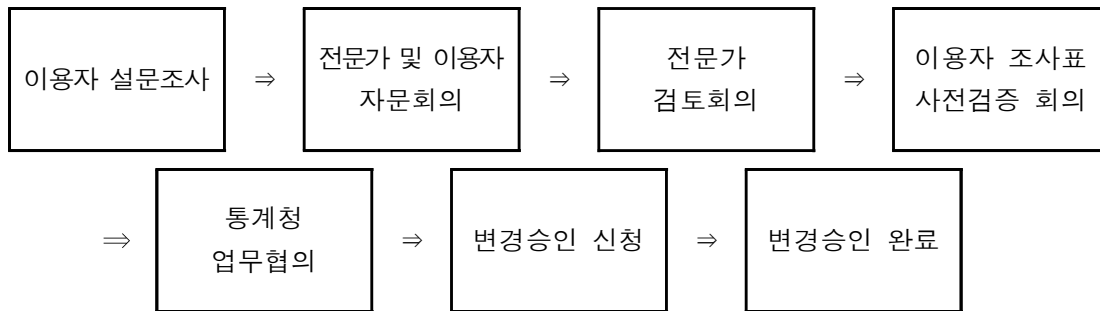
- 본 조사는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의한 승인통계로, 국내 원양업체의 생산·수출·경영실태를 파악하고, 국적선사의 어선별 생산·선원현황 및 어로원가 등을 파악하여 국가의 원양어업 정책수립, 연구기관의 연구분석·평가, 관련 업체의 원양어업활동을 위한 기초정보로 제공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 조사사항에 대하여 통계법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에 따라 성실하게 응답하여야 합니다.
-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작성 목적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 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사항 연락처 : 한국원양산업협회 해외수산협력센터 TEL. 044-868-7838

## 1-4 조사표 설계 및 변경 절차

### □ 조사표 변경 절차 및 방법

#### ○ 변경절차



#### ○ 통계 이용자 의견수렴 및 만족도 조사 실시(매년)

##### - 조사목적

- 원양어업 통계조사 이용자 대상 의견수렴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통계품질 향상 및 통계서비스 개선 도모

##### - 조사대상

- 해양수산부, 유관기관, 연구기관, 원양업체, 학계, 원양산업협회 등

##### - 주요결과

- 조사결과 품질, 조사과정 품질, 조사환경 품질 및 조사 전반의 만족도 결과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조사결과 '통계 제공시기가 늦다', '필요 정보가 부족하다' 등의 문제점 지적

○ 관계기관 및 이용자 사전회의 개최 등

- 회의목적

- 조사시기, 조사대상 등 협의사항 논의

- 참석자

- 유관기관, 연구기관, 원양업체, 학계, 원양산업협회 등

- 회의결과

- 통계조사 공표시기 개선을 위해 작년 대비 조기 조사 실시, 조사대상 확정, 어선길이별 통계 작성 관련 의견 있었으나 타 통계와 비교를 위해 현재의 톤수별 구분 기준 유지 등

○ 전문가 조사표 검토회의 개최

- 회의목적

- 조사표 검토 및 개선사항 논의

- 참석자

- 해양수산부, 통계청, 연구기관, 원양산업협회 등

- 회의결과

- 기존 매출액 비중에 사업종류 구분은 다수 항목이 마스킹 처리되므로 조사표는 기존 형식을 유지하되 결과표는 원양어업과 기타로 산업분류 구분 실시, 국가별 어종별 수출 현황 조사, 기존 제조원가의 감가상각비는 기타경비에 포함되었으나 원양어업은 고정비가 크며 이에 따른 감가상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개별항목으로 분리 등

○ 이용자 조사표 사전검증회의 개최

- 회의목적

- 변경 조사표 검토 및 개선사항 논의

- 참석자

- 원양업체, 원양산업협회 등

- 회의결과

- 조사표 변경사항에 대한 작성 시 문제점, 건의사항 확인

○ 통계청 업무협의

- 회의목적

- 변경 조사표 검토

- 참석자

- 통계청, 원양산업협회

- 회의결과

- 조사표 변경사항 검토

# 1-5 조사표 변경이력

## □ 변경 또는 개편 이력

- (2014년) 원양어업 통계조사 사업
  - 변경승인일자 : '14.7.11
  - 변경사항

기존	변경	비고
<p><b>※ 조사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목적</li> <li>○ 국가승인통계로고 및 작성승인번호</li> <li>○ 조사기관</li> <li>○ 응답자 비밀보호정책</li> </ul>	<p><b>※ 조사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조사명</u></li> <li>○ <u>조사목적</u></li> <li>○ <u>조사법적근거</u></li> <li>○ 국가승인통계로고 및 작성승인번호</li> <li>○ <u>응답자 협조요청 및 조사협조 감사인사</u></li> <li>○ 조사기관</li> <li>○ 응답자 비밀보호정책</li> <li>○ <u>문의사항 연락처</u></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명, 조사법적근거, 협조요청 및 감사인사, 문의사항 연락처 등 추가</li> </ul>
<p><b>7. 조직형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사업체, 회사법인, 회사이외법인 중 하나 선택</li> <li>○ 원양어업, 제조업, 도매및소매업 중 하나 선택 후 대기업, 중소기업 중 하나 선택</li> </ul>	<p><b>7. 기업형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조직형태</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사업체, 회사법인, 회사이외법인 중 하나 선택</li> </ul> </li> <li>○ <u>조직규모</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업, 중소기업 중 하나 선택</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위항목 제목신설에 따라 중복 피하기 위해 문항제목 변경</li> <li>○ 하위항목에 대해 제목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형태, 조직규모</li> </ul> </li> <li>○ 산업분류문항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사업종류”와 중복되는 산업분류 내용 삭제</li> </ul> </li> </ul>
<p><b>9. 종사자수 및 연간급여액</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급여액 합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위 : 백만원</li> </ul> </li> <li>- 남, 여 구분 없음</li> <li>○ 근로자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용근로자</li> <li>- 임시및일용근로자</li> </ul> </li> <li>- 기타종사자</li> <li>- 승선원(한국인, 외국인)</li> </ul>	<p><b>9. 종사자현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급여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위 : <u>천원</u></li> </ul> </li> <li>- 남, 여, 계로 구분</li> <li>○ 근로자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용근로자</li> <li>- <u>선원(한국인, 외국인)</u></li> </ul> </li> <li>- 임시및일용근로자</li> <li>- &lt;삭제&g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항제목 간결하게 변경</li> <li>○ 다른 문항과 혼동되지 않도록 단위 일치하게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과표 단위는 백만원으로 동일</li> </ul> </li> <li>○ 여성가족부의 성별구분 통계작성 요청사항 반영하여 성별 구분</li> <li>○ 선원이 상용근로자에 포함됨을 알 수 있도록 용어(승선원→선원) 및 순서 변경</li> <li>○ 기간에 따라 근로자는 상용, 임시, 일용으로 구분되고 기업경영분석 등 타 통계에서는 기타종사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비교가능성 고려하여 기타 종사자 삭제</li> </ul>
<p><b>10. 어선보유현황</b></p>	<p><b>10. 어선현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항제목 간결하게 변경</li> </ul>
<p><b>11. 원양어업 생산량 및 생산금액</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량, 생산금액, 생산전망</li> <li>○ 생산금액 단위 : 백만원</li> </ul>	<p><b>11. 생산실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량, 생산금액, &lt;삭제&gt;</li> <li>○ 생산금액 단위 : <u>천원</u></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항제목 변경</li> <li>○ 조사결과 이용되지 않는 생산전망 삭제</li> <li>○ 다른 문항과 혼동되지 않도록 단위 일치하게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과표 단위는 백만원으로 동일</li> </ul> </li> </ul>

<p><b>13. 대차대조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위 : 백만원</li> <li>○ 유동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좌자산</li> <li>- 재고자산</li> </ul> </li> <li>○ 비유동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자산</li> <li>- 유형자산</li> <li>- 무형자산</li> <li>- 기타비유동자산</li> </ul> </li> <li>○ 유동부채</li> <li>○ 비유동부채</li> </ul>	<p><b>13. 재무상태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위 : 천원</li> <li>○ 유동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좌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금및현금성자산, 기타당좌자산</li> </ul> </li> <li>- 재고자산</li> </ul> </li> <li>○ 비유동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자산</li> <li>- 유형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li> <li>· 설비자산(건축·구축물, 기계장치, 선박·차량운반구, 기타설비자산)</li> <li>· 건설중인자산</li> <li>· 기타유형자산</li> </ul> </li> <li>- 무형자산</li> <li>- 기타비유동자산</li> </ul> </li> <li>○ 유동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차입금</li> <li>- 기타유동부채</li> </ul> </li> <li>○ 비유동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차입금</li> <li>- 기타비유동부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항제목 변경</li> <li>○ 반올림으로 인한 합계 불일치가 발생하여 단위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과표 단위는 백만원으로 동일</li> </ul> </li> <li>○ 현금비율지표 산출 위해 당좌자산의 하위항목(현금및현금성자산) 추가</li> <li>○ 별도문항(15.유형자산)으로 조사하던 내용을 비유동자산의 유형자산 하위항목으로 추가하여 조사</li> <li>○ 차입금의존도지표 산출을 위해 단기차입금 항목 추가</li> <li>○ 차입금의존도지표 산출을 위해 장기차입금 항목 추가</li> </ul>
<p><b>14. 손익계산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위 : 백만원</li> <li>○ 매출액</li> <li>○ 매출원가</li> <li>○ 판매비와관리비</li> <li>○ 영업외수익</li> <li>○ 영업외비용</li> <li>○ 법인세비용</li> <li>○ 당기순손익</li> </ul>	<p><b>14. 손익계산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위 : 천원</li> <li>○ 매출액</li> <li>○ 매출원가</li> <li>○ <u>매출총손익</u></li> <li>○ 판매비와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여</li> <li>- 퇴직급여</li> <li>- 복리후생비</li> <li>- 수도광열비</li> <li>- 임차료</li> <li>- 감가상각비</li> <li>- 접대비</li> <li>- 광고선전비</li> <li>- 보험료</li> <li>- 운반·하역·보관·포장비</li> <li>- 대손상각비</li> <li>- 지급수수료</li> <li>- 기타판매비와관리비</li> </ul> </li> <li>○ 영업손익</li> <li>○ 영업외수익</li> <li>○ 영업외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자비용</li> <li>- 기타영업외비용</li> </ul> </li> <li>○ 법인세비용<u>차감전순손익</u></li> <li>○ 법인세비용</li> <li>○ 당기순손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올림으로 인한 합계 불일치가 발생하여 단위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과표 단위는 백만원으로 동일</li> </ul> </li> <li>○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등 참고하여 항목추가</li> <li>○ 별도문항(17.판매비와관리비)으로 조사하던 내용을 판매비와관리비 하위항목으로 추가하여 조사</li> <li>○ 부가가치지표 등 산출을 위해 이자비용 항목추가</li> </ul>

<b>15. 제조원가</b> ○ 단위 : 백만원  ○ 원재료비  ○ 연료비 ○ 전력비 ○ 용수비 ○ 외주가공비 ○ 수선비	<b>15. 제조원가</b> ○ 단위 : 천원  ○ <u>당기총제조비용</u>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연료비 · 전력비 · <u>가스수도비</u> · 외주가공비 · 수선비 · <u>기타경비</u> ○ <u>기초재공품원가</u> ○ <u>기말재공품원가</u> ○ <u>타계정대체액</u> ○ <u>당기제품제조원가</u>	○ 반올림으로 인한 합계 불일치가 발생하여 단위변경 - 결과표 단위는 백만원으로 동일 ○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등 참고하여 항목추가 및 용어변경
<b>15. 유형자산</b>	<삭제>	○ “13.재무상태표”에 포함
<b>17. 판매비와관리비</b>	<삭제>	○ “14.손익계산서”에 포함
<b>18. 신규투자계획</b>	<삭제>	○ 조사결과 이용되지 않으므로 삭제
<b>20. 생산현황</b> ○ 생산금액 단위 : 백만원	<b>17. 생산현황</b> ○ 생산금액 단위 : 천원	○ 다른 문항과 혼동되지 않도록 단위 일치하게 변경 - 결과표 단위는 백만원으로 동일
<b>21. 선원현황</b> ○ 선장, 기관장, 직원, 부원 - 남, 여 구분없음	<b>18. 선원현황</b> ○ 선장, 기관장, 직원, 부원 - 남, 여 구분	○ 여성가족부의 성별구분 통계작성 요청 사항 반영하여 성별 구분
<b>22. 연간어로원가</b> ○ 단위 : 백만원	<b>19. 연간어로원가</b> ○ 단위 : 천원	○ 다른 문항과 혼동되지 않도록 단위 일치하게 변경

○ (2015년) 원양어업 통계조사 사업

- 변경승인일자 : '15.10.16

- 변경사항

기존	변경	비고
<b>조직규모 구분</b> ① 대기업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체 ② 중소기업 : ㉠ 종사자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④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 1,000억 원 이상 또는 평균매출액 1,500억원 이상인 경우 제외 등	<b>조직규모 구분</b> ① 대기업 : 없음(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② 중견기업 : 평균(연간)매출액 1,000억원 초과 ③ 중소기업 : 평균(연간)매출액 1,000억원 이하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견기업 추가

○ (2016년) 원양어업 통계조사 사업

- 변경승인일자 : '16.4.29

- 변경사항

기존	변경	비고
<p>※ 승인번호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448호</li> </ul>	<p>※ 승인번호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4048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승인통계 번호체계 변경에 따른 승인번호 변경</li> </ul>
<p>※ 조사표 명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 원양어업통계조사(단독) 조사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 원양어업(단독) 기업체 일반현황</li> <li>· II. 원양어업(단독) 기업체 생산·수출실적</li> <li>· III. 원양어업(단독) 기업체 경영실태</li> </ul> </li> </ul>	<p>※ 조사표 명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 원양어업통계조사 조사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 기업체 일반현황</li> <li>· II. 기업체 생산·수출실적</li> <li>· III. 기업체 경영실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답자 및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조사표 명칭 및 세부명칭 변경</li> </ul>
<p>※ 안내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조사는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의한 승인통계로, <u>원양어업체 국적선사의 생산·경영실태를 파악하고, 국적선사의 어선별 생산·선원현황 및 어로원가 등을 파악하여 국가의 원양어업 정책수립, 연구분석·평가, 원양어업 활동을 위한 기초정보로 제공하기 위한 조사입니다.</u></li> </ul>	<p>※ 안내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조사는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의한 승인통계로, <u>국내 원양업체의 생산·수출·경영실태를 파악하고, 국적선사의 어선별 생산·선원현황 및 어로원가 등을 파악하여 국가의 원양어업 정책수립, 연구기관의 연구분석·평가, 관련 업체의 원양어업 활동을 위한 기초정보로 제공하기 위한 조사입니다.</u></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구수정</li> </ul>
<추가>	2. 법인등록번호	○ 이용자 의견 반영 신규항목 추가
9. 종사자현황	10. 종사자현황	○ 원양어업 특성을 반영하여 조업시 종사자수를 표시할 수 있도록 월평균 종사자수에서 종사자수로 변경
12. 수출실적	13. 수출실적	○ 어종별 국가별 수출현황 결과표 추가를 위해 주요 수출국 조사에서 전체 수출국 조사로 변경
15. 제조원가	16. 제조원가	○ 원양어업은 고정비가 크며 이에 따른 감가상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제조원가-당기총제조비용-경비에서 감가상각비 개별항목으로 분리
17. 생산현황	18. 조업현황, 19. 생산현황	○ 품종별 해구별 출어횟수, 어로일수는 다양한 어종이 혼획되는 원양어업 특성상 작성이 어려워 해구별 출어횟수, 어로일수 작성으로 조사표 변경

	○ 반입량 ○ 업종부호	
<b>18. 선원현황</b> ○ 월평균승선원수(명)	<b>20. 선원현황</b> ○ <u>조업승선원수(명)</u>	○ 원양어업 특성을 반영하여 조업시 종사자수를 표시할 수 있도록 월평균 승선원수에서 조업승선원수로 변경
<b>(결과표) 산업분류</b> · 원양어업, 제조업, 도소매업, 기타	<b>(결과표) 산업분류</b> · 원양어업, 기타	○ 기존 매출액 비중에 따른 산업종류 구분(원양어업, 도소매업, 제조업, 기타)으로는 도소매업, 제조업, 기타 기업체 수가 2개 이하로 마스킹 처리되므로 원양어업과 기타로 구분하여 산업분류별 자료가 보여질 수 있도록 결과표 변경

- (2017년) 원양어업 통계조사 사업
  - 변경승인일자 : '17.5.16, '17.9.7
  - 변경사항

기존	변경	비고
<b>※ 조사실시기간</b> ○ 매년 6월~7월중 25일	<b>※ 조사실시기간</b> ○ 작성기준년도 익년 5~6월	○ 공표일자(9월) 준수 및 정확한 내용 검토, 자료처리를 위해 조사시기를 6~7월에서 5~6월로 변경
<b>※ 조사대상기간 및 기준시점</b> ○ 매년 1월1일~12월31일	<b>※ 조사대상기간 및 기준시점</b> ○ 조사대상기간 : 작성기준년도 1.1~12.31 ○ 기준시점 : 작성기준년도 12.31	○ 조사대상기간과 기준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
<b>※ 조사대상규모</b> ○ 조사대상기간 조업실적이 없거나 도산, 휴폐업한 업체, 허가유예어선 제외(2015년 기업체 50개사, 어선 227척)	<b>※ 조사대상규모</b> ○ 조사대상기간 조업실적이 없거나 도산, 휴폐업한 업체, 허가유예어선 제외(기업체 50여개사, 어선 220여척)	○ 매년 조사대상 수가 변동될 수 있음에 따라 포괄범위의 조사대상 수로 표시
<b>18. 조업현황</b> ○ 출어횟수 ○ 어로일수	<조사항목 미공표>	○ 빈번한 무응답 및 응답오류로 신뢰성 있는 결과 작성이 어렵고, 검증이 어려워 공표 대상에서 제외
<b>19. 생산현황</b> ○ 반입량	<조사항목 미공표>	○ 빈번한 무응답 및 응답오류로 신뢰성 있는 결과 작성이 어렵고, 검증이 어려워 공표 대상에서 제외
<추가>	<b>(결과표) 허가기준 기업체 및 어선수</b>	○ 원양어업통계조사의 기업체 및 어선 현황은 실조업을 기준으로 작성 * 정부 및 연구기관 등은 허가기준으로 원양어업 관리 ○ 원양업체 및 어선의 전체 규모가 보여질 수 있도록 기존 결과표(실조업기준)에 허가기준 기업체 및 어선 수 추가

○ (2018년) 원양어업 통계조사 사업

- 변경승인일자 : -
- 변경사항

기존	변경	비고
<b>※ 조사실시기간</b> ○ 작성기준년도 익년 5~6월	<b>※ 조사실시기간</b> ○ 작성기준년도 익년 4~5월	○ 공표일자(9월) 준수 및 정확한 내용 검토, 자료처리를 위해 조사시기를 5~6월에서 4~5월로 변경

○ (2019년) 원양어업 통계조사 사업

- 변경승인일자 : 2019.03.
- 변경사항

기존	변경	비고
<b>7. 기업형태</b> ○ 조직규모 - 대기업, 중소기업 중 하나 선택	<b>7. 기업형태</b> ○ 조직규모 -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중 하나 선택	○ 정부 정책마련 또는 관련 연구에 상세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조직규모의 중소기업을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구분(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 (2020년) 원양어업 통계조사 사업

- 변경승인일자 : 2020.08.
- 변경사항

기존	변경	비고
<b>(결과표)</b> 태평양(북서부, 중북부, 중서부, 중동부, 서남부, 동남부) 대서양(북서부, 북동부, 중서부, 중동부, 동북부, 서남부, 동남부) 인도양(서부, 동부) 남빙양(동부, 서부, 중부)	<b>(결과표)</b> 태평양(북서부, 중북부, 중서부, 중동부, 서남부, 동남부, 태평양 기타) 대서양(북서부, 북동부, 중서부, 중동부, 동북부, 서남부, 동남부, 대서양 기타) 인도양(서부, 동부, 인도양 기타) 남빙양(동부, 서부, 중부, 남빙양 기타)	○ 2019년도부터 '수산정보포털'의 생산데이터 수집/제공 절차 변경(선사 보고 데이터에서 'FMC →국립수산과학원→해수부'데이터로 변경)으로 해구정보가 누락된 데이터가 있음. 따라서 이 데이터를 해역별 '기타' 항목으로 분류

○ (2021년) 원양어업 통계조사 사업

- 변경승인일자 : 2021.02.
- 변경사항

기존	변경	비고
<b>(조사표)</b> 10. 종사자현황 육상직원만 별도로 조사하는 항목 없음 12. 생산실적 - 13. 수출실적 - 14. 재무상태표 - 19. 생산현황 - 20. 선원현황 - 월평균임금으로 조사	<b>(조사표)</b> 10. 종사자현황 육상직원 조사항목 추가 12. 생산실적 행정자료 활용으로 조사 제외 13. 수출실적 행정자료 활용으로 <b>일부</b> 조사 제외 14. 재무상태표 기타유동자산 과목 추가 19. 생산현황 행정자료 활용으로 조사 제외 20. 선원현황 - 총급여액, 승선개월 조사로 변경	* 응답자의 응답부담 경감 * 계산 오류 감소 * 데이터 정확성 제고

## 1-6 응답 소요시간

### 응답 소요시간 검토결과

- 조사항목이 많고 기업체, 어선의 연간 수익, 비용 등에 대한 작성으로 1시간 이상 소요

## 2. 모집단 및 표본틀

### 2-1 목표모집단과 조사모집단

#### 목표모집단

-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로부터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모든 어선과 그 어선을 보유한 단독 기업체

#### 조사모집단

- 조사대상기간 생산실적이 없는 업체 및 어선 제외, 생산실적이 있으나 도산, 휴·폐업한 업체 및 유예어선은 제외하되 생산실적, 수출실적은 포함
  - ※ 원양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원양어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필수적으로 원양어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목표 모집단 중 실제 사업을 운영 중인 업체에 대해서 조사함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원양어업허가 및 신고)

- ① 원양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 IV. 자료수집

### 1. 조사방법

#### □ 조사방법 선택에 대한 검토

- 조사인력
  - 서울 1명, 부산 2명
- 조사방법
  - 조사원이 직접 기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조사원 면접 방식
  - E-mail, Fax 등의 방법을 통한 조사도 병행 실시
- 조사비용
  - 당해 통계청 조사원 일일보수 (78,880원)
- 조사기간
  - 2024.4.15.~2024.5.9.
- 조사체계
  - 원양업체 ⇔ 조사원 ⇔ 원양산업협회
  - 원양업체에 E-mail로 조사표 배부와 조사원이 방문하여 조사표를 배부하여 동시에 조사가 이루어지며, 업체는 선택해서 회신함
- 자료수집 방법
  - 협회자료 이용 : (기업체) 어선현황, 생산실적, 수출실적 (어선) 어선현황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자료 이용(Dart) : 공시기업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응답 조사표 : 협회 및 Dart 자료 외 조사항목
- 조사방법 선택에 대한 검토
  - 본 조사의 경우, 조사문항이 선택형 문항이 아니고 조사표 작성시 참고해야 할 자료가 많아 조사원 방문시 즉시 응답하기 어려운 항목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여, E-mail 등을 통해 작성조사표를 수신하고 있음. 그 결과, 단위무응답률은 크게 감소하였음.

### 1-1 조사과정

#### □ 선택한 조사방법에 대한 조사과정

- 방문 전
  - (원양산업협회) 조사 안내 공문을 통해 조사명, 조사일정, 조사내용 등 안내, 조사 응답자 지정요청, 응답자 지정 후 조사 시작에 맞춰 조사표, 작성요령서 등 메일 송부, 통계조사 실시 안내 보도자료 배포
  - (조사원) 전화로 기업체 지정 응답자에게 연락 후 방문일정 조율, 조사표 및 리플렛, 작성요령서, 답례품 등 물품 준비
  - 사전 응답자 지정을 통해 조사 지연 방지, 원양업체의 운영여부 확인
- 방문 시
  - 기업체를 방문하여 조사목적과 조사내용, 조사실시기관(해양수산부 및 한국원양산업협회)을

안내 후 조사협조 요청, 조사용품 전달

- 조사를 거절하는 경우, 조사 취지와 목적을 다시 설명하고 재차 부탁 또는 다른 날 재방문을 통해 거절률을 낮춤
- 기업체 개별정보는 철저히 보호됨을 알림
- 조사표 제출 예정일 확인

○ 방문 후

- 제출 조사표 검토, 오류사항 확인 및 수정 요청
- 미제출 업체에 대한 제출 독려, 재방문

□ 조사방법별 응답 비율, 응답자 특성, 추정치에 미치는 영향 등 분석·검토

- 원양어업통계조사 특성상, 조사표 작성을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자료, 선원자료 등을 참고해야 하므로 조사원 방문시 즉각적으로 응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2020년 이후로는 조사 대상의 100%가 E-mail 등을 통해 조사표를 작성하고 제출하고 있음

## 2. 조사원 채용 및 처우

□ 조사원 채용 방법 및 과정

- 조사원 모집 공고 : 2024. 3. 11.(월) ~ 3.19.(화)
  - 방법 :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OFIS), 잡코리아 등을 통해 공고. 지원자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제출
- 서류 심사 : 2024. 3. 21.(목)
  - 평가방법 : 경력 기간에 따라 정량 평가, 자기소개서 내용에 대한 정성 평가 후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합격자 발표 : 2024. 3. 22.(금), 개별통지
  - 방법 :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OFIS) 통해 공지

□ 조사원 자격요건, 지위, 급여수준

- 조사원 채용 공고
  - 공고기관 : 한국원양산업협회 해외수산협력센터, 잡코리아
  - 공고내용 : 2024년 원양어업 통계조사 조사원 채용공고
  - 공고기간 : '24.3.11.~3.19.
  - 채용인원 및 기간, 처우

채용 구분	근무지	채용 인원	계약 방법	계약기간	수당
통계조사 조사원	서울	1명	도급	[교육] 2024.4.3. (1일)	78,880원 (1일 기준)
	부산	2명	계약	[본조사] 2024.4.15.~5.9. (22일)	

- 자격요건
  - 통계조사 유경험자
  - 해외수산협력센터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담당업무

- 현지 조사업무 수행
  - 조사한 내용 무응답 항목 검토
  - 조사관리자에게 조사내용 및 진척사항 보고
  - 기타 조사관련 지시사항 처리
- 채용과정

업무단계	일정	수행업무
세부 시행계획 수립	'24.3월	조사원 채용 규모, 일정 및 방법 등 최종 확정
조사원 모집공고	'24.3.11.~3.19.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 잡코리아 등을 통해 공고
최종 합격자 발표	'24.3.22.	최종 합격자 개별 발표

## 2-2 조사원 교육훈련

### □ 원양어업 통계조사 조사원 교육

- 교육목적
  - 원양어업 통계조사 조사원의 조사업무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전문성 제고로 통계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도 향상
- 교육일정
  - 매년 조사시작 약 1~2주 전에 1일 교육 진행
- 교육내용
  - 원양어업 통계조사 조사목적, 연혁 등 소개
  - 조사원 준수사항
    - ① 조사원은 조사지침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조사업무 수행 전 지침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야 함
    - ② 기업체 방문 시에는 조사지침서를 휴대하며, 의문사항은 반드시 확인 후 조사에 임해야 함
    - ③ 특별한 사유(질병 등)로 조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조사 진행사항 등 조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 ④ 반드시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함
    - ⑤ (비표본 오차 최소화) 조사항목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야 하고, 금액단위 등 기입 오류에 주의하여야 함

▶ 「현장조사 운영지침 제8조(현장조사 직원 기본자세)」 현장조사 직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본자세를 가져야 한다.

1. 조사지침의 정확한 이해 및 원칙에 따른 조사업무 처리
2. 응답자와의 유대 강화
3. 비표본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성실한 조사
4.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응답자 정보의 비밀엄수
5. 그 밖에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 유지

- 조사용품 수령 및 관리

용 품 명	활 용
조사원명함	기업체를 방문할 때 신분확인 목적으로 사용
조사표	조사가 끝난 다음 조사관리자에게 제출
조사지침서	조사할 때 항상 휴대하며 현장에서 의문이 생길 경우 활용
작성요령서	조사표 작성방법에 대한 설명서, 조사표와 함께 배부
조사명부	조사기간 중 조사 대상처 명부로 활용
조사협조 공문	조사 실시 안내 및 협조 부탁
조사일지	조사대상과 통화, 방문 등 조사상황 작성
답례품	조사 응답기업체에 답례품 지급

- 기업체의 비밀·정보 보호

<p>▶ 제33조(비밀의 보호)</p> <p>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p> <p>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p> <p>▶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p> <p>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p> <p>▶ 제39조(벌칙)</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통계종사자(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자</li> <li>2.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li> <li>3.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li> <li>4.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li> <li>5.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을 위하여 수집·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조사표 등 기초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또는 말소하거나 통계자료를 고의적으로 조작한 자. 다만, 통계작성기관 내부에서 내용검토 절차 또는 통계작성기법에 따라 조사오류 또는 입력오류 등을 수정 또는 변경한 자를 제외한다.</li> </ol> <p>② 제27조의2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작성된 통계를 공표 예정일 전날 낮 12시 이전에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

- 조사원 안전수칙

- ① 조사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다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함
- ② 조사원은 상해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해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하여 상해 사고에 대비
- ③ 조사당일의 일정을 가족에게 알려주고 도중에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사항을 가족에게 통보할 것
- ④ 사고나 부상 시 긴급구조 요청 후 즉시 가족과 조사관리자에게 연락할 것
- ⑤ 조사활동을 하는데 적합한 의상이나 신발을 착용하고, 화려하거나 노출이 심한 의상, 지나친 화장, 종교·사회단체 배지 부착을 피할 것

- 조사불응, 장기부재 등에 대한 대응방법 교육

- ① 사전 전화접촉 시 조사대상이 방문을 거절할 경우 조사관리자에게 보고
- ② 응답을 거부하는 응답자와 면접을 청할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원명함 및 신분증을 제시하여 자신을 먼저 소개
- ③ 면접의 목적 응답내용에 대한 비밀보장 등을 설명하여 응답자가 응답을 위한 충분한 분위기가 조성된 후에 설득을 시작
- ④ 방문 시 담당 조사응답자가 부재인 경우 연락처를 남겨두고 추후 다시 연락하여 재 방문 일정을 약속하며 3회 이상 재방문하였으나 만나지 못한 경우, 조사관리자에게 보고
- ⑤ 계속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조사관리자에게 보고
- ⑥ 통계조사원이 면접조사 중 장기부재로 인해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는 조사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전화조사 등 다른 방법을 병행하여 조사
- ⑦ 장기부재로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조사방법을 강구하고, 해당 기업체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대리응답자를 통해 파악 가능한 항목까지 최대한 조사

- 조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질문 유형과 응답 방법

- 조사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작성예시 설명
- 조사기간 동안 구체적 조사일정계획 논의
- 조사진행절차, 보고사항, 애로사항 처리방법 등 안내
- 조사일지 작성방안 교육 건의사항 및 의견 수렴

※ 교육교재는 첨부한 조사지침서 참고

○ 교체된 조사원에 대한 교육실시 여부

- 조사기간 중 특별히 문제를 일으킨 조사원이 발생하지 않아 교체를 하지 않음

## 2-3 조사원 업무량

### □ 조사원 업무 배정 원칙

○ 기본원칙

- 지역 특성이나 조사구 면적, 이동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하게 배정
- 총 조사기간은 약 4주 정도로 계획하고, 1~2일 1개의 사업체를 조사할 수 있도록 배정함

- 지역 특성이나 조사구 면적, 이동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하게 배정
- 실제 조사 사업체 수 및 조사원 수
  - 조사 사업체 수 : 60개사(합작기업체 25개사 포함), 232척 어선(합작어선 43척 포함)
  - 조사원 수 : 3명
- 업무배정 결과
  - 조사원 1인당 약 4주의 기간 동안 평균 20개 사업체를 조사
  - 조사원은 한 사업체의 노무담당자, 선박담당자, 생산·수출 담당자 모두에게 조사안내를 해야 함에 따라 방문 소요 시간이 많음

### 3. 조사 실시

#### 3-1 조사업무 흐름도

##### □ 단계별 업무 흐름도 (2024)

추진내용	추진일정	비고
<b>I. 조사기획</b>	<b>1~2월</b>	
1. 실시계획수립 ◦ 통계조사 기본계획 수립	1~2월	
2. 이용자 의견조사	2~3월	정부, 연구기관, 업체 등 이용자 의견조사 실시
<b>II. 조사준비</b>	<b>3~4월</b>	
1. 조사표류 설계 ◦ 조사표류 보완 및 확정 ◦ 조사지침서 등 작성	3월 3월	조사표 변경 관련 협의 및 변경승인 신청 조사지침서 및 작성요령서 등 작성
2. 조사대상 확정 ◦ 조사명부 작성	4월	조사명부 확정
3. 조사표 및 조사용품류 인쇄	4월	
4. 조사인력 관리 ◦ 접수 및 채용 ◦ 조사원 교육 ◦ 조사명부에 따른 업무분장	3~4월 4월 4월	서울 1명, 부산 2명 조사원 채용 조사원 교육 1회 실시 조사원별 업무분장
<b>III. 조사실시</b>	<b>4.15.~5.19.</b>	
1. 조사실시	4.15.~5.9.	조사기간내 실사지도 실시
2. 실사지도		
<b>IV. 자료처리</b>	<b>5~8월</b>	
1. 내용검토	5~6월	수신조사표 내용검토 및 수정입력
2. 자료처리	7~8월	전문가 자문회의 및 자료처리
<b>V. 결과공표</b>	<b>8~12월</b>	
1. 결과공표	8월	결과자료 KOSIS 등록
2. 보고서 발간	12월	보고서 발간

## 3-2 조사준비

### □ 조사홍보 실시 내용과 방법

- 조사실시 안내 공문 발송
  -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응답자에게 조사 안내 공문을 발송함.
- 조사안내 리플렛 제작 및 배부
  - 현장조사 시 조사표, 작성요령서, 조사 소개 리플렛을 배부함.
- 조사실시 안내 보도자료 배포
  - 수산분야 신문사를 통해 원양어업통계조사 실시 안내 보도

### □ 응답자(조사대상) 사전 통지

- 본조사 시작 전 공문을 통해 업체별 응답자 및 연락처 확인
- 기업체 방문 전 조사원이 전화로 연락하여 변동사항 확인 및 조사방문 알림

### □ 조사구 확인 또는 조사명부 보완

- 기업체 전수조사이므로 조사구는 없으나 과거에 조사된 대상 기업체 및 기업체의 인사 담당자 정보가 있음
- 조사명부는 원양산업협회 회원명부 및 직접 접촉으로 변동사항을 확인함

## 3-3 조사항목별 조사 방법

### □ 조사표 기입 시 안내사항

- 조사대상이 기업체이므로 개별 기업체가 아닌 기업 전체의 현황을 조사
- 조사대상기간(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 1년간의 실적을 조사
- 수량 및 금액은 1, 2, 3, ...과 같이 아라비아 숫자로 해당란에 바르게 기입하며, 단위 미만은 반올림하여 정수로 기입한다.
- 상호 연관 항목의 내용도 재검토 후 반드시 일치되도록 한다.
- 해당 사항이 없는 조사항목은 사선(\) 처리한다.
- 숫자는 조사표에 있는 단위에 맞도록 기입하여야 하며, 조사표에 사용된 단위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다.

금액 : 천원, 무게 : M/T

- 조사항목별로 단위가 다른 항목이 있으므로 반드시 단위를 확인하여 지정된 단위에 맞게 기입한다.
- 각 업체 및 선박의 어선, 생산, 수출현황 자료를 해당업체 메일로 송부·제공하므로 확인 후 참고하여 응답한다.
  - 제공자료 : (기업체) 11. 어선현황, 12. 생산실적, 13. 수출실적, (어선별) 17. 어선현황(일부), 19. 생산현황(일부)
- “Ⅲ. 기업체 경영실태”는 기업체의 재무제표 제출 시 기입하지 않아도 된다.

- (문항별 제출자료) 14. 재무상태표 -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 15. 손익계산서 - 손익계산서,
- 16. 제조원가 - 제조원가명세서

□ 주요항목별 작성 요령

**가. 기업체 일반현황**

1. 기업체명 (주)□□수산

- 기업체명**
- 실제 사용하고 있는 기업체명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기업체명을 기입
  - 기업체명이 없는 경우 대표자명을 기입

2. 법인 등록번호 999999-9999999

- 법인 등록번호**
-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등록번호를 기입

3. 사업자 등록번호 999-99-99999

- 사업자 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 상의 등록번호를 기입
  -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국세청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관리를 위해 부여한 고유번호 기입

4. 대표자명 홍길동 ① 남 ② 여

- 대표자명**
-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명을 기입하며 대표자가 2명인 경우 1명만 기입
  - 대표자의 성별 확인하여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

**창설연월** | · 현재 사업활동을 실질적으로 시작한 연월을 기입  
· 창설연월 변경여부 판단기준

창설연월 변경시점으로 기입	- 주요업종(산업대분류 기준)이 변경된 경우 -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예: 개인사업체→회사법인) - (개인사업체)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상속제외)
창설연월 변경하지 않음	- (법인사업체)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개인사업체) 상속으로 인해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소재지** | · 기업본사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층, 호수까지 기입

**자본금** | · 자본금 총액을 기입(단위: 천원)  
·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상 자본의 자본금 항목(보통주자본금과 우선주자본금의 합계) 금액을 천원으로 반올림하여 기입

8. 기업형태	조직형태 : ① 개인사업체 ② 회사법인 ③ 회사 이외 법인
	조직규모 : ① 대기업 ② 중견기업 ③ 중기업 ④ 소기업

**조직형태** | · ① 개인사업체 ② 회사법인 ③ 회사 이외 법인 중 하나 선택  
· 조직형태 구분기준

① 개인사업체	개인이 경영하는 사업체(2인 이상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도 포함)
② 회사법인	상법에 의해 설립되고 법인격을 갖추고 있는 사업체
③ 회사 이외 법인	상법 외 민법에 의한 재단·사단법인과 특별법에 의한 특별법인

**조직규모** | · ① 대기업 ② 중견기업 ③ 중기업 ④ 소기업 중 하나 선택  
· 규모 기준

업종	구분	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A	80억원 이하	1,000억원 이하	좌측 기준을 초과한 경우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정한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광업	B	80억원 이하	1,000억원 이하		
식료품 제조업	C10	120억원 이하	1,000억원 이하		
음료 제조업	C11	120억원 이하	800억원 이하		
담배 제조업	C12	80억원 이하	1,000억원 이하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80억원 이하	1,000억원 이하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120억원 이하	1,500억원 이하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120억원 이하	1,500억원 이하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80억원 이하	1,000억원 이하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80억원 이하	1,500억원 이하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80억원 이하	800억원 이하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20억원 이하	1,000억원 이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20억원 이하	1,000억원 이하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120억원 이하	800억원 이하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80억원 이하	1,000억원 이하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120억원 이하	800억원 이하		
1차 금속 제조업	C24	120억원 이하	1,500억원 이하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20억원 이하	1,000억원 이하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0억원 이하	1,000억원 이하		
의료, 정밀 공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80억원 이하	800억원 이하		
전기장비 제조업	C28	120억원 이하	1,500억원 이하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20억원 이하	1,000억원 이하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20억원 이하	1,000억원 이하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80억원 이하	1,000억원 이하		
가구 제조업	C32	120억원 이하	1,500억원 이하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80억원 이하	800억원 이하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10억원 이하	60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20억원 이하	1,000억원 이하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	30억원 이하	800억원 이하		
수도업	E36	120억원 이하	1,000억원 이하		
건설업	F	80억원 이하	1,00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G	50억원 이하	1,00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H	80억원 이하	80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I	10억원 이하	400억원 이하		
정보통신업	J	50억원 이하	800억원 이하		
금융 및 보험업	K	80억원 이하	400억원 이하		
부동산업	L	30억원 이하	400억원 이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0억원 이하	600억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임대업은 제외한다)	N	30억원 이하	600억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P	10억원 이하	400억원 이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10억원 이하	600억원 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0억원 이하	600억원 이하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0억원 이하	600억원 이하		
업종무관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 독립성 기준

중기업, 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닐 것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1항2호가목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닐 것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2항1호가목	①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②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법인의 피출자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2항1호가목, 나목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등 제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1항2호나목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2항1호나목	
관계기업의 경우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중소기업규모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1항2호다목	관계기업의 경우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기준 초과하는 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삼성, 에스케이, 현대자동차, 엘지, 포스코, 롯데, 한화, 지에스, HD현대, 농협, 신세계, 케이티, 씨제이, 한진, 카카오, 엘에스, 두산, DL, 에이치엠엠, 중흥건설, 현대백화점, 부영, 네이버, 미래에셋, 에쓰오일, 금호아시아나, 하림, 영풍, 에이치디씨, SM, 효성, 셀트리온, 호반건설, 케이티앤지, KCC, 장금상선, 대우조선해양, 오씨아이, 코오롱, 태영 (2023년 5월 40개사)
---

<참고> 평균 매출액 산정(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	창업일·합병일·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참고> 중소기업 유예기간

- 사유 발생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봄 (최초 1회에 한함)
- 유예기간 제외 사유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과의 합병
  - 중소기업과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 합병한 뒤 당초 유예기간이 지난 경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편입
  - 이미 유예를 적용받은 적 있는 경우

<참고>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으로 간주(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중소기업 중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
  2.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중견기업 후보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9. 사업종류	산업분류부호	주요 취급품목	사업내용	매출액 비중(%)
	03111	참치	원양수산물을 어선으로 조업하여 원재료로 판매	80
	10220	참치	어획한 수산물을 통조림으로 가공하여 판매	20

**사업종류**

- 사업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액이 큰 순서부터 기입
- 무엇을 가지고(원재료, 영업장소 등), 어떤 방법으로(주요영업, 생산활동), 생산·제공하였는지(최종재화, 용역)를 기입
- 산업분류부호 :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기입

한국표준산업분류표(요약)

구분	내용	산업 분류 호	구분	내용	산업 분류 호
어업	원양어업	03111	제조업	수산물 훈제조리 및 유사제품 제조업	10211
	연근해어업	03112		수산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10212
	내수면어업	03120		수산물 냉동품 제조업	10213
	해면양식어업	03211		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10220
	내수면양식어업	03212	도소매업	수산물 도매업	46313
	수산물부화 및 종묘생산업	03213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46322
	어업관련 서비스업	03220		수산물 소매업	47213
그 외		99999		기타석료품 소매업	47219

구분	종사자수(명)			연간급여액(천원)			
	남	여	계	남	여	계	
상용 근로자	육상직원	5	5	10	5,000	5,000	10,000
	선원	한국인	5	0	5	5,000	0
외국인		15	0	15	7,500	0	7,500
선원 소계		20	0	20	12,500	0	12,500
상용-육상직원 및 선원 계		25	5	30	17,500	5,000	22,500
임시 및 일용근로자 계		10	10	20	800	800	1,600
합계 (상용, 임시 및 일용근로자)		35	15	50	18,300	5,800	24,100
연간급여액: [보험료, 근로조합비 공제 전 금액 기재] 기본임금(통상임금)과 시간외수당(생산수당 등), 상여금 포함 / 퇴직금, 복리후생비 제외							

### 종사자현황

#### · 종사자 구분기준

육상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또는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정규직원으로 일하는 육상직원</li> <li>보수를 받는 유급임원(사장, 이사, 전무, 상무, 상근감사 등)은 포함되나 무급 비상근임원인 경우는 제외</li> </ul>
선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업 시 각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을 기준으로 작성</li> <li>현재 어기종료한 선박이라도 당해 연도에 조업을 한 경우 선원 현황에 포함</li> </ul>
상용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또는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정규직원으로 일하는 자로 선원, 육상직원을 모두 포함</li> </ul>
임시 및 일용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또는 일정한 고용계약을 하지 않았으나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사업 완료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사람</li> </ul>

### 연간급여액

- 2023년1월1일부터 2023년12월31일까지 급여액 합계금액을 기입 (단위: 천원)
- 퇴직금, 복리후생비는 제외
-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은 포함하고 보험료, 근로조합비 등을 공제하기 이전의 급여액
- 발생기준 회계에 따라 2023년 이전의 체불급여를 2023년에 지급한 것은 제외하고 2023년에 지불해야하나 지불하지 못한 미지급 급여액은 포함

11. 어선현황	보유어선척수	보유어선 총 톤수	2023년 조업척수
	5 척	1,500 톤(G/T)	4 척

보유어선  
척수  
보유어선  
총 톤수  
2023년  
조업척수

- 2023년12월31일 기준 보유어선 수를 기입
- 2023년12월31일 기준 보유어선의 톤수 합계 수치를 기입
- 보유한 어선 중 2023년 생산실적이 있는 어선 수를 기입

**나. 기업체 생산·수출현황**

12. 생산실적	생산량	생산금액
	행정자료(수산정보포털) 활용	

생산실적

- 수산정보포털을 통해 보고된 원양어획물 생산량, 생산금액과 활용

13. 수출실적	HSK코드								품명	수출국	수출량(톤,M/T)	수출금액(천원)	
	①	0	3	0	3	4	3	0	0	0	가다랑어	태국	6000
②	0	3	0	3	4	2	0	0	0	황다랑어	일본	3000	12000
③	0	3	0	3	4	9	0	0	0	기타다랑어	베트남	500	600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수출실적

- 신고일자 기준으로 2023년1월1일부터 2023년12월31일까지의 한국원양산업협회 경유 세관 신고자료 활용
  -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제34조에 따라 현지판매를 위해 한국원양산업협회를 공유하여 서울세관에 신고한 자료(원양수산물 신고)
- 수출한 원양어획물의 수출국, 수출량, 수출금액 기입
- 별첨의 해당 기업체 수출 실적 확인 후, 누락된 수출 실적 기입
- 수출금액 기준이 미화달러인 경우 해당 월의 월평균환율을 이용하여 환산하여 기입
- 2023년 월평균 원/달러 환율(기획재정부, 매매기준율, 기간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247.25	1,270.74	1,305.73	1,320.01	1,328.21	1,296.71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286.30	1,318.47	1,329.47	1,350.69	1,310.39	1,303.98

## 다. 기업체 경영실태

		구분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14. 재무상태표	자산	①유동자산(=②+⑤+⑥)			<b>8</b>	<b>5</b>	<b>5</b>	<b>5</b>	<b>5</b>	<b>5</b>	<b>5</b>	<b>4</b>		
		②당좌자산(=③+④)				7	7	7	7	7	7	7		
		③현금및현금성자산							6	6	6	6	6	
		④기타당좌자산				7	7	1	1	1	1	1		
		⑤재고자산			7	7	7	7	7	7	7	7		
		⑥기타 유동자산											0	
		⑦비유동자산(=⑧+⑨+⑩+⑰)		<b>8</b>	<b>9</b>	<b>5</b>	<b>5</b>	<b>5</b>	<b>5</b>	<b>5</b>	<b>5</b>	<b>5</b>	<b>1</b>	
		⑧투자자산			7	7	7	7	7	7	7	7	7	
		⑨유형자산(=⑩+⑪+⑬+⑰)		7	3	9	9	9	9	9	9	9	7	
		⑩토지			6	6	6	6	6	6	6	6	6	
		⑪설비자산(=⑫+...+⑮)		6	6	6	6	6	6	6	6	6	5	
		⑫건축,구축물			5	5	5	5	5	5	5	5	5	
		⑬기계장치			5	5	5	5	5	5	5	5	5	
		⑭선박,차량운반구		5	5	5	5	5	5	5	5	5	5	
		⑮기타설비자산												0
		⑯건설중인자산												0
		⑰기타유형자산				6	6	6	6	6	6	6	6	
		⑱무형자산				7	7	7	7	7	7	7	7	
		⑲기타비유동자산												0
	자산 총계(=①+⑦)			<b>9</b>	<b>8</b>	<b>1</b>	<b>1</b>	<b>1</b>	<b>1</b>	<b>1</b>	<b>1</b>	<b>0</b>	<b>5</b>	
	부채	①유동부채(=②+③)				<b>8</b>	<b>8</b>	<b>8</b>	<b>8</b>	<b>8</b>	<b>8</b>	<b>8</b>	<b>8</b>	
		②단기차입금					7	7	7	7	7	7	7	
		③기타유동부채				8	1	1	1	1	1	1	1	
④비유동부채(=⑤+⑥)			<b>8</b>	<b>8</b>	<b>3</b>	<b>3</b>	<b>3</b>	<b>3</b>	<b>3</b>	<b>3</b>	<b>2</b>	<b>9</b>		
⑤장기차입금				7	7	7	7	7	7	7	7	7		
⑥기타비유동부채			8	0	5	5	5	5	5	5	5	2		
자본	⑦			<b>8</b>	<b>8</b>	<b>8</b>	<b>8</b>	<b>8</b>	<b>8</b>	<b>8</b>	<b>8</b>	<b>8</b>		
부채 및 자본 합계(=①+④+⑦)			<b>9</b>	<b>8</b>	<b>1</b>	<b>1</b>	<b>1</b>	<b>1</b>	<b>1</b>	<b>1</b>	<b>0</b>	<b>5</b>		

## 재무상태표

- 2023년12월31일 기준의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의 내용을 기입
- 회계기준일자가 12월31일이 아닌 경우 가장 최근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작성

## 자산

- $\text{유동자산} = \text{당좌자산} + \text{재고자산} + \text{기타 유동자산}$
- $\text{당좌자산} = \text{현금및현금성자산} + \text{기타당좌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유사계정 : 현금, 현금및현금등가물, 보통예금 등
- 기타당좌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제외한 당좌자산 하위항목의 합계
- $\text{비유동자산} = \text{투자자산} + \text{유형자산} + \text{무형자산} + \text{기타비유동자산}$
- $\text{유형자산} = \text{토지} + \text{설비자산} + \text{건설중인자산} + \text{기타유형자산}$
- $\text{설비자산} = \text{건축·구축물} + \text{기계장치} + \text{선박·차량운반구} + \text{기타설비자산}$
- $\text{자산총계} = \text{유동자산} + \text{비유동자산}$

## 부채

- $\text{부채} = \text{유동부채} + \text{비유동부채}$
- $\text{유동부채} = \text{단기차입금} + \text{기타유동부채}$
- 기타유동부채 : 단기차입금을 제외한 유동부채 하위항목의 합계
- $\text{비유동부채} = \text{장기차입금} + \text{기타비유동부채}$
- 기타비유동부채 : 장기차입금을 제외한 비유동부채 하위항목의 합계

## 자본

-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의 합계
- \* 자본금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 $\text{자산} = \text{부채} + \text{자본}$

	구분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15. 손익계산서	①매출액			4	4	4	4	4	4	4	4
	②매출원가			3	3	3	3	3	3	3	3
	③매출총이익(=①-②)			1	1	1	1	1	1	1	1
	④판매비와관리비(=⑤+...+⑩)				2	2	8	1	3	4	3
	⑤급여				1	1	1	1	1	1	1
	⑥퇴직급여				1	1	1	1	1	1	1
	⑦복리후생비						1	1	1	1	1
	⑧수도광열비							1	1	1	1
	⑨세금과공과						1	1	1	1	1
	⑩임차료						1	1	1	1	1
	⑪감가상각비						1	1	1	1	1
	⑫접대비							1	1	1	1
	⑬광고선전비										0
	⑭보험료							1	1	1	1
	⑮운반·하역·보관·포장비						1	1	1	1	1
	⑯대손상각비								1	1	1
	⑰지급수수료								1	1	1
	⑱기타판매비와관리비									1	1
	⑲영업손익(=③-④)				8	8	2	9	7	6	8
	⑳영업외수익					5	5	5	5	5	5
	㉑영업외비용(=㉒+㉓)						6	6	6	6	6
	㉒이자비용							7	7	7	7
	㉓기타영업외비용						5	8	8	8	9
	㉔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㉑+㉒-㉓)				9	3	1	8	6	5	7
	㉕법인세비용							8	8	8	8
	㉖당기순손익(=㉔-㉕)				9	3	0	9	7	6	9

### 손익계산서

- 2023년1월1일부터 2023년12월31일까지를 기준으로 작성된 손익계산서의 내용을 기입
- 회계기준기간이 다른 경우 가장 최근 작성한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 매출총이익 = 매출액 - 매출원가
- 영업손익 = 매출총이익 - 판매비와관리비
-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 영업손익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 당기순손익 =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 법인세비용
- 판매비와관리비 = 급여 + 퇴직급여 + 복리후생비 + 수도광열비 + 세금과공과 + 임차료 + 감가상각비 + 접대비 + 광고선전비 + 운반·하역·보관·포장비 + 보험료 + 대손상각비 + 지급수수료 + 기타판매비와관리비

- 영업외비용 = 이자비용 + 기타영업외비용
- 기타영업외비용 : 이자비용을 제외한 영업외비용 하위항목 합계

	구분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16. 제조원가	①당기총제조비용(=②+③+④)				2	4	7	3	3	5	4
	②재료비						2	2	2	2	2
	③노무비				2	2	2	2	2	2	2
	④경비(=⑤+⑥+⑦+⑧+⑨+⑩+⑪)					2	2	8	9	1	0
	⑤연료비					1	1	1	1	1	1
	⑥전력비							1	1	1	1
	⑦가스수도비							2	2	2	2
	⑧외주가공비										0
	⑨수선비					1	1	1	1	1	1
	⑩감가상각비							3	2	4	4
	⑪기타경비								1	1	1
	⑫기초재공품원가										0
	⑬기말재공품원가										0
	⑭타계정대체액										0
	⑮당기제품제조원가(=①+⑫-⑬-⑭)					2	4	7	3	3	5

### 제조원가

- 2023년1월1일부터 2023년12월31일까지를 기준으로 작성된 제조원가명세서의 내용을 기입
- 회계기준기간이 다른 경우 가장 최근 작성한 제조원가명세서를 기준으로 작성
- 제조원가명세서와 유사한 재무보고서로는 어로원가명세서, 어로제품매출원가명세서 등이 있음
- 당기제품제조원가 = 당기총제조비용 + 기초재공품원가  
- 기말재공품원가 - 유형자산(타계정)대체액
- 제조원가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경비 = 연료비 + 전력비 + 가스수도비 + 외주가공비 + 수선비  
+ 감가상각비 + 기타경비

## 라. 어선현황 조사

17. 어선현황	선명	△△99	톤수	1,000 G/T	진수년월	1999 년 12 월
	겸업여부	① 단독 ② 겸업	주업종부호	101	겸업종부호	해당없음

**어선현황**  
**업종부호**

- 원양어업 허가신고된 선명, 톤수, 진수년월, 업종을 기입
- 업종부호표를 참고하여 기입

업종부호					
업종	업종부호	업종	업종부호	업종	업종부호
참치연승	101	북양트롤	105	원양외줄낙시	109
저연승	102	원양트롤	106	모선식외줄낙시	110
참치선망	103	새우트롤	107	기타	111
원양봉수망	104	오징어채낙기	108		

- 겸업인 경우 생산량 비중이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비중이 작은 업종을 겸업종으로 기입하고 겸업이 아닌 경우 주업종만 기입

18. 조업현황	업종부호	해구부호	출어횟수	어로일수
	101	67	2	150

**업종부호**  
**해구부호**

- 업종부호표를 참고하여 기입
- 해구부호표를 참고하여 기입

(18. 조업현황, 19. 생산현황) 해구부호								
조업수역		해구부호	조업수역		해구부호	조업수역		해구부호
태평양	북서부	61	대서양	북서부	21	인도양	동남부	47
	중북부	67		북동부	27		서부	51
	중서부	71		중서부	31		동부	57
	중동부	77		중동부	34	남빙양	동부	48
	서남부	81		동북부	37		서부	58
	동남부	87		서남부	41		중부	88

**출어횟수**  
**어로일수**

- 어로작업을 위하여 근거리항을 출항한 횟수를 기입
- 출어 후 어장까지의 항해일수, 탐어·집어·어로일수 등을 모두 합한 실제 조업을 위해 소요된 일수를 기입

19. 생산현황	품종부호	해구부호	생산량(톤MT)	생산금액(천원)	반입량(톤MT)	업종부호
행정자료(수산정보포털) 활용						

### 생산현황

- 수산정보포털을 통해 보고된 원양어획물 생산량, 생산금액과 활용

20. 선원현황	구분		선장		기관장		직원(선장기관장 제외)		부원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한국인	평균 조업 선원수 (명)		1	0	1	0	3	0	3	0	
	총 급여액 (천원)		5,000	0	4,000	0	3,000	0	2,800	0	
외국인	평균 조업 선원수 (명)		0	0	0	0	10	0	20	0	
	총 급여액 (천원)		0	0	0	0	1,000	0	800	0	
승선기간											개월

### 선원현황

- 조업 시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을 기준으로 작성
- 한국인/외국인, 선장/기관장/직원/부원, 남/여로 구분하여 기입
- 직원(선장, 기관장 제외) : 기관장을 제외한 항해사, 기관사, 통신장, 통신사, 운항장, 운항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원(어로장, 사무장, 의사, 어로장 등)
- 부원 : 직원이 아닌 해원으로 갑판부, 기관부, 조리부 등

### 총 급여액

- 총 급여액은 2023.1.1.부터 2023.12.31.까지의 임금(통상임금)과 시간외수당(생산수당), 상여금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을 기입
- 어선별 선원 총급여액의 합은 10. 종사자현황-선원 연간급여액 합계와 동일해야 함
- 승선기간 : 해당 어선의 승선기간을 개월로 표시
- 통상임금 : 선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일정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금액
- 생산수당 : 월 고정급 외에 단체협약, 선원근로계약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 어획금액이나 어획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금액

21. 연건어로원가	출어비 (천원)	어구비	연료비	입어료	소모품비	주부식비	후생비	수리비	기타출어비
		500	1,300	6,000	5,000	1,000	70	1,200	200
연건어로원가	임금 및 관리비 (천원)	선원임금	보험료	판매비	조세공과	기타관리비	감가상각비		
		450	50	1,200	5	350	20		

- 연건어로원가** · 선박별 제조원가 또는 어로원가 집계내용을 기준으로 작성
- 어구비** · 어구의 신규구입 및 수리보수를 위한 망지, 각종 부속구(로프, 부자, 침자, 보망사, 콜탈 등), 집어 등의 구입비
- 연료비** · 어선운용을 위한 항해용 유류(중유, 경유, 윤활유 등), 취사용·난방용 유류 및 가스구입비
- 입어료** · 조업국에 입어를 위해 지불하는 금액으로 조사대상 어선 한 척에 대한 입어료만 계산하여 기입
- 여러 척이 공동의 입어료를 내고 조업하는 경우, 척수로 입어료를 나누어 계산
- 소모품비** · 전구, 청소용구, 못, 식도 등 선박소모품, 장갑 휴지 등 선원소모품 등 어구비, 수리비, 주부식비에 포함되지 않는 제물품 구입비
- 주부식비** · 쌀, 부식비, 간식, 식수 등의 구입비
- 후생비** · 선원 주류대, 담배값, 치료비 및 약품구입비, 출어수당, 4대 보험 중 사업자부담분
- 주류대, 담배값이 짓가림제에 의해 선원분배금액에서 공제된 경우에는 임금에 포함되므로 후생비에서 제외
- 수리비** · 선체, 기관, 선박기기의 관리·수리를 위한 부품 및 재료 구입비, 선체수선 임부임, 상가비, 기관수리비 등 외부 수리대금
- 기타출어비** · 어구비, 연료비, 입어료, 소모품비, 주부식비, 후생비, 수리비 외의 출어비
- 선원임금** · 고정급, 짓가림액, 상여금, 퇴직금, 특별수당 등 선원에게 지급한 임금
- 보험료** · 어선 보험료 및 공제, 어선원 보험료 및 공제 등으로 제조원가의 보험료 중 조사대상 어선 한 척에 해당하는 보험료(손익계산서 판매비와관리비의 보험료에 포함되지 않는 보험료)
- 판매비** · 판매수수료, 운반비, 검사료, 진열비 등 판매에 소요된 경비
- 조세공과** · 면허세, 재산세 등 지방세, 어선 입출항 수속비, 조합비 등 공과금

- 기타관리비** · 관리비에서 조세공과, 보험료,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금액
- 감가상각비** · 어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손익계산서 판매비와 관리비의 감가상각비에 포함되지 않는 감가상각비)

**마. 기타**

조사응답자	부서	수산부	직위	부장	성명	홍길동
	전화번호	02-1234-5678	팩스번호	02-1234-9999	전자우편	survey@kofci.org

- 조사응답자** · 조사표 작성자의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를 기입
- 추후 관련 문의 시 해당 작성자에게 연락예정

**3-4 현장조사 관리**

**현장조사 관리 방법**

- 조사관리자 1인당 조사원 수는 3명
- 실시간으로 조사원의 문의사항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조사일지 작성 및 제출
  - 조사원은 응답자와 통화내역, 조사표 제출예정일 등을 조사일지에 작성하여 조사관리자에게 E-mail 송부

**현장조사 관리자 1인당 조사원수 등 관리**

- 조사관리자 1인당 조사원 수는 3명

**현장조사 관리자 역할**

- 조사원 조사진행 간 애로사항 및 질의응답 대응
- 무응답 및 제출 지연 업체에 대한 조사 독려
- 조사용품 및 답례품 배부와 관리

**현장조사 파라미터 기록·관리**

- 조사원은 조사시 조사일지를 작성하여 조사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함.
- 조사일지 양식 및 예시

일자	시간	업체명	담당자	구분	내용	확인사항
4/18	10:00	A수산	김아무개 부장	전화	(전화발신) 조사안내 및 방문일정 계획(4/18, 15:00)	현장방문 준비
4/20	10:30	B수산	최아무개 과장	전화	(전화발신) 조사안내 및 방문일정 계획(4/21,14:00) 조사담당자 변경(최아무개 과장 → 박아무개 대리)	현장방문 준비 조사담당자 변경 보고 및 관련 자료 수정

4/23	11:00	C수산	이아무개 사원	전화	(전화발신) 조사안내 및 방문일정 계획(4/28, 11:00)	현장방문 준비
4/25	11:00	C수산	이아무개 사원	방문	(방문조사) C수산 이아무개 사원 만나 조사내용 등 상세히 안내, 조사표 제출예정일자 문의(6/2까지 제출 예정)	
4/30	15:00	A수산	김아무개 부장	방문		
4/30	16:00	B수산	박아무개 대리	방문		
5/2	10:00	A수산	김아무개 부장	보고	(전화수신) 13.재무상태표 관련하여 문의 (협력센터문의) 해당내용 문의 (전화발신) 협력센터로부터 들은 내용 A수산 김아무개 부장에게 전달	<문의사항 상세히 작성>
5/3	17:00	A수산	김아무개 부장	제출	(조사표제출) A수산이 조사표 제출했다고 협력센터로부터 연락받음	
5/8	11:00	A수산	김아무개 부장	검토	(조사표검토) A수산이 제출한 조사표 작성요령 등 참고하여 검토	<검토사항 상세히 작성>
5/10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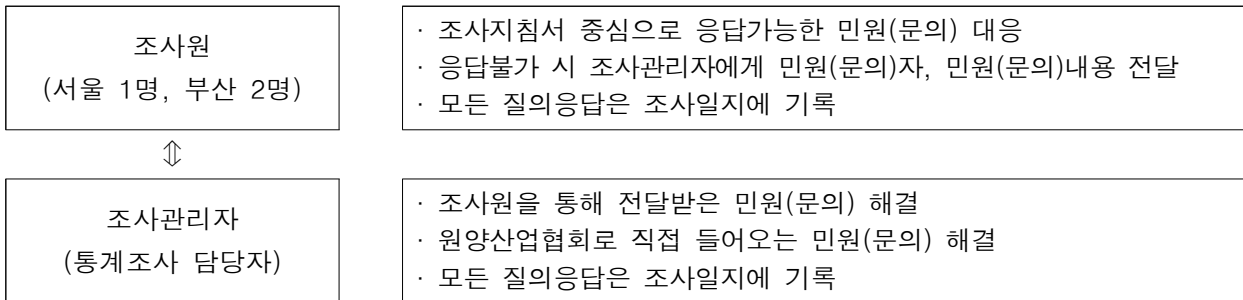
조사기간 중 작성기관이 조사위탁기관이나 조사를 대상으로 실사지도(지도점검) 실시

- 조사기간 중 조사를 대상으로 실사지도 실시. 2022년의 경우, 조사원과 동행하여 기업체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실사지도 대체

## 9. 조사 질의응답 체계

현장조사 질의 및 응답체계 운영 방법

- 질의 및 응답체계



주요 질의 응답·오류사례 축적 및 관리

- 조사지침서 내 주요 질의응답 첨부, 조사원교육 시 관련내용 교육

<b>Q</b>	원양어업 통계조사는 왜 합니까?
<b>A</b>	▶ 원양어업 통계조사는 우리나라 원양어업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원양어업의 여건과 현황을 정밀하게 파악하는 조사입니다.
<b>Q</b>	어디서 조사합니까?
<b>A</b>	▶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한국원양산업협회 해외수산협력센터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Q** 꼭 해야 되나요?

**A**

▶ 원양업체 35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하기 때문에, 업체의 성실한 응답이 정확한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수적입니다. 응답을 거부하거나 부실하게 응답하여 조사결과가 부정확하면, 이를 근거하여 추진한 정부정책은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통계법(제32조 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에 통계응답자의 조사사항에 대하여 성실 응답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조사대상 업체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 해양수산부로부터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 중 2023년 조업실적이 있는 어선과 그 어선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합니다.

**Q** 해외수산업협력센터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A**

▶ 수산업의 해외진출지원과 해외수산자원개발, 국제기구협상지원 등을 위해 '한국원양산업협회' 내 '원양산업진출지원센터'와 '국제수산업협력원'을 합쳐 2014년 3월 해외수산업협력원으로 개원하였습니다. 2017년 한국원양산업협회 산하로 조직이관됨에 따라 해외수산업협력센터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해외수산시설투자 용자사업, 원양어선설비현대화사업, 명예해양수산물 운영, 물자지원사업, 정보조사, 해외수산투자협의회 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Q** 기업체의 운영상황을 외부에 밝히기 싫습니다.

**A**

▶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통계작성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비밀이 엄격하게 보장됩니다. 조사되는 내용은 전부 통계값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어느 기업체에 관한 내용인지 식별할 수 없게 됩니다.

**Q** 조사내용으로 세금부과에 활용되는 것은 아닌가요?

**A**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오직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사된 내용은 다른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Q** 조사내용이 너무 많은데...

**A**

▶ 생산실적의 일부와 수출실적은 자료가 제공되고, 경영실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제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Q**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A**

▶ 결과자료는 9월경에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OFIS) 및 KOSIS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으며 원양어업 통계조사 간행물을 발간하여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 □ 조사 중 특이사항 정리

- 현지점검, 상시 질의사항, 조사일지 작성을 통해 조사 중 발생 및 수집한 특이사항에 대해

검토 후 추가 지침사항으로 정리

[참고] 조사 중 특이사항 정리내용

일시	업체명	구분	확인사항
4/20	○○수산	전화	○○수산과 처음으로 연락. 현재 휴업상태로 사무실 폐쇄.
4/30	□□수산	방문	전화통화가 계속 안되어 직접 방문하였으나 주소이전, 주소이전지로 갔으나 우편물접수딱지만 가득 붙어있고 관리실에서도 4개월째 연락이 안된다고 함
5/2	△△수산	전화	제조원가 공란, 어선-생산현황 공란, 선원현황 연간급여액 단위에 맞게 수정 요청

□ 현장조사 특이사항 사례집

- ○○수산
  - 휴업상태로 인해 사무실을 폐쇄하여 ○○수산과 재연락하여 조사응답자 지정 후 조사
- □□수산
  - 장기부재로 인해 조사원의 방문조사가 불가능하여 조사관리자에게 보고 후 전화조사 등 다른 방법을 병행하여 조사
- △△수산
  - 응답 오류로 인해 전화조사를 통해 답변 보완

## 4. 응답자와 무응답 대처

### 4-1 응답자

#### 적격 조사(또는 응답) 대상

- (중견기업) 총괄 담당자
- (중소기업) 기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는 경영 총괄자(중소 원양업체는 육상직원 5명 이내의 작은 규모로 선원, 수산 등의 업무 구분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 적격 조사(또는 응답) 대상의 지정 이유

- 중견기업의 경우, 원양어업 총괄 담당자가 지정되어있는 경우가 많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업무구분이 없는 경우가 많음. 조사항목 중, 급여 및 경영통계 등 경영총괄자가 응답할 수 있는 항목이 많으므로 중견기업은 총괄담당자, 중소기업은 경영 총괄자로 지정

### 4-2 기억응답

#### 기억응답과 관련된 검토결과

- 응답자 기억응답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처리 방안

##### <고용 및 재무현황 자료>

- 사업체패널조사는 조사기준시점과 조사수행시점이 달라 조사는 기억응답의 형태로 진행됨(2024년 진행된 조사의 조사기준시점은 2023년 12월 31일임)
- 고용 및 재무현황은 조사가 완료된 후 사업체의 홈페이지,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내용 검토

### 4-3 무응답 대처

#### 항목무응답 대처 방

- 무응답 대체 방안을 검토하여 대체

#### 무응답 최소화를 위해 적용한 조치나 방법

- 조사안내 공문 배부
- 조사 실시 보도자료 배포
- 응답자에게 방문목적과 조사내용을 설명하고, 조사결과는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비밀은 보호된다는 점을 강조(통계법 제33조)
- 작성되었으나 불명확한 항목 및 단위에 대해서는 행정자료와 비교 또는 조사대상에게 확인

#### 조사불응, 장기부재 기업 처리 방법

- 1단계 : 업체 운영 확인
  - 행정자료 등을 활용하여 조사대상 운영여부 확인
- 2단계 : 조사원 현장 확인
  - 장기 부재 및 불응 업체는 조사원 및 관리자가 현장을 확인하여 최종 처리

- 3단계 : 행정자료 활용
  - 행정자료 등을 활용하여 기본항목을 중심으로 조사가 가능한 부분까지 조사표 작성
- 4단계 : 경영실태 자료 제출 요청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제출 요청하여 원양산업협회에서 조사표 작성
- 5단계 : 조사명부 수정
  - 휴·폐업 업체에 대해서 조사명부 삭제 후 조사 종료

## V. 행정자료 활용(행정자료 활용통계)

### 1. 행정자료 활용 목적 및 내용

#### □ 행정자료 활용목적

- 조사명부 작성
  - 원양산업협회 허가어선 및 업체 현황
  - 수산정보포털 조업실적
- 정확성 검증 및 응답부담 감소
  -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 원양산업협회의 생산·수출 자료

#### □ 행정자료 이용 시 발생하는 이용제한사항 및 사유

- 원양산업협회 업체 및 어선명부
  - 이용 제약 없음
- 수산정보포털 조업실적
  - 이용 제약 없음
- 금융감독원 공시자료(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 금융감독원의 공시자료는 주권상장법인, 외부감사대상 법인 등의 기업체에 대한 정보만 있으며 제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업체는 미공시

#### □ 행정자료 행정자료의 내용 및 항목

- 원양산업협회 업체 및 어선 명부
  - (어선) 허가 어선 수, 선명, 톤수, 업종
  - (기업체) 기업체명, 보유어선 수, 소재지, 연락처
- 수산정보포털 조업실적
  - 해구별, 업종별, 어종별, 업체별 어선별 생산량
  - 해역별, 어종별, 업종별 생산금액
- 금융감독원 공시자료(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 기업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종사자 수

### 2. 활용 행정자료의 특성 및 입수체계

#### □ 행정자료 원래 수집 목적

- 원양산업협회 업체 및 어선명부
  - 원양산업협회는 원양어업 관리 및 정책지원 등을 목적으로 회원사 및 허가어선 명부, 생산·수출실적을 작성함

- 수산정보포털 조업실적
  -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는 수산정보포털은 원양어업, 연근해어업, 어류양식통계, 등록 어선통계, 어업경영체등록통계, 출어어선현황통계, 수산물수출입통계, 수산물가공통계 등 다양한 수산 통계 제공을 위해 기초 자료 수집, 제공을 목적으로 함
- 금융감독원 공시자료(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 투자자들이 기업정보를 열람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공시실을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인터넷을 통해 세계 어디서나 기업정보를 열람을 목적으로 함

## □ 행정자료 원래 수집 과정 및 내용, 관리기관

- 원양산업협회 업체 및 어선명부
  - 원양어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체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어선에 대한 원양어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원양산업협회 회원사로 가입, 원양산업협회는 원양업체, 기업체에 대한 관리, 지원을 위해 기업체, 어선 명부 작성
- 수산정보포털 조업실적
  - 조업 중인 원양어선이 해구, 업종, 생산량 등을 조업보고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면 해양수산부 수산 DB로 저장됨
- 금융감독원 공시자료(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 각 기업체가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등의 정보를 금융감독원의 전자시스템에 입력

## □ 행정자료 입수 방법

-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된 정보
- 수산정보포털 및 원양산업협회 행정자료 : 원양어업 통계에 대한 검토기관인 원양산업협회 내부 행정자료

## □ 행정자료 입수 주기

- 수산정보포털
  - 입수주기 : 1개월
  - 갱신주기 : 1개월
  - 정시성 : 원양어업 통계조사의 기준시점과 동일
- 원양산업협회
  - 입수주기 : 1년
  - 갱신주기 : 1년
  - 정시성 : 원양어업 통계조사의 기준시점과 일치
-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 입수주기 : 1년
  - 갱신주기 : 1년
  - 정시성 : 원양어업 통계조사의 기준시점과 일치

## □ 행정자료 활용 법적근거

- 수산정보포털 및 원양산업협회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근거하여 원양산업협회는 원양산업 통계의 작성 및 관리를 할 수 있음
-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하여 원양산업 통계 작성에 활용함

## VI. 자료처리

### 1. 자료코딩

#### □ 방법 및 내용

- 자체 입력
  - 조사표 문항번호, 답변항목 개수, 남·여 등 분류내용 고려하러 설정
  - 영문(Q,A,B,T,a,b 등), 숫자, 언더바(\_) 조합하여 설정
- 나라통계시스템
  - 매년 초 통계청과 협의를 통해 원양어업 통계조사 조사표, 명부, 작성요령서, 입력코드 등을 통계청에 전달
  - 통계청 나라통계시스템 운영팀에서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코딩 및 시스템 구축을 진행

#### □ 조사자료 코드체계

- 산업분류
  - 통계청 산업분류에 따른 어업, 제조업, 도소매업, 기타로 분류

구분	내용	산업분류부호	구분	내용	산업분류부호
어업	원양어업	03111	제조업	수산물 혼제조리 및 유사조제식품 제조업	10211
	연근해어업	03112		수산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10212
	내수면어업	03120		수산물 냉동품 제조업	10213
	해면양식어업	03211		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10220
	내수면양식어업	03212	도소매업	수산물 도매업	46313
	수산물부화 및 종묘생산업	03213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46322
	어업관련 서비스업	03220		수산물 소매업	47213
그 외		99999		기타식품류 소매업	47219

- 업종분류
  - 원양어업 허가기준 업종부호에 따른 분류

업종	업종부호	업종	업종부호	업종	업종부호
참치연승	101	북양트롤	105	원양외줄낚시	109
저연승	102	원양트롤	106	모선식외줄낚시	110
참치선망	103	새우트롤	107	기타	111
원양봉수망	104	오징어채낚기	108		

- 해구분류
  - FAO 해구부호에 따른 해구부호에 따른 분류

조업수역		해구부호	조업수역		해구부호	조업수역		해구부호
태평양	북서부	61	대서양	북서부	21	대서양	동남부	47
	중북부	67		북동부	27		인도양	서부
	중서부	71		중서부	31	동부		57
	중동부	77		중동부	34	남빙양	동부	48
	서남부	81		동북부	37		서부	58
	동남부	87		서남부	41		중부	88

○ 품종분류

- 원양어업 생산보고 기준 품종부호에 따른 분류

품종	품종부호	품종	품종부호	품종	품종부호	품종	품종부호	품종	품종부호
어류								연체동물	
가오리류	1010	달고기	1160	물치다래	1300	백새치	1450	갑오징어	2010
가자미류	1020	대구	1170	민어류	1310	청새치	1460	문어류	2020
갈치	1030	민대구	1180	꼬리민태	1320	황새치	1470	오징어류	2030
고등어	1040	붉은대구	1190	새꼬리민태	1330	흑새치	1480	한치류	2031
꽂치	1050	은대구	1200	붉은메기	1340	기타새치	1490	기타연체동물	2990
넙치류	1060	기타대구	1210	방어류	1350	서대류	1500	갑각류	
능성어	1070	도미류	1219	복어류	1359	성대류	1510	게류	3010
다금바리	1080	갈돔	1220	블락류	1360	임연수어	1520	남빙양새우	3020
가다랑어	1090	금눈돔	1230	붕장어류	1370	적어	1530	기타새우	3030
날개다랑어	1100	물릉돔	1240	삼치류	1380	정어리	1540	기타갑각류	3990
남방다랑어	1110	샛돔	1250	줄삼치	1390	전갱이류	1541	X	
눈다랑어	1120	통돔	1260	통치(은삼치)	1400	조기류	1550		
농어류	1121	하스돔	1270	홍삼치	1410	칭어	1560		
참다랑어	1130	기타돔	1280	상어류	1420	촉수류	1570		
황다랑어	1140	명태	1290	녹새치	1430	홍어	1580		
기타다랑어	1150	메로(이빨고기)	1295	돛새치	1440	기타어류	1990		

## □ 조사결과 자료 코딩

○ 조사표 변수설정

I. 기업체 일반현황								
- 2023년12월31일 기준(조사대상기간: 2023.1.1~2023.12.31)으로 작성해주시시오.								
1. 기업체명	Q1		2. 법인 등록번호	Q2				
			3. 사업자 등록번호	Q3				
4. 대표자명	Q4_1	① 남 ② 여 Q4_2	5. 창설연월	Q5_1	년	Q5_2 월		
6. 소재지	Q6		7. 자본금	Q7_1		천원		
8. 기업형태	Q8_1_1 조직형태 : ① 개인사업체 ② 회사법인 ③ 회사 이외 법인							
	Q8_2_1 조직규모* : ① 대기업 ② 중견기업 ③ 중소기업 * 작성요령서 참고하여 작성							
9. 사업종류	산업분류부호*	주요 취급품목	사업내용	매출액 비중(%)				
	Q9_1_1_1	Q9_2_1	Q9_3_1	Q9_4_1				
	Q9_1_2_1	Q9_2_2	Q9_3_2	Q9_4_2				
	Q9_1_3_1	Q9_2_3	Q9_3_3	Q9_4_3				
* 산업분류부호 : 5페이지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참고하여 작성								
10. 종사자현황	구분	종사자수(명)			연간급여액(천원)			
		남	여	계	남	여	계	
	육상직원		Q10_a1_1	Q10_a1_2	Q10_a1_T	Q10_b1_1	Q10_b1_2	Q10_b1_T
	선원	한국인	Q10_a21_1	Q10_a21_2	Q10_a21_T	Q10_b21_1	Q10_b21_2	Q10_b21_T
		외국인	Q10_a22_1	Q10_a22_2	Q10_a22_T	Q10_b22_1	Q10_b22_2	Q10_b22_T
		소계	Q10_a2_1	Q10_a2_2	Q10_a2_T	Q10_b2_1	Q10_b2_2	Q10_b2_T
	상용근로자(선원 및 육상직원)		Q10_a3_1	Q10_a3_2	Q10_a3_T	Q10_b3_1	Q10_b3_2	Q10_b3_T
	임시 및 일용근로자		Q10_a4_1	Q10_a4_2	Q10_a4_T	Q10_b4_1	Q10_b4_2	Q10_b4_T
합계 (상용, 임시 및 일용근로자)		Q10_a_1	Q10_a_2	Q10_a_T	Q10_b_1	Q10_b_2	Q10_b_T	
11. 어선현황	보유어선척수		보유어선 총 톤수		2023년 조업척수			
	Q11_1	척	Q11_2	톤(G/T)	Q11_3	척		

**II. 기업체 생산·수출실적**

- 2023년12월31일 기준(조사대상기간: 2023.1.1~2023.12.31)으로 작성해주시시오.

12. 생산실적	생산량			생산금액	
	행정자료 활용			천원	
13. 수출실적	HSK코드	품명	수출국	수출량 (톤,M/T)	수출금액 (천원)
	①				
	②				
	③				
	④				
	⑤				

**III. 기업체 경영실태**

- 2023년12월31일 기준(조사대상기간: 2023.1.1~2023.12.31)으로 작성해주시시오.

14. 재무상태표	구분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자산	①유동자산(=②+⑤)	Q14_a1							
②당좌자산(=③+④)	Q14_a1_1										
③현금및현금성자산	Q14_a1_1_1										
④기타당좌자산	Q14_a1_1_2										
⑤재고자산	Q14_a1_2										
⑥기타 유동자산	Q14_a1_2										
⑦비유동자산(=⑧+⑨+⑬+⑰)	Q14_a2										
⑧투자자산	Q14_a2_1										
⑨유형자산(=⑩+⑪+⑬+⑰)	Q14_a2_2										
⑩토지	Q14_a2_2_1										
⑪설비자산(=⑫+...+⑮)	Q14_a2_2_2										
⑫건축,구축물	Q14_a2_2_3										
⑬기계장치	Q14_a2_2_4										
⑭선박,차량운반구	Q14_a2_2_5										
⑮기타설비자산	Q14_a2_2_6										
⑯건설중인자산	Q14_a2_2_7										
⑰기타유형자산	Q14_a2_2_8										
⑱무형자산	Q14_a2_3										
⑲기타비유동자산	Q14_a2_4										
자산 총계(=①+⑦)		Q14_a									
부채	①유동부채(=②+③)	Q14_b1									
	②단기차입금	Q14_b1_1									
	③기타유동부채	Q14_b1_2									
	④비유동부채(=⑤+⑥)	Q14_b2									
	⑤장기차입금	Q14_b2_1									
	⑥기타비유동부채	Q14_b2_2									
자본	⑦	Q14_b3									
부채 및 자본 합계(=①+④+⑦)		Q14_b									

		구분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15. 손익계산서	①매출액						Q15_1						
	②매출원가						Q15_2						
	③매출총이익(=①-②)						Q15_3						
	④판매비와관리비(=⑤+...+⑱)						Q15_4						
	⑤급여						Q15_4_1						
	⑥퇴직급여						Q15_4_2						
	⑦복리후생비						Q15_4_3						
	⑧수도광열비						Q15_4_4						
	⑨세금과공과						Q15_4_5						
	⑩임차료						Q15_4_6						
	⑪감가상각비						Q15_4_7						
	⑫접대비						Q15_4_8						
	⑬광고선전비						Q15_4_9						
	⑭보험료						Q15_4_10						
	⑮운반·하역·보관·포장비						Q15_4_11						
	⑯대손상각비						Q15_4_12						
	⑰지급수수료						Q15_4_13						
	⑱기타판매비와관리비						Q15_4_14						
	⑲영업손익(=③-④)						Q15_5						
	⑳영업외수익						Q15_6						
	㉑영업외비용(=㉒+㉓)						Q15_7						
	㉒이자비용						Q15_7_1						
	㉓기타영업외비용						Q15_7_2						
	㉔법인세비용차감전순익(=㉑+㉒-㉓)						Q15_8						
	㉕법인세비용						Q15_9						
	㉖당기순손익(=㉔-㉕)						Q15_10						
16. 제조원가	①당기총제조비용(=②+③+④)						Q16_1						
	②재료비						Q16_1_1						
	③노무비						Q16_1_2						
	④경비(=⑤+⑥+⑦+⑧+⑨+⑩+⑪)						Q16_1_3						
	⑤연료비						Q16_1_3_1						
	⑥전력비						Q16_1_3_2						
	⑦가스수도비						Q16_1_3_3						
	⑧외주가공비						Q16_1_3_4						
	⑨수선비						Q16_1_3_5						
	⑩감가상각비						Q16_1_3_6						
	⑪기타경비						Q16_1_3_7						
	⑫기초재공품원가						Q16_2						
	⑬기말재공품원가						Q16_3						
	⑭타계정대체액						Q16_4						
	⑮당기제품제조원가(=①+⑫-⑬-⑭)						Q16_5						
	조사응답자	부서	SA1	직위	SA2	성명	SA3						
전화번호		SA4	팩스번호	SA5	전자우편	SA6							

**IV. 어선현황 조사**

- 2023년12월31일 기준(조사대상기간: 2023.1.1~2023.12.31)으로 작성해주시시오.

17. 어선현황	선명	Q17_1_1		톤수	Q17_2_1		진수년월	Q17_3_1년	Q17_3_2월	
	검업여부	① 단독 ② 검업 Q17_4		주업종부호*	Q17_5		검업종부호*	Q17_6		
	* 주(검)업종부호 : 5페이지의 업종부호 참고하여 작성									
18. 조업현황	업종부호*		해구부호*		출어횟수			어로알수		
	Q18_1_1_1		Q18_2_1_1		Q18_3_1			Q18_4_1		
	Q18_1_2_1		Q18_2_2_1		Q18_3_2			Q18_4_2		
	Q18_1_3_1		Q18_2_3_1		Q18_3_3			Q18_4_3		
	Q18_1_4_1		Q18_2_4_1		Q18_3_4			Q18_4_4		
* 업종부호, 해구부호 : 5페이지의 업종부호, 해구부호 참고하여 작성										
19. 생산현황	품종부호*		해구부호*		생산량 (톤,M/T)	생산금액 (천원)		반입량 (톤,M/T)		업종부호*
	①	행정자료활용								
	②									
	③									
	⑮									
* 품종부호, 해구부호, 업종부호 : 5페이지의 품종부호, 해구부호, 업종부호 참고하여 작성										
20. 선원현황	구분		선장		기관장		직원(선장·기관장 제외)		부원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한국인	조업 승선원수(명)	Q20_a1_1_1	Q20_a1_1_2	Q20_a1_2_1	Q20_a1_2_2	Q20_a1_3_1	Q20_a1_3_2	Q20_a1_4_1	Q20_a1_4_2
		1인당 월평균임금(천원)	Q20_b1_1_1	Q20_b1_1_2	Q20_b1_2_1	Q20_b1_2_2	Q20_b1_3_1	Q20_b1_3_2	Q20_b1_4_1	Q20_b1_4_2
	외국인	조업 승선원수(명)	Q20_a2_1_1	Q20_a2_1_2	Q20_a2_2_1	Q20_a2_2_2	Q20_a2_3_1	Q20_a2_3_2	Q20_a2_4_1	Q20_a2_4_2
		1인당 월평균임금(천원)	Q20_b2_1_1	Q20_b2_1_2	Q20_b2_2_1	Q20_b2_2_2	Q20_b2_3_1	Q20_b2_3_2	Q20_b2_4_1	Q20_b2_4_2
	승선기간(개월)		Q20_c							
21. 연료유류원가	출어비 (천원)	어구비	연료비	입어료	소모품비	주부식비	후생비	수리비	기타출어비	
		Q21_1_1	Q21_1_2	Q21_1_3	Q21_1_4	Q21_1_5	Q21_1_6	Q21_1_7	Q21_1_8	
	임금 및 관리비 (천원)	선원임금	보험료	판매비	조세공과	기타관리비	감가상각비			
Q21_2_1	Q21_2_2	Q21_2_3	Q21_2_4	Q21_2_5	Q21_2_6					
조사응답자	부서	SB1		직위	SB2		성명	SB3		
	전화번호	SB4		팩스번호	SB5		전자우편	SB6		

## 2. 자료입력

### □ 조사결과 자료의 전산입력 방법

#### ○ 자체입력

- 조사내용 시트 및 입력형식 고려하여 원데이터에 입력
- 자료번호, 기업체명, 어선명, 어선 일반현황, 생산현황, 수출현황 먼저 입력
- 이후 입력오류 수정 완료된 조사표부터 자료입력
- 응답 거부한 기업의 경우 과거 조사자료 활용하여 일부 항목 자료입력
  - \*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 현재와 변동 가능성이 낮은 내용
- 무응답인 경우 “\*” 기호 이용하여 표시
- 해당사항 없는 경우 공란으로 표시
- 텍스트와 숫자 구분하여 입력하고 숫자는 소수점 없이 정수로 입력

#### ○ 나라통계시스템

- 발급받은 아이디로 나라통계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입력
- 자료번호, 기업체명, 어선명, 어선 일반현황, 생산현황, 수출현황 먼저 입력
- 이후 입력오류 수정 완료된 조사표부터 자료입력
- 응답 거부한 기업의 경우 과거 조사자료 활용하여 일부 항목 자료입력
  - \*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 현재와 변동 가능성이 낮은 내용
- 해당사항 없는 경우 공란으로 표시
- 무응답인 경우 공란으로 표시 후 엑셀파일로 다운로드 하여 해당사항 없는 경우와 구분
- 텍스트와 숫자 구분하여 입력하고 숫자는 소수점 없이 정수로 입력

### □ 입력 시 오류 검출을 위해 적용한 방법

- 전산입력 후 시스템에서 입력결과를 엑셀로 다운 받아(내용검토 파일) 함수 기능을 이용하여 오류에 대한 검토를 실시함
  - 무응답, 이상치, 합계불일치 등 검토하여 오류사항 표시
  - 종사자 수 및 임금, 어로원가 등이 다른 기업체 및 어선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조사나 입력의 오류인지를 확인
- 나라통계시스템을 이용하면 자동적으로 오류검토를 실시함

### □ 입력매뉴얼(지침서)

- 자료입력 지침서를 바탕으로 조사자료를 입력함.

### □ 자료입력 교육 실시 여부와 교육 일정 및 방법

- 담당자 변경 전 인수인계를 직접 실시하고, 이후 사업절차별 업무인수인계 지침서 등으로 업무 수행

### 3. 자료내검

#### □ 조사현장 내검 내용 및 방법, 오류자료 처리방법

- 내용검토사항 및 기준 마련
  - 과거 주요 오류사항, 자료처리 시 주요 문제점 등 검토하여 내용검토사항 및 기준마련
  - 무응답, 이상치 등 명백한 오류와 가능성 높은 오류 등 오류 종류 구분
- 내용검토사항 기록양식 마련
  - 조사안내, 교육, 실시, 내용검토 등 조사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용검토에 대해 기록
  - 내용검토사항 기록 위해 조사일지 양식 마련
    - \* 수신·재수신 여부, 조사문의, 조사내용검토 등 통합관리를 위해 조사일지 활용
- 내용검토체계 교육
  - 조사안내, 교육, 실시 중에 내용검토사항 내용을 주지시켜 사전에 오류발생 방지 노력
  - 내용검토사항 및 기준 반영하여 조사지침서, 조사표 작성요령서 작성
  - 조사원, 조사관리자 대상으로 내용검토사항 교육



□ 입력결과 내검 내용 및 방법, 오류자료 처리방법

### <1차 내용검토>

○ 검토대상

- 조사실시 중 수신되는 조사표 및 수정요청 후 재수신된 조사표
- 문서로 제출하지 않고 메일, 팩스로 제출하는 경우 조사표 출력물

○ 검토방법



- 조사표수신

- 최초검토 : 조사원 또는 조사관리자가 조사표 내용 검토하여 오류사항 확인
- 재검토 : 연구원이 조사표 및 최초검토내용 검토하여 오류사항 재확인
- \* 최초검토 및 재검토 시 조사표에 오류사항 표시 및 검토내용 기록
- 내용검토결과 정리 : 조사관리자가 최초검토 및 재검토 내용 조사일지에 정리

- 수정요청(피드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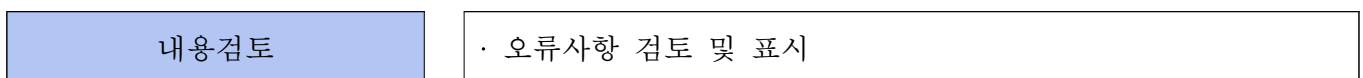
- 오류사항 및 수정요청내용 정리하여 메일 작성·송부
- 조사응답자에게 전화하여 메일 송부 알리며 오류사항 등 설명하고 수정·재송부 요청
- 재검토 : 연구원이 조사표 및 최초검토내용 검토하여 오류사항 재확인
- \* 전화로 수정내용 응답 시 해당내용 반영하여 조사관련자가 조사표 수정 작성
- 수정요청일자 조사일지에 기록 및 조사관련자에게 관련 내용 안내하여 유사오류 발생방지

### <2차 내용검토>

○ 검토대상

- 자료입력 완료된 원데이터

○ 검토방법





- 내용검토
  - 나라통계시스템을 이용한 전산내검 실시
  - 무응답, 이상치, 합계불일치 등 검토하여 오류사항 표시
- 자료확인
  - 조사표, 과거 결과자료 등 관련자료와 비교·확인하여 오류원인 파악
- 내용수정
  - 관련자료 비교·확인을 통해 수정가능한 자료입력, 무응답 오류 등은 검토자가 수정
  - 임의로 수정이 불가능한 오류는 조사응답자 재접촉하여 문의하여 수정하거나 자료값 대체대상으로 구분하여 후에 자료처리
- 내용재검토
  - 내용검토 및 내용수정 반복
- 2차 내용검토 완료
  - 오류사항 없으면 2차 내용검토 완료하고 자료처리 실시
  - 오류사항 및 원인 등 정리

## □ 전산내검의 범위, 논리내검의 적용 대상 및 내용

- 내검도구 : 나라통계시스템
- 유형별(논리/범위) 주요 전산 내검 내용

유형	항목명	세부항목명	유형	입력범위	내검내용
논리	종사자현황	상용근로자	숫자		선원소계보다 작으면 오류
논리	종사자현황	선원	숫자		상용근로자보다 크면 오류
논리	어선현황	보유어선척수	숫자		2017년 조업척수보다 작으면 오류
논리	어선현황	2017년 조업척수	숫자		보유어선척수보다 크면 오류
논리	재무상태표	유동자산	숫자		'당좌자산+재고자산'과 일치
논리	재무상태표	당좌자산	숫자		'현금및현금성자산+기타당좌자산'과 일치
논리	재무상태표	현금및현금성자산	숫자		당좌자산보다 크면 오류
논리	재무상태표	기타당좌자산	숫자		당좌자산보다 크면 오류
논리	재무상태표	비유동자산	숫자		'투자자산+유형자산+무형자산+기타비유동자산'과 일치

논리	재무상태표	투자자산	숫자		비유동자산보다 크면 오류
논리	재무상태표	유형자산	숫자		'토지+설비자산+건설중인자산+기타유형자산'과 일치
논리	재무상태표	설비자산	숫자		'건축, 구축물+기계장치+선박, 차량운반구+기타설비자산'과 일치
논리	재무상태표	자산	숫자		'유동자산+비유동자산'과 일치 '부채및자본의합계'와 일치
논리	재무상태표	비유동부채	숫자		'장기차입금+기타비유동부채'와 일치
논리	재무상태표	부채및자본합계	숫자		'유동부채+비유동부채+자본'과 일치 '자산총계'와 일치
논리	손익계산서	매출총이익	숫자		'매출액-매출원가'와 일치
논리	손익계산서	판매비와관리비	숫자		'급여+퇴직급여+복리후생비+수도광열비+세금과공과+임차료+감가상각비+접대비+광고선전비+보험료+운반·하역·보관·포장비+대손상각비+지급수수료+기타판매비와관리비'와 일치
논리	손익계산서	급여	숫자		판매비와관리비보다 크면 오류
논리	손익계산서	퇴직급여	숫자		판매비와관리비보다 크면 오류
논리	손익계산서	복리후생비	숫자		판매비와관리비보다 크면 오류
논리	손익계산서	수도광열비	숫자		판매비와관리비보다 크면 오류
논리	손익계산서	세금과공과	숫자		판매비와관리비보다 크면 오류
논리	손익계산서	임차료	숫자		판매비와관리비보다 크면 오류
논리	손익계산서	감가상각비	숫자		판매비와관리비보다 크면 오류
논리	손익계산서	접대비	숫자		판매비와관리비보다 크면 오류
논리	손익계산서	광고선전비	숫자		판매비와관리비보다 크면 오류
논리	손익계산서	보험료	숫자		판매비와관리비보다 크면 오류
논리	손익계산서	운반·하역·보관·포장비	숫자		판매비와관리비보다 크면 오류
논리	손익계산서	대손상각비	숫자		판매비와관리비보다 크면 오류
논리	손익계산서	지급수수료	숫자		판매비와관리비보다 크면 오류
논리	손익계산서	기타판매비와관리비	숫자		판매비와관리비보다 크면 오류
논리	손익계산서	영업손익	숫자		'매출총이익-판매비와관리비'와 일치
논리	손익계산서	영업외비용	숫자		'이자비용+기타영업외비용'과 일치
논리	손익계산서	이자비용	숫자		영업외비용보다 크면 오류
논리	손익계산서	기타영업외비용	숫자		영업외비용보다 크면 오류
논리	손익계산서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숫자		'영업손익+영업외수익-영업외비용'과 일치
논리	손익계산서	당기순손익	숫자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법인세비용'과 일치
논리	제조원가	당기총제조비용	숫자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치
논리	제조원가	재료비	숫자		당기총제조비용보다 크면 오류

논리	제조원가	노무비	숫자		당기총제조비용보다 크면 오류
논리	제조원가	경비	숫자		'연료비+전력비+가스수도비+외주가공비+수선비+감가상각비+기타경비'와 일치 당기총제조비용보다크면오류
논리	제조원가	연료비	숫자		경비보다 크면 오류
논리	제조원가	전력비	숫자		경비보다 크면 오류
논리	제조원가	가스수도비	숫자		경비보다 크면 오류
논리	제조원가	외주가공비	숫자		경비보다 크면 오류
논리	제조원가	수선비	숫자		경비보다 크면 오류
논리	제조원가	감가상각비	숫자		경비보다 크면 오류
논리	제조원가	기타경비	숫자		경비보다 크면 오류
논리	제조원가	당기제품제조원가	숫자		'당기총제조비용+기초재공품원가-기말재공품원가-타계 정대체액'과 일치
논리	조업현황	출어횟수	숫자		어로일수보다 크면 오류
논리	조업현황	어로일수	숫자		출어횟수보다 작거나 365보다 크면 오류
논리	선원현황	여	숫자		일반적으로 0
범위	창설연월	연도	숫자	1900~ 2017	입력범위 내 값 입력
범위	창설연월	월	숫자	1~12	입력범위 내 값 입력
범위	사업종류	매출액 비중	숫자	1~100	사업들의 매출액비중 합계가 100
범위	어선현황	진수년월(연도)	숫자	1900~ 2017	입력범위 내 값 입력
범위	어선현황	진수년월(월)	숫자	1~12	입력범위 내 값 입력
범위	어선현황	주업종부호	부호	조사표 업종부호 참고	입력범위 내 값 입력
범위	어선현황	겸업종부호	부호	조사표 업종부호 참고	입력범위 내 값 입력
범위	조업현황	업종부호	부호	조사표 업종부호 참고	입력범위 내 값 입력
범위	조업현황	해구부호	부호	조사표 해구부호 참고	입력범위 내 값 입력
범위	생산현황	품종부호	부호	조사표 품종부호 참고	입력범위 내 값 입력
범위	생산현황	해구부호	부호	조사표 해구부호 참고	입력범위 내 값 입력
범위	생산현황	업종부호	부호	조사표 업종부호 참고	입력범위 내 값 입력

## □ 자료입력 형식

조사항목	조사항목(상세)	변수명	구분	단위	내용
기업INDEX	기업부여번호	IDX_COM	숫자-범주		##
1.기업체명		Q1	텍스트		
2. 법인 등록번호		Q2	텍스트		#####-#####
3.사업자 등록번호		Q3	텍스트		###-##-#####
4.대표자	대표자성명	Q4_1	텍스트		
	대표자성별	Q4_2			1(남자), 2(여자)
5.창설연월	연도	Q5_1		년	####
	월	Q5_2		월	##
6.소재지		Q6	텍스트		
7.자본금		Q7	숫자	천원	
8.기업형태	조직형태	Q8_1	숫자-범주		1(개인사업체), 2(회사법인), 3(회사이외법인)
	조직규모	Q8_2	숫자-범주		1(대기업), 2(중소기업), 3(중소기업)
9.사업종류	산업분류	Q9_0	숫자-범주		1(어업), 2(제조업), 3(도소매업), 4(기타)
	산업분류부호1	Q9_1_1	텍스트		#####
	산업분류부호2	Q9_2_1	텍스트		#####
	산업분류부호3	Q9_3_1	텍스트		#####
	주요 취급품목1	Q9_1_2	텍스트		
	주요 취급품목2	Q9_2_2	텍스트		
	주요 취급품목3	Q9_3_2	텍스트		
	사업내용1	Q9_1_3	텍스트		
	사업내용2	Q9_2_3	텍스트		
	사업내용3	Q9_3_3	텍스트		
	매출액비중1	Q9_1_4	숫자	%	
	매출액비중2	Q9_2_4	숫자	%	
	매출액비중3	Q9_3_4	숫자	%	
10. 종사자 현황	상용근로자-남자/종사자수	Q10_a1_1	숫자	명	
	상용근로자-여자/종사자수	Q10_a1_2	숫자	명	
	상용근로자-합계/종사자수	Q10_a1_T	숫자	명	
	상용근로자-남자/연간급여액	Q10_b1_1	숫자	천원	
	상용근로자-여자/연간급여액	Q10_b1_2	숫자	천원	
	상용근로자-합계/연간급여액	Q10_b1_T	숫자	천원	
	선원/한국인-남자/종사자수	Q10_a21_1	숫자	명	
	선원/한국인-여자/종사자수	Q10_a21_2	숫자	명	
	선원/한국인-합계/종사자수	Q10_a21_T	숫자	명	
	선원/한국인-남자/연간급여액	Q10_b21_1	숫자	천원	
	선원/한국인-여자/연간급여액	Q10_b21_2	숫자	천원	
	선원/한국인-합계/연간급여액	Q10_b21_T	숫자	천원	
	선원/외국인-남자/종사자수	Q10_a22_1	숫자	명	

조사항목	조사항목(상세)	변수명	구분	단위	내용
	선원/외국인-여자/종사자수	Q10_a22_2	숫자	명	
	선원/외국인-합계/종사자수	Q10_a22_T	숫자	명	
	선원/외국인-남자/연간급여액	Q10_b22_1	숫자	천원	
	선원/외국인-여자/연간급여액	Q10_b22_2	숫자	천원	
	선원/외국인-합계/연간급여액	Q10_b22_T	숫자	천원	
	선원/소계-남자/종사자수	Q10_a2_1	숫자	명	
	선원/소계-여자/종사자수	Q10_a2_2	숫자	명	
	선원/소계-합계/종사자수	Q10_a2_T	숫자	명	
	선원/소계-남자/연간급여액	Q10_b2_1	숫자	천원	
	선원/소계-여자/연간급여액	Q10_b2_2	숫자	천원	
	선원/소계-합계/연간급여액	Q10_b2_T	숫자	천원	
	임시일용근로자-남자/종사자수	Q10_a3_1	숫자	명	
	임시일용근로자-여자/종사자수	Q10_a3_2	숫자	명	
	임시일용근로자-합계/종사자수	Q10_a3_T	숫자	명	
	임시일용근로자-남자/연간급여액	Q10_b3_1	숫자	천원	
	임시일용근로자-여자/연간급여액	Q10_b3_2	숫자	천원	
	임시일용근로자-합계/연간급여액	Q10_b3_T	숫자	천원	
	총계-남자/종사자수	Q10_a_1	숫자	명	
	총계-여자/종사자수	Q10_a_2	숫자	명	
	총계-합계/종사자수	Q10_a_T	숫자	명	
	총계-남자/연간급여액	Q10_b_1	숫자	천원	
총계-여자/연간급여액	Q10_b_2	숫자	천원		
총계-합계/연간급여액	Q10_b_T	숫자	천원		
11.어선현황	보유어선척수	Q11_1	숫자	척	
	보유어선총톤수	Q11_2	숫자	톤	
	2013년 조업척수	Q11_3	숫자	척	
12.생산실적	생산량	Q12_1	숫자	톤	
	생산금액	Q12_2	숫자	천원	
13.수출실적	HSK코드1	Q13_1_1			#####
	HSK코드2	Q13_1_2			#####
	HSK코드3	Q13_1_3			#####
	HSK코드4	Q13_1_4			#####
	HSK코드5	Q13_1_5			#####
	HSK코드6	Q13_1_6			#####
	HSK코드7	Q13_1_7			#####
	HSK코드8	Q13_1_8			#####
	HSK코드9	Q13_1_9			#####
	HSK코드10	Q13_1_10			#####
	HSK코드11	Q13_1_11			#####
	HSK코드12	Q13_1_12			#####
	HSK코드13	Q13_1_13			#####
	HSK코드14	Q13_1_14			#####
	HSK코드15	Q13_1_15			#####
	HSK코드16	Q13_1_16			#####
	HSK코드17	Q13_1_17			#####

조사항목	조사항목(상세)	변수명	구분	단위	내용
	HSK코드18	Q13_1_18			#####
	HSK코드19	Q13_1_19			#####
	HSK코드20	Q13_1_20			#####
	품명1	Q13_2_1	텍스트		
	품명2	Q13_2_2	텍스트		
	품명3	Q13_2_3	텍스트		
	품명4	Q13_2_4	텍스트		
	품명5	Q13_2_5	텍스트		
	품명6	Q13_2_6	텍스트		
	품명7	Q13_2_7	텍스트		
	품명8	Q13_2_8	텍스트		
	품명9	Q13_2_9	텍스트		
	품명10	Q13_2_10	텍스트		
	품명11	Q13_2_11	텍스트		
	품명12	Q13_2_12	텍스트		
	품명13	Q13_2_13	텍스트		
	품명14	Q13_2_14	텍스트		
	품명15	Q13_2_15	텍스트		
	품명16	Q13_2_16	텍스트		
	품명17	Q13_2_17	텍스트		
	품명18	Q13_2_18	텍스트		
	품명19	Q13_2_19	텍스트		
	품명20	Q13_2_20	텍스트		
	수출국1	Q13_3_1	텍스트		
	수출국2	Q13_3_2	텍스트		
	수출국3	Q13_3_3	텍스트		
	수출국4	Q13_3_4	텍스트		
	수출국5	Q13_3_5	텍스트		
	수출국6	Q13_3_6	텍스트		
	수출국7	Q13_3_7	텍스트		
	수출국8	Q13_3_8	텍스트		
	수출국9	Q13_3_9	텍스트		
	수출국10	Q13_3_10	텍스트		
	수출국11	Q13_3_11	텍스트		
	수출국12	Q13_3_12	텍스트		
	수출국13	Q13_3_13	텍스트		
	수출국14	Q13_3_14	텍스트		
	수출국15	Q13_3_15	텍스트		
	수출국16	Q13_3_16	텍스트		
	수출국17	Q13_3_17	텍스트		
	수출국18	Q13_3_18	텍스트		
	수출국19	Q13_3_19	텍스트		
	수출국20	Q13_3_20	텍스트		
	수출량1	Q13_4_1	숫자	톤	
	수출량2	Q13_4_2	숫자	톤	

조사항목	조사항목(상세)	변수명	구분	단위	내용	
	수출량3	Q13_4_3	숫자	톤		
	수출량4	Q13_4_4	숫자	톤		
	수출량5	Q13_4_5	숫자	톤		
	수출량6	Q13_4_6	숫자	톤		
	수출량7	Q13_4_7	숫자	톤		
	수출량8	Q13_4_8	숫자	톤		
	수출량9	Q13_4_9	숫자	톤		
	수출량10	Q13_4_10	숫자	톤		
	수출량11	Q13_4_11	숫자	톤		
	수출량12	Q13_4_12	숫자	톤		
	수출량13	Q13_4_13	숫자	톤		
	수출량14	Q13_4_14	숫자	톤		
	수출량15	Q13_4_15	숫자	톤		
	수출량16	Q13_4_16	숫자	톤		
	수출량17	Q13_4_17	숫자	톤		
	수출량18	Q13_4_18	숫자	톤		
	수출량19	Q13_4_19	숫자	톤		
	수출량20	Q13_4_20	숫자	톤		
	수출금액1	Q13_5_1_1	숫자	천원		
	수출금액2	Q13_5_2_1	숫자	천원		
	수출금액3	Q13_5_3_1	숫자	천원		
	수출금액4	Q13_5_4_1	숫자	천원		
	수출금액5	Q13_5_5_1	숫자	천원		
	수출금액6	Q13_5_6_1	숫자	천원		
	수출금액7	Q13_5_7_1	숫자	천원		
	수출금액8	Q13_5_8_1	숫자	천원		
	수출금액9	Q13_5_9_1	숫자	천원		
	수출금액10	Q13_5_10_1	숫자	천원		
	수출금액11	Q13_5_11_1	숫자	천원		
	수출금액12	Q13_5_12_1	숫자	천원		
	수출금액13	Q13_5_13_1	숫자	천원		
	수출금액14	Q13_5_14_1	숫자	천원		
	수출금액15	Q13_5_15_1	숫자	천원		
	수출금액16	Q13_5_16_1	숫자	천원		
	수출금액17	Q13_5_17_1	숫자	천원		
	수출금액18	Q13_5_18_1	숫자	천원		
	수출금액19	Q13_5_19_1	숫자	천원		
	수출금액20	Q13_5_20_1	숫자	천원		
	14. 재무상태표	자산(총계)	Q14_a	숫자	천원	
		유동자산	Q14_a1	숫자	천원	
당좌자산		Q14_a1_1	숫자	천원		

조사항목	조사항목(상세)	변수명	구분	단위	내용
	현금및현금성 자산	Q14_a1_1_1	숫자	천원	
	기타당좌자산	Q14_a1_1_2	숫자	천원	
	재고자산	Q14_a1_2	숫자	천원	
	비유동자산	Q14_a2	숫자	천원	
	투자자산	Q14_a2_1	숫자	천원	
	유형자산	Q14_a2_2	숫자	천원	
	토지	Q14_a2_2_1	숫자	천원	
	설비자산	Q14_a2_2_2	숫자	천원	
	건물,구축물	Q14_a2_2_3	숫자	천원	
	기계장치	Q14_a2_2_4	숫자	천원	
	선박,차량운반구	Q14_a2_2_5	숫자	천원	
	기타설비자산	Q14_a2_2_6	숫자	천원	
	건설중인자산	Q14_a2_2_7	숫자	천원	
	기타유형자산	Q14_a2_2_8	숫자	천원	
	무형자산	Q14_a2_3	숫자	천원	
	기타비유동자산	Q14_a2_4	숫자	천원	
	유동부채	Q14_b1	숫자	천원	
	단기차입금	Q14_b1_1	숫자	천원	
	기타유동부채	Q14_b1_2	숫자	천원	
	비유동부채	Q14_b2	숫자	천원	
	장기차입금	Q14_b2_1	숫자	천원	
	기타비유동부채	Q14_b2_2	숫자	천원	
	자본	Q14_b3	숫자	천원	
	부채및자본(합계)	Q14_b	숫자	천원	
15. 손익계산서	매출액	Q15_1	숫자	천원	
	매출원가	Q15_2	숫자	천원	
	매출총이익	Q15_3	숫자	천원	
	판매비와관리비	Q15_4	숫자	천원	
	급여	Q15_4_1	숫자	천원	
	퇴직급여	Q15_4_2	숫자	천원	
	복리후생비	Q15_4_3	숫자	천원	
	수도광열비	Q15_4_4	숫자	천원	
	세금과공과	Q15_4_5	숫자	천원	
	임차료	Q15_4_6	숫자	천원	
	감가상각비	Q15_4_7	숫자	천원	
	접대비	Q15_4_8	숫자	천원	
	광고선전비	Q15_4_9	숫자	천원	
	보험료	Q15_4_10	숫자	천원	
	운반하역보관포장비	Q15_4_11	숫자	천원	
	대손상각비	Q15_4_12	숫자	천원	
	지급수수료	Q15_4_13	숫자	천원	
	기타판매비와관리비	Q15_4_14	숫자	천원	
	영업손익	Q15_5	숫자	천원	
영업외수익	Q15_6	숫자	천원		

조사항목	조사항목(상세)	변수명	구분	단위	내용
	영업외비용	Q15_7	숫자	천원	
	이자비용	Q15_7_1	숫자	천원	
	기타영업외비용	Q15_7_2	숫자	천원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Q15_8	숫자	천원	
	법인세비용	Q15_9	숫자	천원	
	당기순손익	Q15_10	숫자	천원	
16. 제조원가	당기총제조비용	Q16_1	숫자	천원	
	재료비	Q16_1_1	숫자	천원	
	노무비	Q16_1_2	숫자	천원	
	경비	Q16_1_3	숫자	천원	
	연료비	Q16_1_3_1	숫자	천원	
	전력비	Q16_1_3_2	숫자	천원	
	가스수도비	Q16_1_3_3	숫자	천원	
	외주가공비	Q16_1_3_4	숫자	천원	
	수선비	Q16_1_3_5	숫자	천원	
	감가상각비	Q16_1_3_6	숫자	천원	
	기타경비	Q16_1_3_7	숫자	천원	
	기초재공품원가	Q16_2	숫자	천원	
	기말재공품원가	Q16_3	숫자	천원	
	타계정대체액	Q16_4	숫자	천원	
	당기제품제조원가	Q16_5	숫자	천원	
기업- 조사응답자	부서	A1	텍스트		
	직위	A2	텍스트		
	성명	A3	텍스트		
	전화번호	A4	텍스트		
	팩스번호	A5	텍스트		
	전자우편	A6	텍스트		

조사항목	조사항목(상세)	변수명	구분	단위	내용
어선INDEX	어선부여번호	IDX_VSL			##-###
17.어선현황	기업체명	Q17_0	텍스트		
	선명	Q17_1	텍스트		
	톤수	Q17_2	숫자	톤	
	진수년월-연도	Q17_3_1		년	####
	진수년월-월	Q17_3_2		월	##
	겸업여부	Q17_4			1(단독), 2(겸업)
	주업종부호	Q17_5			(업종부호) 참고
	겸업종부호	Q17_6			(업종부호) 참고
18.조업현황	업종부호1	Q18_1_1			
	업종부호2	Q18_1_2			
	업종부호3	Q18_1_3			
	업종부호4	Q18_1_4			
	해구부호1	Q18_2_1			
	해구부호2	Q18_2_2			
	해구부호3	Q18_2_3			
	해구부호4	Q18_2_4			
	출어횟수1	Q18_3_1		회	
	출어횟수2	Q18_3_2		회	
	출어횟수3	Q18_3_3		회	
	출어횟수4	Q18_3_4		회	
	어로일수1	Q18_4_1		일	
	어로일수2	Q18_4_2		일	
	어로일수3	Q18_4_3		일	
	어로일수4	Q18_4_4		일	
19.생산현황	품종부호1	Q19_1_1			(품종부호) 참고
	품종부호2	Q19_1_2			(품종부호) 참고
	품종부호3	Q19_1_3			(품종부호) 참고
	품종부호4	Q19_1_4			(품종부호) 참고
	품종부호5	Q19_1_5			(품종부호) 참고
	품종부호6	Q19_1_6			(품종부호) 참고
	품종부호7	Q19_1_7			(품종부호) 참고
	품종부호8	Q19_1_8			(품종부호) 참고
	품종부호9	Q19_1_9			(품종부호) 참고
	품종부호10	Q19_1_10			(품종부호) 참고
	품종부호11	Q19_1_11			(품종부호) 참고
	품종부호12	Q19_1_12			(품종부호) 참고
	품종부호13	Q19_1_13			(품종부호) 참고
	품종부호14	Q19_1_14			(품종부호) 참고
	품종부호15	Q19_1_15			(품종부호) 참고
	품종부호16	Q19_1_16			(품종부호) 참고
	품종부호17	Q19_1_17			(품종부호) 참고
	품종부호18	Q19_1_18			(품종부호) 참고
	품종부호19	Q19_1_19			(품종부호) 참고
	품종부호20	Q19_1_20			(품종부호) 참고

조사항목	조사항목(상세)	변수명	구분	단위	내용
	품종부호21	Q19_1_21			(품종부호) 참고
	품종부호22	Q19_1_22			(품종부호) 참고
	품종부호23	Q19_1_23			(품종부호) 참고
	품종부호24	Q19_1_24			(품종부호) 참고
	품종부호25	Q19_1_25			(품종부호) 참고
	해구부호1	Q19_2_1			(해구부호) 참고
	해구부호2	Q19_2_2			(해구부호) 참고
	해구부호3	Q19_2_3			(해구부호) 참고
	해구부호4	Q19_2_4			(해구부호) 참고
	해구부호5	Q19_2_5			(해구부호) 참고
	해구부호6	Q19_2_6			(해구부호) 참고
	해구부호7	Q19_2_7			(해구부호) 참고
	해구부호8	Q19_2_8			(해구부호) 참고
	해구부호9	Q19_2_9			(해구부호) 참고
	해구부호10	Q19_2_10			(해구부호) 참고
	해구부호11	Q19_2_11			(해구부호) 참고
	해구부호12	Q19_2_12			(해구부호) 참고
	해구부호13	Q19_2_13			(해구부호) 참고
	해구부호14	Q19_2_14			(해구부호) 참고
	해구부호15	Q19_2_15			(해구부호) 참고
	해구부호16	Q19_2_16			(해구부호) 참고
	해구부호17	Q19_2_17			(해구부호) 참고
	해구부호18	Q19_2_18			(해구부호) 참고
	해구부호19	Q19_2_19			(해구부호) 참고
	해구부호20	Q19_2_20			(해구부호) 참고
	해구부호21	Q19_2_21			(해구부호) 참고
	해구부호22	Q19_2_22			(해구부호) 참고
	해구부호23	Q19_2_23			(해구부호) 참고
	해구부호24	Q19_2_24			(해구부호) 참고
	해구부호25	Q19_2_25			(해구부호) 참고
	생산량1	Q19_3_1	숫자	톤	
	생산량2	Q19_3_2	숫자	톤	
	생산량3	Q19_3_3	숫자	톤	
	생산량4	Q19_3_4	숫자	톤	
	생산량5	Q19_3_5	숫자	톤	
	생산량6	Q19_3_6	숫자	톤	
	생산량7	Q19_3_7	숫자	톤	
	생산량8	Q19_3_8	숫자	톤	
	생산량9	Q19_3_9	숫자	톤	
	생산량10	Q19_3_10	숫자	톤	
	생산량11	Q19_3_11	숫자	톤	
	생산량12	Q19_3_12	숫자	톤	
	생산량13	Q19_3_13	숫자	톤	
	생산량14	Q19_3_14	숫자	톤	
	생산량15	Q19_3_15	숫자	톤	

조사항목	조사항목(상세)	변수명	구분	단위	내용
	생산량16	Q19_3_16	숫자	톤	
	생산량17	Q19_3_17	숫자	톤	
	생산량18	Q19_3_18	숫자	톤	
	생산량19	Q19_3_19	숫자	톤	
	생산량20	Q19_3_20	숫자	톤	
	생산량21	Q19_3_21	숫자	톤	
	생산량22	Q19_3_22	숫자	톤	
	생산량23	Q19_3_23	숫자	톤	
	생산량24	Q19_3_24	숫자	톤	
	생산량25	Q19_3_25	숫자	톤	
	생산금액1	Q19_4_1	숫자	천원	
	생산금액2	Q19_4_2	숫자	천원	
	생산금액3	Q19_4_3	숫자	천원	
	생산금액4	Q19_4_4	숫자	천원	
	생산금액5	Q19_4_5	숫자	천원	
	생산금액6	Q19_4_6	숫자	천원	
	생산금액7	Q19_4_7	숫자	천원	
	생산금액8	Q19_4_8	숫자	천원	
	생산금액9	Q19_4_9	숫자	천원	
	생산금액10	Q19_4_10	숫자	천원	
	생산금액11	Q19_4_11	숫자	천원	
	생산금액12	Q19_4_12	숫자	천원	
	생산금액13	Q19_4_13	숫자	천원	
	생산금액14	Q19_4_14	숫자	천원	
	생산금액15	Q19_4_15	숫자	천원	
	생산금액16	Q19_4_16	숫자	천원	
	생산금액17	Q19_4_17	숫자	천원	
	생산금액18	Q19_4_18	숫자	천원	
	생산금액19	Q19_4_19	숫자	천원	
	생산금액20	Q19_4_20	숫자	천원	
	생산금액21	Q19_4_21	숫자	천원	
	생산금액22	Q19_4_22	숫자	천원	
	생산금액23	Q19_4_23	숫자	천원	
	생산금액24	Q19_4_24	숫자	천원	
	생산금액25	Q19_4_25	숫자	천원	
	반입량1	Q19_5_1	숫자	톤	
	반입량2	Q19_5_2	숫자	톤	
	반입량3	Q19_5_3	숫자	톤	
	반입량4	Q19_5_4	숫자	톤	
	반입량5	Q19_5_5	숫자	톤	
	반입량6	Q19_5_6	숫자	톤	
	반입량7	Q19_5_7	숫자	톤	
	반입량8	Q19_5_8	숫자	톤	
	반입량9	Q19_5_9	숫자	톤	
	반입량10	Q19_5_10	숫자	톤	

조사항목	조사항목(상세)	변수명	구분	단위	내용
	반입량11	Q19_5_11	숫자	톤	
	반입량12	Q19_5_12	숫자	톤	
	반입량13	Q19_5_13	숫자	톤	
	반입량14	Q19_5_14	숫자	톤	
	반입량15	Q19_5_15	숫자	톤	
	반입량16	Q19_5_16	숫자	톤	
	반입량17	Q19_5_17	숫자	톤	
	반입량18	Q19_5_18	숫자	톤	
	반입량19	Q19_5_19	숫자	톤	
	반입량20	Q19_5_20	숫자	톤	
	반입량21	Q19_5_21	숫자	톤	
	반입량22	Q19_5_22	숫자	톤	
	반입량23	Q19_5_23	숫자	톤	
	반입량24	Q19_5_24	숫자	톤	
	반입량25	Q19_5_25	숫자	톤	
	업종부호1	Q19_6_1			(업종부호) 참고
	업종부호2	Q19_6_2			(업종부호) 참고
	업종부호3	Q19_6_3			(업종부호) 참고
	업종부호4	Q19_6_4			(업종부호) 참고
	업종부호5	Q19_6_5			(업종부호) 참고
	업종부호6	Q19_6_6			(업종부호) 참고
	업종부호7	Q19_6_7			(업종부호) 참고
	업종부호8	Q19_6_8			(업종부호) 참고
	업종부호9	Q19_6_9			(업종부호) 참고
	업종부호10	Q19_6_10			(업종부호) 참고
	업종부호11	Q19_6_11			(업종부호) 참고
	업종부호12	Q19_6_12			(업종부호) 참고
	업종부호13	Q19_6_13			(업종부호) 참고
	업종부호14	Q19_6_14			(업종부호) 참고
	업종부호15	Q19_6_15			(업종부호) 참고
	업종부호16	Q19_6_16			(업종부호) 참고
	업종부호17	Q19_6_17			(업종부호) 참고
	업종부호18	Q19_6_18			(업종부호) 참고
	업종부호19	Q19_6_19			(업종부호) 참고
	업종부호20	Q19_6_20			(업종부호) 참고
업종부호21	Q19_6_21			(업종부호) 참고	
업종부호22	Q19_6_22			(업종부호) 참고	
업종부호23	Q19_6_23			(업종부호) 참고	
업종부호24	Q19_6_24			(업종부호) 참고	
업종부호25	Q19_6_25			(업종부호) 참고	
20.선원현황	한국인/승선원수-선장/남자	Q20_a1_1_1	숫자	명	
	한국인/승선원수-선장/여자	Q20_a1_1_2	숫자	명	
	한국인/승선원수-기관장/남자	Q20_a1_2_1	숫자	명	
	한국인/승선원수-기관장/여자	Q20_a1_2_2	숫자	명	
	한국인/승선원수-직원/남자	Q20_a1_3_1	숫자	명	

조사항목	조사항목(상세)	변수명	구분	단위	내용
	한국인/승선원수-직원/여자	Q20_a1_3_2	숫자	명	
	한국인/승선원수-부원/남자	Q20_a1_4_1	숫자	명	
	한국인/승선원수-부원/여자	Q20_a1_4_2	숫자	명	
	한국인/월평균임금-선장/남자	Q20_a2_1_1	숫자	천원	
	한국인/월평균임금-선장/여자	Q20_a2_1_2	숫자	천원	
	한국인/월평균임금-기관장/남자	Q20_a2_2_1	숫자	천원	
	한국인/월평균임금-기관장/여자	Q20_a2_2_2	숫자	천원	
	한국인/월평균임금-직원/남자	Q20_a2_3_1	숫자	천원	
	한국인/월평균임금-직원/여자	Q20_a2_3_2	숫자	천원	
	한국인/월평균임금-부원/남자	Q20_a2_4_1	숫자	천원	
	한국인/월평균임금-부원/여자	Q20_a2_4_2	숫자	천원	
	외국인/승선원수-선장/남자	Q20_b1_1_1	숫자	명	
	외국인/승선원수-선장/여자	Q20_b1_1_2	숫자	명	
	외국인/승선원수-기관장/남자	Q20_b1_2_1	숫자	명	
	외국인/승선원수-기관장/여자	Q20_b1_2_2	숫자	명	
	외국인/승선원수-직원/남자	Q20_b1_3_1	숫자	명	
	외국인/승선원수-직원/여자	Q20_b1_3_2	숫자	명	
	외국인/승선원수-부원/남자	Q20_b1_4_1	숫자	명	
	외국인/승선원수-부원/여자	Q20_b1_4_2	숫자	명	
	외국인/월평균임금-선장/남자	Q20_b2_1_1	숫자	천원	
	외국인/월평균임금-선장/여자	Q20_b2_1_2	숫자	천원	
	외국인/월평균임금-기관장/남자	Q20_b2_2_1	숫자	천원	
	외국인/월평균임금-기관장/여자	Q20_b2_2_2	숫자	천원	
	외국인/월평균임금-직원/남자	Q20_b2_3_1	숫자	천원	
	외국인/월평균임금-직원/여자	Q20_b2_3_2	숫자	천원	
	외국인/월평균임금-부원/남자	Q20_b2_4_1	숫자	천원	
	외국인/월평균임금-부원/여자	Q20_b2_4_2	숫자	천원	
	21. 연간 어로원가	출어비-어구비	Q21_1_1	숫자	천원
출어비-연료비		Q21_1_2	숫자	천원	
출어비-입어료		Q21_1_3	숫자	천원	
출어비-소모품비		Q21_1_4	숫자	천원	
출어비-주부식비		Q21_1_5	숫자	천원	
출어비-후생비		Q21_1_6	숫자	천원	
출어비-수리비		Q21_1_7	숫자	천원	
출어비-기타출어비		Q21_1_8	숫자	천원	
임금및관리비-선원임금		Q21_2_1	숫자	천원	
임금및관리비-보험료		Q21_2_2	숫자	천원	
임금및관리비-판매비		Q21_2_3	숫자	천원	
임금및관리비-조세공과		Q21_2_4	숫자	천원	
임금및관리비-기타관리비		Q21_2_5	숫자	천원	
임금및관리비-감가상각비		Q21_2_6	숫자	천원	
어선- 조사응답자	부서	B1	텍스트		
	직위	B2	텍스트		
	성명	B3	텍스트		
	전화번호	B4	텍스트		
	팩스번호	B5	텍스트		
	전자우편	B6	텍스트		



8. 기업형태	조직형태 : ① 개인사업체 ② 회사법인 ③ 회사 이외 법인
	조직규모* : ① 대기업 ② 중견기업 ③ 중소기업 * 작성요령서 참고하여 작성

**조직형태**

- 조직형태 구분기준 준수여부 확인
- 과거 통계조사 자료와 비교

① 개인사업체	개인이 경영하는 사업체(2인 이상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도 포함)
② 회사법인	상법에 의해 설립되고 법인격을 갖추고 있는 사업체
③ 회사 이외 법인	상법 외 민법에 의한 재단·사단법인과 특별법에 의한 특별법인

**조직규모**

- 조직규모 구분기준 준수여부 확인
- 과거 통계조사 자료와 비교
- 규모 기준

업종	구분	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A	80억원 이하	1,000억원 이하	좌측 기준을 초과한 경우	공정거래 위원회에 정한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광업	B	80억원 이하	1,000억원 이하		
식료품 제조업	C10	120억원 이하	1,000억원 이하		
음료 제조업	C11	120억원 이하	800억원 이하		
담배 제조업	C12	80억원 이하	1,000억원 이하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80억원 이하	1,000억원 이하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120억원 이하	1,500억원 이하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120억원 이하	1,500억원 이하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80억원 이하	1,000억원 이하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80억원 이하	1,500억원 이하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80억원 이하	800억원 이하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20억원 이하	1,000억원 이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20억원 이하	1,000억원 이하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120억원 이하	800억원 이하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80억원 이하	1,000억원 이하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120억원 이하	800억원 이하		
1차 금속 제조업	C24	120억원 이하	1,500억원 이하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20억원 이하	1,000억원 이하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0억원 이하	1,000억원 이하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80억원 이하	800억원 이하		
전기장비 제조업	C28	120억원 이하	1,500억원 이하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20억원 이하	1,000억원 이하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20억원 이하	1,000억원 이하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80억원 이하	1,000억원 이하		
가구 제조업	C32	120억원 이하	1,500억원 이하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80억원 이하	800억원 이하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10억원 이하	60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20억원 이하	1,000억원 이하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	30억원 이하	800억원 이하		
수도업	E36	120억원 이하	1,000억원 이하		
건설업	F	80억원 이하	1,00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G	50억원 이하	1,00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H	80억원 이하	80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I	10억원 이하	400억원 이하		
정보통신업	J	50억원 이하	800억원 이하		
금융 및 보험업	K	80억원 이하	400억원 이하		
부동산업	L	30억원 이하	400억원 이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0억원 이하	600억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임대업은 제외한다)	N	30억원 이하	600억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P	10억원 이하	400억원 이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10억원 이하	600억원 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0억원 이하	600억원 이하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0억원 이하	600억원 이하		
업종무관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 독립성 기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닐 것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1항2호가목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닐 것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2항1호가목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등 제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1항2호나목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2항1호나목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②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법인의 피출자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2항1호가목, 나목
관계기업의 경우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중소기업규모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1항2호다목	관계기업의 경우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기준 초과하는 기업	

<참고> 평균 매출액 산정(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	창업일·합병일·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참고> 중소기업 유예기간

- . 사유 발생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봄 (최초 1회에 한함)
- . 유예기간 제외 사유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과의 합병
  - 중소기업과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 합병한 뒤 당초 유예기간이 지난 경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편입
  - 이미 유예를 적용받은 적 있는 경우

<참고>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으로 간주(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중소기업 중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
  2.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중견기업 후보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9 사업종류	산업분류부호*	주요 취급품목	사업내용	매출액 비중(%)
	* 산업분류부호 : 5페이지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참고하여 작성			

**사업종류**

- 과거 통계조사 자료 및 당해연도 재무제표와 비교
- 매출액 비중 합(100%) 확인

10. 종사자현황	구분		종사자수(명)			연간급여액(천원)		
			남	여	계	남	여	계
	상용근로자(선원 및 육상직원)							
선원	한국인							
	외국인							
	소계							
임시 및 일용근로자								
합계 (상용, 임시 및 일용근로자)								

**종사자현황**

- 합계일치여부 확인
- 종사자 구분기준 준수여부 확인
- 과거 통계조사 자료, 당해연도 재무제표와 비교

상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또는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정규직원으로 일하는 자로 선원, 육상직원을 모두 포함
임시 및 일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연간급여액**

- 상용근로자 : 급여, 상여금 등의 항목(15.손익계산서)과 비교
- 선원 : 노무비(16.제조원가)와 비교

11 어선현황	보유어선척수	보유어선 총 톤수	2023년 조업척수
	척	톤(G/T)	척

**어선현황**

- 조사명부와 비교
- 보유어선척수 ≥ 2023년 조업척수

### 3 기업체 생산·수출 현황

12. 생산실적	생산량	생산금액
	톤(M/T)	천원

생산실적 | · 행정자료로 대체

13. 수출실적	HSK코드										품명	수출국	수출량(톤,M/T)	수출금액(천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수출실적 | · 행정자료로 대체

## 4 기업체 경영실태

		구분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14. 재무상태표	자산	①유동자산(=②+⑤+⑥)											
		②당좌자산(=③+④)											
		③현금및현금성자산											
		④기타당좌자산											
		⑤재고자산											
		⑥기타 유동자산											
		⑦비유동자산(=⑦+⑧+⑬+⑭)											
		⑧투자자산											
		⑨유형자산(=⑨+⑩+⑮+⑯)											
		⑩토지											
		⑩설비자산(=⑫+...+⑮)											
		⑫건축,구축물											
		⑬기계장치											
		⑭선박,차량운반구											
		⑮기타설비자산											
		⑯건설중인자산											
		⑰기타유형자산											
		⑱무형자산											
		⑲기타비유동자산											
	자산 총계(=①+⑦)												
	부채	①유동부채(=②+③)											
		②단기차입금											
		③기타유동부채											
④비유동부채(=⑤+⑥)													
⑤장기차입금													
⑥기타비유동부채													
자본	⑦												
부채 및 자본 합계(=①+④+⑦)													

### 재무상태표

- 2023년12월31일 기준의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의 내용을 기입
- 회계기준일자가 12월31일이 아닌 경우 가장 최근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작성

### 자산

- 유동자산 = 당좌자산 + 재고자산 + 기타 유동자산
- 당좌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 기타당좌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유사계정 : 현금, 현금및현금등가물, 보통예금 등
- 기타당좌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제외한 당좌자산 하위항목의 합계
- 비유동자산 = 투자자산 + 유형자산 + 무형자산 + 기타비유동자산
- 유형자산 = 토지 + 설비자산 + 건설중인자산 + 기타유형자산
- 설비자산 = 건축·구축물 + 기계장치 + 선박·차량운반구 + 기타설비자산
- 자산총계 = 유동자산 + 비유동자산





## 제조원가

- 2023년1월1일부터 2023년12월31일까지를 기준으로 작성된 제조원가명세서의 내용을 기입
- 회계기준기간이 다른 경우 가장 최근 작성한 제조원가명세서를 기준으로 작성
- 제조원가명세서와 유사한 재무보고서로는 어로원가명세서, 어로제품매출원가명세서 등이 있음
- 당기제품제조원가 = 당기총제조비용 + 기초재공품원가  
- 기말재공품원가 - 유형자산(타계정)대체액
- 제조원가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경비 = 연료비 + 전력비 + 가스수도비 + 외주가공비 + 수선비 + 감가상각비 + 기타경비

**5 어선현황**

17. 어선현황	선명	△△99	톤수	1,000 G/T	진수년월	1999년 12월
	겸업여부	① 단독 ② 겸업	주업종부호	101	겸업종부호	해당없음

**어선현황  
업종부호**

- 원양어업 허가신고된 선명, 톤수, 진수년월, 업종을 기입
- 업종부호표를 참고하여 기입

업종부호					
업종	업종부호	업종	업종부호	업종	업종부호
참치연승	101	북양트롤	105	원양외줄낙시	109
저연승	102	원양트롤	106	모선식외줄낙시	110
참치선망	103	새우트롤	107	기타	111
원양봉수망	104	오징어채낙기	108		

- 겸업인 경우 생산량 비중이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비중이 작은 업종을 겸업종으로 기입하고 겸업이 아닌 경우 주업종만 기입

18. 조업현황	업종부호	해구부호	출어횟수	어로일수
	101	67	2	150

**업종부호  
해구부호**

- 업종부호표를 참고하여 기입
- 해구부호표를 참고하여 기입

(18. 조업현황, 19. 생산현황)		해구부호						
태평양	조업수역	해구부호	대서양	조업수역	해구부호	조업수역		해구부호
	북서부	61		북서부	21	대서양	동남부	47
중북부	67	북동부	27	인도양	서부	51		
중서부	71	중서부	31		동부	57		
중동부	77	중동부	34	남빙양	동부	48		
서남부	81	동북부	37		서부	58		
동남부	87	서남부	41		중부	88		

**출어횟수  
어로일수**

- 어로작업을 위하여 근거지항을 출항한 횟수를 기입
- 출어 후 어장까지의 항해일수, 탐어·집어·어로일수 등을 모두 합한 실제 조업을 위해 소요된 일수를 기입

19. 생산현황	품종부호	해구부호	생산량(톤MT)	생산금액(천원)	반입량(톤MT)	업종부호
행정자료(수산정보포털) 활용						

### 생산현황

- 수산정보포털을 통해 보고된 원양어획물 생산량, 생산금액과 활용

20. 선원현황	구분		선장		기관장		직원(선장기관장 제외)		부원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한국인	평균 조업 선원수 (명)		1	0	1	0	3	0	3	0	
	총 급여액 (천원)		5,000	0	4,000	0	3,000	0	2,800	0	
외국인	평균 조업 선원수 (명)		0	0	0	0	10	0	20	0	
	총 급여액 (천원)		0	0	0	0	1,000	0	800	0	
승선기간											개월

### 선원현황

- 조업 시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을 기준으로 작성
- 한국인/외국인, 선장/기관장/직원/부원, 남/여로 구분하여 기입
- 직원(선장, 기관장 제외) : 기관장을 제외한 항해사, 기관사, 통신장, 통신사, 운항장, 운항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원(어로장, 사무장, 의사, 어로장 등)
- 부원 : 직원이 아닌 해원으로 갑판부, 기관부, 조리부 등

### 총 급여액

- 총 급여액은 2023.1.1.부터 2023.12.31.까지의 임금(통상임금)과 시간외수당(생산수당), 상여금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을 기입
- 어선별 선원 총급여액의 합은 10. 종사자현황-선원 연간급여액 합계와 동일해야 함
- 승선기간 : 해당 어선의 승선기간을 개월로 표시
- 통상임금 : 선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일정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금액
- 생산수당 : 월 고정급 외에 단체협약, 선원근로계약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 어획금액이나 어획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금액

21. 연건어로원가	출어비 (천원)	어구비	연료비	입어료	소모품비	주부식비	후생비	수리비	기타출어비
		500	1,300	6,000	5,000	1,000	70	1,200	200
연건어로원가	임금 및 관리비 (천원)	선원임금	보험료	판매비	조세공과	기타관리비	감가상각비		
		450	50	1,200	5	350	20		

- 연건어로원가** · 선박별 제조원가 또는 어로원가 집계내용을 기준으로 작성
- 어구비** · 어구의 신규구입 및 수리보수를 위한 망지, 각종 부속구(로프, 부자, 침자, 보망사, 콜탈 등), 집어 등의 구입비
- 연료비** · 어선운용을 위한 항해용 유류(중유, 경유, 윤활유 등), 취사용·난방용 유류 및 가스구입비
- 입어료** · 조업국에 입어를 위해 지불하는 금액으로 조사대상 어선 한 척에 대한 입어료만 계산하여 기입  
· 여러 척이 공동의 입어료를 내고 조업하는 경우, 척수로 입어료를 나누어 계산
- 소모품비** · 전구, 청소용구, 못, 식도 등 선박소모품, 장갑 휴지 등 선원소모품 등 어구비, 수리비, 주부식비에 포함되지 않는 제물품 구입비
- 주부식비** · 쌀, 부식비, 간식, 식수 등의 구입비
- 후생비** · 선원 주류대, 담배값, 치료비 및 약품구입비, 출어수당, 4대 보험 중 사업자부담분  
· 주류대, 담배값이 짓가림제에 의해 선원분배금액에서 공제된 경우에는 임금에 포함되므로 후생비에서 제외
- 수리비** · 선체, 기관, 선박기기의 관리·수리를 위한 부품 및 재료 구입비, 선체수선 임부임, 상가비, 기관수리비 등 외부 수리대금
- 기타출어비** · 어구비, 연료비, 입어료, 소모품비, 주부식비, 후생비, 수리비 외의 출어비
- 선원임금** · 고정급, 짓가림액, 상여금, 퇴직금, 특별수당 등 선원에게 지급한 임금
- 보험료** · 어선 보험료 및 공제, 어선원 보험료 및 공제 등으로 제조원가의 보험료 중 조사대상 어선 한 척에 해당하는 보험료(손익계산서 판매비와관리비의 보험료에 포함되지 않는 보험료)
- 판매비** · 판매수수료, 운반비, 검사료, 진열비 등 판매에 소요된 경비
- 조세공과** · 면허세, 재산세 등 지방세, 어선 입출항 수속비, 조합비 등 공과금

- 기타관리비** · 관리비에서 조세공과, 보험료,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금액
- 감가상각비** · 어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손익계산서 판매비와 관리비의 감가상각비에 포함되지 않는 감가상각비)

**6 기타**

조사응답자	부서	수산부	직위	부장	성명	홍길동
	전화번호	02-1234-5678	팩스번호	02-1234-9999	전자우편	suvey@kofci.org

- 조사응답자** · 조사표 작성자의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를 기입
- 추후 관련 문의 시 해당 작성자에게 연락예정

**4. 무응답**

**4-1 주요 항목무응답 실태**

항목 무응답률 산출식

○ 일반사항

- (업체) 조사대상 업체 수를 분모로 항목 무응답 기업체 수의 비율을 산출
- (어선) 조사대상 어선 수를 분모로 항목 무응답 어선 수의 비율을 산출

○ 산출식

- (업체) 항목 무응답률(%) =  $\frac{\sum \text{항목 무응답 기업체 수}}{\sum \text{조사대상 기업체 수}} \times 100$
- (어선) 항목 무응답률(%) =  $\frac{\sum \text{항목 무응답 어선 수}}{\sum \text{조사대상 어선 수}} \times 100$

주요 항목무응답

○ (업체) 종사자 연간급여액

- 종사자 연간급여액 항목에서 '19년 무응답률 2.38%

○ (업체) 제조원가명세서

- 제조원가명세서 항목에서 '21년 무응답률 2.24%, '20년 무응답률 2.56%

○ (어선) 선원임금

- 선원임금 항목에서 '21년 무응답률 0.52%, '19년 무응답률 0.94%

○ (어선) 어로원가

- 어로원가 항목에서 '21년 무응답률 0.68%, '20년 무응답률 0.47%

주요 항목별 무응답률

(단위:%)

항목		2021	2022	2023
기업체	종사자 수	-	-	-
	종사자 연간급여액	-	-	-
	재무상태표	-	-	-
	제조원가명세서	2.24	-	-
어선	선원 임금	0.52	-	-
	어로원가	0.68	-	-

## 4-2 항목무응답 대체

### □ 항목무응답 대체

- 항목무응답 발생 시 통계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무응답항목에 대한 방안 중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방안으로 무응답 처리
- 일례로 선원 연간급여액에 대한 무응답 대처 시 다음의 6가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어선자료의 월평균 임금 대체로 선정함

선원 연간급여액의 무응답 대체 방법 비교

무응답대체 방법			추정된 연간급여액
채택 방법	어선자료의 월평균임금 대체	월평균임금*12개월*선원수	501,312천원
제안된 방법	① 어선규모 그룹 평균대체	18개 평균	580,096천원
	② 어선톤수 그룹 평균대체	11개 평균	536,280천원
	③ 조직규모, 어선규모, 어선톤수 그룹 평균대체	10개 평균	543,408천원
	④ 산업분류, 조직규모, 어선규모, 어선톤수 그룹 평균대체	9개 평균	334,986천원
	⑤ 보유어선척수를 이용한 회귀대체		431,696천원

2016~2022년 항목무응답 처리 방안

### □ 2022년 무응답 처리방안

#### ○ 기업체 무응답 처리방안

- 어선 연도 조사표의 동일항목이 무응답 되어, 임금 변화율을 통한 무응답 대체 방안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평균값을 통한 무응답 대체 방법을 적용
- 동일 업종의 어선에 대하여, 업종에 따른 월평균임금 차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무응답 어선을 제외한 어선의 분산분석을 실시하고, 어선톤수에 따른 월평균 임금 차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무응답 어선을 제외한 어선 자료를 바탕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함.
- 업종이 한국인 선원의 월평균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지 분산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P-Value가 0.0015으로 유의수준 0.056(신뢰수준 95%)보다 작으므로 집단별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함. 따라서 업종은 한국인 선원 월평균 임금의 차이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함.

- 어선통수를 설명변수로 하는 회귀분석 결과, 조정된 결정계수가 0.01(1%), 0.02(2%)로 나타났으므로, 어선통수와 월평균 임금과는 선형회귀 관계가 없다고 판단함
- 결론 : 한국인선원의 경우, 업종의 따라 선원임금의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업종의 선원의 각 직책별 월평균임금 평균값을 이용하여 무응답을 처리함.

## □ 2020, 2021년 무응답 처리방안

### ○ 기업체 무응답 처리방안

- 어선통자료 활용이 가능한 경우, 선원의 연간급여액은 어선통자료 선원의 월평균 임금을 활용하여 대체하였다.
- 손익계산서의 급여, 퇴직급여액, 제조원가명세서의 노무비가 응답된 경우, 상용근로자의 연간급여액은 손익계산서의 급여 및 퇴직급여액 활용하여 대체, 선원의 연간급여액은 제조원가명세서의 노무비를 활용하여 대체하였다.

### ○ 기업체 무응답 처리방안

- 이전 연도의 자료에서 동일항목이 응답된 경우, 선원의 월평균임금은 동일 업종 어선의 이전 연도 대비 당해 연도 선원의 직책별 월평균임금의 증감률을 적용하여 대체하였다.
- 이전 연도 조사표의 동일항목이 무응답 되어, 변화율을 통한 무응답 대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선원의 월평균임금은 동일업종 선원의 월평균임금을 활용하여 대체하였다.

$$\text{증감률} = \frac{(2018\text{년 } 1\text{인당 월평균 임금} - 2017\text{년 } 1\text{인당 월평균 임금})}{2017\text{년 } 1\text{인당 월평균 임금}}$$

- 주조업해구, 어선통수가 선원의 월평균임금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조업해구, 어선통수는 월평균임금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전연도 자료에서 어로원가 항목이 응답되고, 제조원가명세서의 당기총제조비용이 응답된 경우, 무응답 된 어로원가는 이전 연도 자료에서의 각 어로원가 항목의 비율을 활용하여 대체하였다.

## □ 2019년 무응답 처리방안

### ○ 기업체 무응답 처리방안

- 급여액과 관련된 손익계산서의 급여, 퇴직급여액, 제조원가명세서의 노무비를 이용하여 종사자 연간급여액을 대체하였다.
- 선원을 제외한 상용근로자 총 급여액을 급여, 퇴직급여액 합계로 추정하였다.
- 제조원가명세서의 노무비로 선원 총 임금을 추정하며 2018년 한국인, 외국인 급여액 비율로 세부 임금을 추정하였다.

### ○ 어선 무응답 처리방안

- 어선 2척의 승선원 1인당 월평균 임금이 무응답(승선원 수는 응답)되었으며, 동일 업종

타 어선들의 승선원 임금 변화율을 고려하여 무응답을 대체하였다.

- 동일 업종 어선의 2017년 대비 2018년 승선원 직책별 월평균 임금의 증감률 계산

$$\text{증감률} = \frac{(\text{2018년 1인당 월평균 임금} - \text{2017년 1인당 월평균 임금})}{\text{2017년 1인당 월평균 임금}}$$

- 승선원 직책별 월평균 임금의 평균 증감률(기하평균)을 이용하여 2018년 직책별 월평균임금을 추정하였다.

**□ 2018년 무응답 처리방안**

○ 기업체 무응답 처리방안

- 조사결과, 1개 업체에서 항목무응답이 나타났으며 해당 무응답항목은 제조원가명세서 일부 항목이었다. 해당 기업체는 어선 1척을 보유한 소규모 업체로 원양어업 이외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기업체 보유어선의 연간어로원가를 이용하여 제조원가명세서 무응답 항목들을 대체하였다.

기업체 무응답 처리방안

구분	무응답 처리방안
당기총제조비용	연간어로원가 총합으로 대체
경비	연간어로원가 총합에서 선원임금 차감한 값으로 대체
연료비	연간어로원가의 연료비로 대체
수선비	연간어로원가의 수리비로 대체
감가상각비	연간어로원가의 감가상각비로 대체
기타경비	연간어로원가의 총합에서 선원임금, 연료비, 수리비, 감가상각비 차감한 값으로 대체
당기제품제조원가	연간어로원가 총합으로 대체

○ 어선 무응답 처리방안

- 해당 어선은 태평양 중서부에서 조업을 하는 참치연승어선.
- 2017년 태평양 중서부에서 조업한 어선은 총 78척으로 이 중 태평양 중서부를 주조업해구로 하는 어선은 무응답 어선 제외 53척이며 태평양 중동부를 주조업해구로 하는 어선은 23척이다.
- 참치연승어선의 경우 태평양 중동부와 중서부를 이동하며 조업하기 때문에 주조업해구에 따른 연간 어로원가의 차이가 있는지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주조업 해구에 따른 연간어로원가 분산분석 결과

변동요인	제곱합	자유도	제곱평균	F비	P-value
처리	1.80E+12	1	1.80E+12	20.35	2.38E-05
잔차	6.54E+12	74	8.84E+10		
계	8.34E+12	75			

- 태평양 중서부를 주조업 해구로 하는 참치연승어선에 한하여 기업의 규모(중소기업, 중견기업)에 따라 연간 어로원가의 차이가 있는지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조직규모에 따른 연간어로원가 분산분석 결과

변동요인	제곱합	자유도	제곱평균	F비	P-value
처리	7.04E+10	1	7.04E+10	0.845	0.362
잔차	4.25E+12	51	8.33E+10		
계	4.32E+12	52			

- 어선 톤수가 연간 어로원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모형을 적용해보았으나 유의하거나 주목할만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으며, 그 외에도 선원 수 및 생산량 등 연간 어로원가에 영향을 미칠만한 다양한 변수들을 검토해 보았지만 특별히 영향을 주는 변수들은 존재하지 않았다.
- 태평양 중서부를 주조업 해구로 하는 참치연승어선 53척의 연간 어로원가 세부항목 평균값들을 이용하여 결측값들을 대체하였다.

□ 2017년 무응답 처리방안

○ 기업자료

- 조사결과, 1개 업체에서 항목무응답이 나타났으며 해당 무응답항목은 제조원가 경비의 하위항목인 연료비, 전력비, 가스수도비, 외주가공비, 수선비, 감가상각비, 기타경비이다. 경비의 총액이 응답되어 있으므로 해당 업체의 2015년 자료의 경비 하위항목 비율에 따라 무응답을 대체하였다.

① 2016년도 경비 총액( $y$ )에 전년도 경비의 하위항목 비율( $p_i, i = 1, \dots, 7$ )을 곱한다.

$$\hat{y}_i = y \times p_i, i = 1, \dots, 7$$

제조원가 무응답항목 대체

제조원가명세서	2016년(2015년 기준)		2017년(2016년 기준)		
	응답 값	항목 내 비율	응답 값	응답여부	무응답 대체
경비	$x$		$y$	응답	
연료비	$x_1$	$p_1 = x_1/x$	$y_1$	무응답	$\hat{y}_1 = y \times p_1$
전력비	$x_2$	$p_2 = x_2/x$	$y_2$	무응답	$\hat{y}_2 = y \times p_2$
가스수도비	$x_3$	$p_3 = x_3/x$	$y_3$	무응답	$\hat{y}_3 = y \times p_3$
외주가공비	$x_4$	$p_4 = x_4/x$	$y_4$	무응답	$\hat{y}_4 = y \times p_4$
수선비	$x_5$	$p_5 = x_5/x$	$y_5$	무응답	$\hat{y}_5 = y \times p_5$
감가상각비	$x_6$	$p_6 = x_6/x$	$y_6$	무응답	$\hat{y}_6 = y \times p_6$
기타경비	$x_7$	$p_7 = x_7/x$	$y_7$	무응답	$\hat{y}_7 = y \times p_7$

○ 어선자료

- 조사결과 A기업의 어선 2척(어로원가 항목), B기업의 어선 1척(승선원 임금, 어로원가 항목)에서 항목무응답이 나타났으며 해당 무응답을 보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 A기업 어로원가

- 어선 2척의 어로원가 항목 중 선원임금, 보험료, 판매비, 조세공과, 기타관리비, 감가상각비가

무응답되었다. 2014년 해당 어선의 노무비가 각 어선의 선원임금의 합과 같았으므로 2016년 노무비를 이용하여 선원임금을 대체하였으며 2014년에 감가상각비는 0이므로 2016년 감가상각비도 0으로 대체하였다(2015년도는 무응답). 그 외 나머지 항목은 동일 업종, 동일 해구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평균값으로 대체하였다. 톤수가 영향을 미치는지 회귀 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았으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R^2$ 가 0.3%에서 13.7% 사이).

- B기업 승선원임금

· 해당 어선의 2015년 승선원임금 및 동일 업종(참치연승어업)의 타 어선들의 승선원 임금 변화율을 고려하여 무응답을 대체하였다. 참치연승 어선들은 톤수가 353MT에서 488MT로 많은 차이가 나는 어선들이 없으므로 톤수는 고려하지 않았다.

① 참치연승 어선의 2016년 승선원 임금의 증감률을 구한다.

$$\text{증감률} = \frac{(2016\text{년} - 2015\text{년})}{2015\text{년}}$$

② 증감률의 평균을 구한다(기하평균)

③ 해당 어선의 2015년도 승선원 임금에 평균 증감률을 곱하여 2016년도 승선원 임금을 대체한다.

- B기업 어로원가

· 해당 어선의 2015년 어로원가는 제조원가명세서의 노무비와 경비의 합과 같으므로 2016년 제조원가명세서의 노무비와 경비의 합을 이용하여 어로원가를 대체하였다. 어로원가의 연료비는 제조원가의 연료비와 같으며 소모품과 수리비의 합은 제조원가의 수선비와 같다. 소모품비와 수리비는 2015년도의 비율을 이용하였다.

연간어로원가 무응답항목 대체

연도	구분	연료비	수선비	소모품비	수리비
2015년	제조원가	$x_1$	$x_2$		
	어로원가	$x_1$		$x_{21}$	$x_{22}$
2016년	제조원가	$y_1$	$y_2$		
	어로원가 (무응답)	$\hat{y}_1 = y_1$		$\hat{y}_{21} = y_2 \times \frac{x_{21}}{x_2}$	$\hat{y}_{22} = y_2 \times \frac{x_{22}}{x_2}$

· 위의 세 가지 항목과 2015년 어로원가 하위항목이 0인 기타출어비와 판매비,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 비율을 이용하여 2016년 어로원가 하위항목을 대체하였다.

① 제조원가의 노무비와 경비의 합에서 연료비와 소모품비, 수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 $y$ )를 계산한다.

②  $y$ 에 전년도 연간어로원가의 하위항목들의 비율( $p_i, i = 1, \dots, 8$ )을 곱하여 나머지 항목들을 대체함.

$$\hat{y}_i = y \times p_i, i = 1, \dots, 8$$

연간어로원가 무응답항목 대체

연간어로원가	2015년		2016년	
	응답 값	항목 내 비율	응답 값	무응답 대체
어구비	$x_1$	$p_1 = x_1/x$	$y_1$	$\hat{y}_1 = y \times p_1$
입어료	$x_2$	$p_2 = x_2/x$	$y_2$	$\hat{y}_2 = y \times p_2$
주부식비	$x_3$	$p_3 = x_3/x$	$y_3$	$\hat{y}_3 = y \times p_3$
후생비	$x_4$	$p_4 = x_4/x$	$y_4$	$\hat{y}_4 = y \times p_4$
선원임금	$x_5$	$p_5 = x_5/x$	$y_5$	$\hat{y}_5 = y \times p_5$
공제료	$x_6$	$p_6 = x_6/x$	$y_6$	$\hat{y}_6 = y \times p_6$
조세공과	$x_7$	$p_7 = x_7/x$	$y_7$	$\hat{y}_7 = y \times p_7$
기타관리비	$x_8$	$p_8 = x_8/x$	$y_8$	$\hat{y}_8 = y \times p_8$
소계	$x$		$y$	$\hat{y}$ (①에서 계산)

□ 2016년 무응답 처리방안

○ 기업자료

- 조사결과, 3개 업체에서 항목무응답이 나타났으며 해당 무응답항목은 재무상태표 세부항목(1개사), 종사자현황의 세부항목(2개사)이다. 재무상태표의 무응답항목은 유형자산 하위항목인 설비자산의 기계장치, 선박·차량운반구, 기타유형자산이다. 종사자현황 무응답항목은 외국인선원 수와 외국인선원 연간급여액(1개사), 상용근로자 수와 연간급여액, 임시 및 일용근로자 수와 연간급여액(1개사)이다. 해당 항목무응답을 보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 유형자산

- 설비자산의 경우 상위항목인 유형자산 총액은 응답되었으므로 해당업체의 전년도 유형자산 세부항목 비율에 따라 무응답을 대체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유형자산 총액( $y$ )에서 응답항목인 토지( $y_1$ )와 건설중인자산( $y_3$ )을 제외한 나머지( $r$ )를 계산한다.

$$r = y - (y_1 + y_3)$$

- ②  $r$ 에 전년도 유형자산의 항목 내 비율( $p_i, i = 2, 4$ )을 곱하여 설비자산( $y_2$ )과 기타유형자산( $y_4$ )의 항목을 대체한다.

$$\hat{y}_i = r \times p_i, i = 2, 4$$

- ③ 대체된 설비자산 총액( $\hat{y}_2$ )에서 응답항목인 건축·구축물( $y_{21}$ )과 기타설비자산( $y_{24}$ )을 제외한 나머지( $r_2$ )를 계산한다.

$$r_2 = \hat{y}_2 - (y_{21} + y_{24})$$

- ④  $r_2$ 에 전년도 설비자산의 항목 내 비율( $p_{2i}, i = 2, 3$ )을 곱하여 기계장치( $y_{22}$ )와 선박·차량운반구

( $y_{23}$ )의 항목을 대체한다.

$$\hat{y}_{2i} = r_2 \times p_{2i}, \quad i = 2, 3$$

유형자산의 무응답 항목 대체

재무상태표	2015년('14년 기준)		2016년('15년 기준)		
	응답 값	항목 내 비율	응답 값	응답여부	무응답 대체
유형자산 (①+②+③+④)	$x$		$y$	응답	
① 토지	$x_1$	$p_1 = x_1/x$	$y_1$	응답	
② 설비자산 (a)+b)+c)+d)	$x_2$	$p_2 = x_2/x$	$y_2$	무응답	$\hat{y}_2 = y \times p_2$
a) (건축·구축물)	$x_{21}$	$p_{21} = x_{21}/x_2$	$y_{21}$	응답	
b) (기계장치)	$x_{22}$	$p_{22} = x_{22}/x_2$	$y_{22}$	무응답	$\hat{y}_{22} = \hat{y}_2 \times p_{22}$
c) (선박·차량운반구)	$x_{23}$	$p_{23} = x_{23}/x_2$	$y_{23}$	무응답	$\hat{y}_{23} = \hat{y}_2 \times p_{23}$
d) (기타설비자산)	$x_{24}$	$p_{24} = x_{24}/x_2$	$y_{24}$	응답	
③ 건설중인자산	$x_3$	$p_3 = x_3/x$	$y_3$	응답	
④ 기타유형자산	$x_4$	$p_4 = x_4/x$	$y_4$	무응답	$\hat{y}_4 = y \times p_4$

- 외국인선원 수와 외국인선원 연간급여액

· 기업체 종사자현황의 외국인선원 수와 외국인선원 연간급여액은 무응답이지만 해당기업 어선별 외국인선원 수와 외국인 1인당 월평균임금이 응답되었다. 따라서 어선별 1인당 월평균임금에 12개월과 선원 수를 곱한 값의 총합으로 해당기업의 외국인선원 수와 외국인선원 연간급여액을 대체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어선별 외국인선원 현황의 조업 승선원 수 총합으로 무응답 항목인 외국인선원 수를 구한다.

$$\text{외국인선원 수} = \sum_i^4 a_i$$

② 외국인선원 현황별 승선원 수와 1인당 연간임금(월평균임금×12개월)을 곱하여 선원현황별 연간급여액( $s_i$ )을 각각 구한다.

$$s_i = a_i \times b_i \times 12\text{개월}, \quad i = 1, \dots, 4$$

③  $s_i$ 를 모두 더하여 전체 외국인선원의 연간급여액을 구한다.

$$\text{외국인선원 연간급여액} = \sum_i^4 s_i$$

외국인선원 현황의 무응답 항목 대체

구분		선장	기관장	직원	부원
외국인	조업 승선원 수	$a_1$	$a_2$	$a_3$	$a_4$
	1인당 월평균임금	$b_1$	$b_2$	$b_3$	$b_4$

- 상용근로자 수와 연간급여액, 임시 및 일용근로자 수와 연간급여액
  - 근로자 수와 근로자의 연간급여액은 산업분류, 조직규모, 선박규모에 따라 평균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들 그룹으로 세분하여 해당 그룹내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무응답 항목을 대체하였다. 그룹 내에서의 무응답 항목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을 살펴본 결과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무응답 업체의 매출액이 해당 그룹의 매출액 범위에서 벗어나므로 이를 이용하지 않았다.
- 어선자료
  - 조사결과 어선 2척의 어로원가에서 항목무응답이 나타났고 어선 3척은 단위무응답되었다. 해당 무응답을 보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 항목무응답
  - 어선 2척의 어로원가 항목 중 선원임금, 보험료, 판매비, 조세공과, 기타관리비, 감가상각비 항목이 무응답되었다. 2015년도 응답 자료에서 해당 어선의 노무비가 각 어선의 선원임금 합과 같으며 감가상각비는 0이었다. 이를 이용하여 각 어선의 선원임금은 올해 응답한 제조원가의 노무비를 이용하여 대체하였고 감가상각비는 0으로 대체하였다. 나머지 항목은 같은 업종, 같은 해구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평균값으로 대체하였다. 어로원가의 무응답 항목에 대하여 톤수가 영향을 미치는지를 회귀분석을 통하여 확인해 보았으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톤수는 고려하지 않았다.

### 4-3 단위무응답 실태

#### □ 단위무응답 산출식

##### ○ 일반사항

- (업체) 조사대상 업체 수를 분모로 단위 무응답 기업체 수의 비율을 산출
- (어선) 조사대상 어선 수를 분모로 항목 무응답 어선 수의 비율을 산출

##### ○ 산출식

$$- \text{(업체) 단위 무응답률(\%)} = \frac{\sum \text{단위 무응답 기업체 수}}{\sum \text{조사대상 기업체 수}} \times 100$$

$$- \text{(어선) 단위 무응답률(\%)} = \frac{\sum \text{단위 무응답 어선 수}}{\sum \text{조사대상 어선 수}} \times 100$$

#### □ 단위 무응답 현황

- 단위무응답의 주 원인은 부도, 휴·폐업 등으로 원양어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어선 매각,

항목	2020	2021	2022	2023
업체	-	-	-	-

2015년 단위무응답 처리 방안

□ 단위무응답 처리 방안

○ 어선자료

- 조사결과 어선 2척의 어로원가에서 항목무응답이 나타났고 어선 3척은 단위무응답되었다. 해당 무응답을 보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 단위무응답

- 단위무응답이 나타난 3척의 어선은 2015년도 응답 자료가 없어 올해 응답 자료를 이용하여 무응답을 대체하였다. 이들과 동일업종인 어선들에서 해구와 톤수구분이 어로원가와 선원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므로 이를 이용하였으며 3척 모두 같은 톤수 그룹에 속하므로 동일한 값으로 대체하였다. 또한 이들 중 무응답어선이 포함된 B해구에서 조업하는 어선은 모두 3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어선이다. 무응답어선의 경우 300톤 미만이므로 동일 업종 중 300톤 미만의 어선이 있는 A해구에서 조업하는 (가)기업의 어선과 동일기업의 B해구에서 조업하는 300톤 이상 500톤 미만 어선의 각 항목별 비율을 이용하여 무응답을 대체하였다. 자세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A해구에서 (가)기업의 300톤 이상 500톤 미만 그룹 평균에 대한 300톤 미만 그룹 평균의 항목별 비율( $r_i$ )을 구한다.

$$r_i = x_{2i} / x_{1i}, \quad i = 1, \dots, k$$

- ① B해구에서 (가)기업의 300톤 이상 500톤 미만 그룹의 평균값에 항목별 비율을 곱하여 300톤 미만 그룹의 평균 예측값을 구한다.

$$\hat{y}_{2i} = y_{1i} \times r_i, \quad i = 1, \dots, k$$

단위무응답 대체

해구	기업	톤수구분	항목1	항목2	...	항목k
A해구	(가)기업	300톤 이상 500톤 미만	$x_{11}$	$x_{12}$	...	$x_{1k}$
		300톤 미만	$x_{21}$	$x_{22}$	...	$x_{2k}$
B해구	(가)기업	300톤 이상 500톤 미만	$y_{11}$	$y_{12}$	...	$y_{1k}$
	무응답업체	300톤 미만	$y_{21}$	$y_{22}$	...	$y_{2k}$

□ 주요 하위그룹 및 무응답 사유별 무응답률

- 해당사항 없음

단위무응답에 의한 편향 발생 및 분산 증가 가능성

○ 해당사항 없음

## 5. 가중치 조정

○ 별도의 가중치 조정은 하지 않음

## 6. 통계추정 산식 및 내용

○ 본 조사는 전수조사로 해당사항 없음

## 7. 표본오차 추정 방법 및 결과(표본조사)

○ 본 조사는 전수조사로 해당사항 없음

## 8. 지수 유형 및 산출산식

○ 해당사항 없음

## 9. 지수 가중치 및 갱신

○ 해당사항 없음

## 10. 지수개편

○ 해당사항 없음

## 11. 디스플레이터

○ 해당사항 없음

## 12. 계절조정

○ 해당사항 없음

## 13. 행정자료의 매칭방법

통계자료와 행정자료 간 매칭변수

○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기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수산정보포털, 원양산업협회 행정자료) 기업체명, 어선명, 톤수, 업종

통계자료와 행정자료 간 매칭방법

○ 위의 식별키로 원양어업 통계조사 자료와 결합함

통계자료와 행정자료 간 매칭허용 한계

- 금융감독원의 공시자료는 주권상장법인, 외부감사대상 법인 등의 기업체에 대한 정보만 있으며 제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업체는 미공시

#### □ 통계자료와 행정자료 간 매칭비율 수치

- 원양산업협회 업체 및 어선자료는 원양어업 통계조사 조사대상 기업체의 100%가 조회
- 수산정보포털 조업실적 자료는 원양어업 통계조사 조사대상 기업체의 100%가 조회
- 금융감독원의 공시자료는 원양어업 통계조사 조사대상 기업체의 약 47.5%가 조회

#### □ 행정자료를 점검 또는 보완하는 경우 내용, 방법, 결과

##### <행정자료의 보완>

- 금융감독원의 업로드된 기업체의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가 수정되는 경우
  - 수정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다운받아 수정된 부분을 확인함

## Ⅶ. 통계추정 및 분석

### 1. 통계추정

#### 1-1 가중치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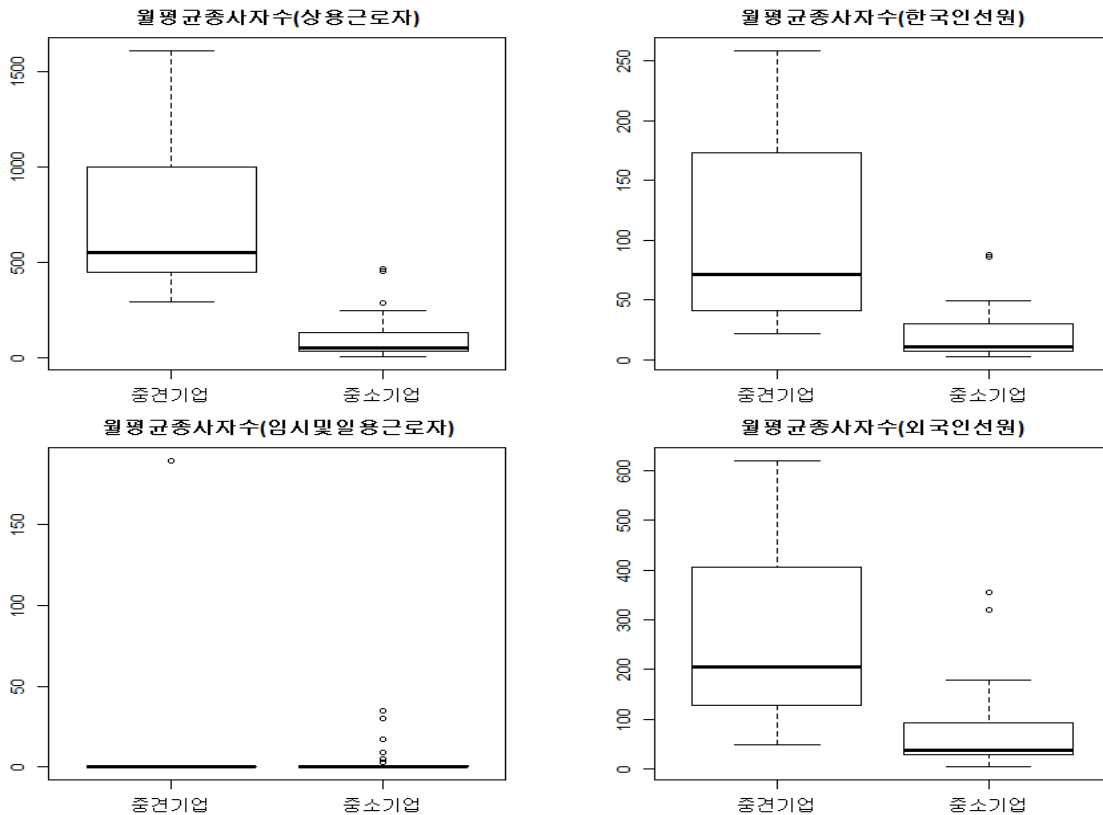
##### 통계 추정

- 별도의 가중치 조정은 하지 않음

#### 1-2 이상치 식별 및 처리

##### 이상치 처리

- 원양어업 통계조사 특성상 조사대상이 약 40개사 200척으로 작은 규모이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간 종사자 수, 매출액 등의 규모차이가 매우 커서 많은 이상치가 발생함
  - 해당 이상치에 대한 사업보고서, 과거 자료 등을 통해 검토



#### 1-3 통계추정 산식 및 내용

##### 통계추정 산식

- 원양어업 통계조사는 전수조사로 통계추정 해당 없음

## Ⅷ.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 1. 공표통계 해석방법

주요 분류 수준별 세분화된 공표통계

○ 공표결과표 및 적용분류

- 기업체(생산실적 제외)

공표 결과표	분류기준	세부분류
종사자 수	산업분류	원양어업
종사자 연간 급여액		기타
수출실적	조직규모	중견기업
재무상태표		중기업
손익계산서		소기업
제조원가명세서	어선규모	1척
손익의 관계비율		2~5척
자산·자본의 관계비율		6~9척
자산·자본의 회전을		10척 이상
생산성지표		

- 기업체(생산실적)

공표 결과표	분류기준	세부분류
생산실적	산업분류	원양어업
		기타
	조직규모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어선규모	1척
		2~5척
		6~9척
		10척 이상
	업종	참치연승
		저연승
		참치선망
		원양봉수망
		북양트롤
		원양트롤
		새우트롤
		오징어채낚기
원양외줄낚시		
모선식외줄낚시		
기타		

--

해역	태평양	북서부
		중북부
		중서부
		중동부
		서남부
		동남부
		태평양 기타
		소계
	대서양	북서부
		중북부
		중서부
		중동부
		동북부
		서남부
		동남부
		대서양 기타
	인도양	서부
		동부
		인도양 기타
		소계
남빙양	동부	
	서부	
	중부	
	남빙양 기타	
	소계	

- 어선

공표 결과표	분류기준		세부분류		
연간어로원가	어선톤수		~299		
		300~499			
		500~1,599			
		1,600~2,999			
		3,000~			
	업종		참치연승		
			저연승		
			참치선망		
			원양봉수망		
			북양트롤		
			원양트롤		
			새우트롤		
			오징어채낚기		
			원양외줄낚시		
			모선식외줄낚시		
			기타		
		해역	태평양	북서부	
				중북부	
	중서부				
중동부					
서남부					
동남부					
태평양 기타					
소계					
대서양	북서부				
	중북부				
	중서부				
	중동부				
	동북부				
	서남부				
	동남부				
	대서양 기타				
	소계				
인도양	서부				
	동부				
	인도양 기타				
	소계				
남빙양	동부				
	서부				
	중부				
	남빙양 기타				
	소계				
선원현황					

□ 통계 공표의 적정성 검토 사항

○ 원양어업 통계조사는 전수조사로 그 적정성은 확실히 보장된다고 볼 수 있음

□ 주요 통계표, 그래프

**참고 1**

**원양어업 통계조사 분석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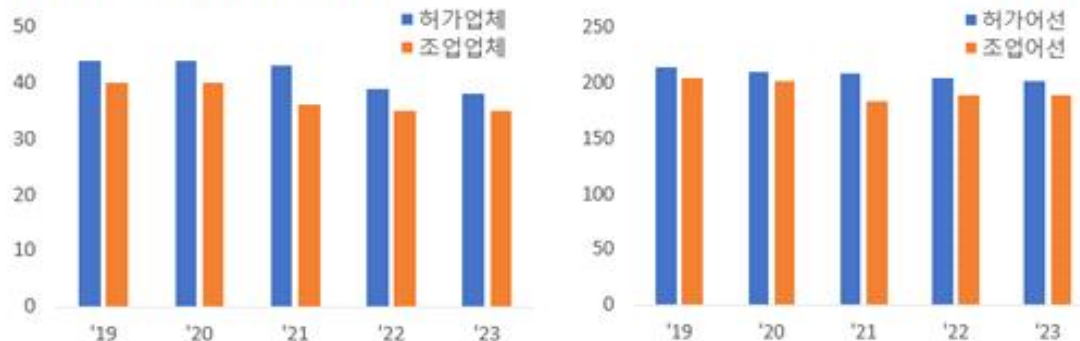
**1 업체 및 어선현황**

○ 원양어업 조업 단독기업체는 '22년과 (35개사→35개사) 동일하며, 조업 어선 척수도 (189척→189척) 동일함

- 중소기업 27개사 중 매출액 80억 이상 중기업은 18개사, 80억 미만 소기업은 9개사임

| 그림 1 | 원양어업 기업체 및 어선 추이

(단위 : 개사, 척)



자료 : 원양어업 통계조사

**2 종사자현황**

○ 전체 종사자 수는 9,724명으로 '22년 대비 1,067명(9.9%) 감소

- 중견기업 종사자 수는 '22년 대비 905명 감소한 6,447명이고 중소기업의 종사자 수는 '22년 대비 162명 감소한 3,277명임

| 표 1 | 원양어업 기업체(조업) 및 종사자 추이

(단위 : 개사, 척, 명)

	2021			2022			2023		
	기업 체수	어선 척수	종사자 수	기업 체수	어선 척수	종사자 수	기업 체수	어선 척수	종사자 수
합계	36	184	12,875	35	189	10,791	35	189	9,724
중견기업			9,498			7,352			6,447
상용근로자	8	99	6,448	8	100	6,554	8	102	5,888
임시 및 일용근로자			2,988			798			584
중소기업			3,439			3,439			3,277
상용근로자	28	85	3,339	27	89	3,364	27	89	3,239
임시 및 일용근로자			100			75			38

자료 : 원양어업 통계조사

### 3 생산현황

- 원양어업 전체 생산량은 '22년 대비 2.6% 증가하였고 생산금액은 2.3% 감소함
  - (다랑어류) '22년 대비 생산량 4.2% 증가하고, 생산금액은 7.8% 증가
    - \* 가다랑어, 황다랑어, 눈다랑어
  - (오징어류) '22년 대비 생산량 34.6% 감소 및 생산금액 35.1% 감소
  - (명태) '22년 대비 생산량 31.7% 증가 및 생산금액 31.7% 증가

표 2 | 어종별 생산현황 (단위: M/T, 백만원)

	생산량		생산금액	
	2022	2023	2022	2023
전체	399,778	410,290	1,125,996	1,099,795
가다랑어	202,303	201,308	294,915	293,339
황다랑어	51,884	60,546	158,493	171,695
눈다랑어	21,009	24,762	154,808	190,591
오징어	48,162	31,493	302,447	196,289
명태	21,591	28,432	31,026	40,857
기타	56,029	63,751	184,307	247,840

### 4 수출현황

- 원양어업 수출량은 '11년 336,960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23년에는 전체 수산물 수출의 22.4%인 171,065톤임
  - 원양어업 수출량은 '22년 대비 11.2% 증가, 수출금액은 4.8% 증가

그림 2 | 전체수산물 수출대비 원양어업 수출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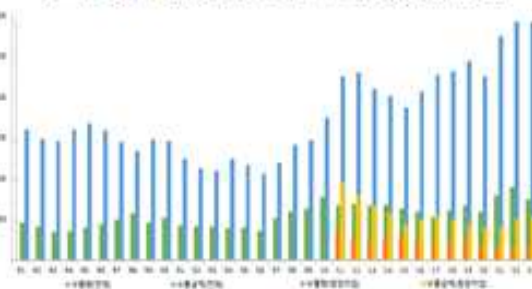


표 3 | 어종별 수출 추이 (단위: M/T, 백만원, %)

	수출량			수출금액		
	2022	2023	증가율	2022	2023	증가율
전체	153,857	171,065	11.2	512,197	537,016	4.8
가다랑어	100,040	108,229	8.2	177,692	203,592	14.6
황다랑어	25,100	31,799	26.7	69,930	95,679	36.8
눈다랑어	3,451	4,142	20.0	17,296	21,041	21.7
오징어	406	1,161	186.0	1,682	5,208	209.6
이빨고기	2,227	1,983	-11.0	86,841	85,695	-1.3
전갱이	0	0	0	0	0	0
기타	22,633	23,751	4.9	158,756	125,801	-20.8

자료: 원양어업 통계조사

- (재무상태) '23년 원양어업 전체 기업체의 자산은 '22년 대비 4.5% 증가, 부채는 4.4% 증가, 자본은 4.1% 증가하였음

-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우 자산, 부채, 자본 모두 증가

표 4 | 원양어업 자산, 부채, 자본현황

(단위 : 억원)

	자산			부채			자본		
	2022	2023	증가율	2022	2023	증가율	2022	2023	증가율
전체	70,795	73,993	4.5%	29,465	29,719	4.4%	42,930	44,046	4.1%
중견기업	65,155	66,876	2.3%	25,319	25,661	1.3%	39,898	41,016	3.0%
중소기업	5,640	7,317	29.7%	3,145	4,058	29.0%	2,494	3,030	21.5%
중기업	5,339	7,033	31.7%	2,890	3,797	34.2%	2,508	3,008	19.9%
소기업	301	284	-5.6%	255	261	-17.1%	-14	22	257.1%

자료 : 원양어업 통계조사

- (손익) '23년 원양산업 매출 규모는 49,9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 영업손익은 41.9% 감소, 당기순손익은 30.2% 감소

- 중견기업의 경우 매출액 증가, 영업손익 감소, 당기순손익 감소

표 5 | 원양어업 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손익현황

(단위 : 억원)

	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2022	2023	증가율	2022	2023	증가율	2022	2023	증가율
전체	48,854	49,969	2.3%	9,497	2,032	-41.9%	2,739	1,912	-30.2%
중견기업	42,679	43,596	2.1%	3,035	1,878	-38.2%	2,291	1,719	-25.0%
중소기업	6,175	6,372	3.2%	462	156	-66.2%	448	194	-56.7%
중기업	5,775	5,973	3.4%	504	161	-68.1%	474	193	-59.3%
소기업	400	400	0.0%	-42	-6	85.7%	-28	0	100.0%

자료 : 원양어업 통계조사

- (수익성)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자기자본순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2년 대비 하락

-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우 지표 모두 하락

표 6 | 원양어업 자기자본순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추이

(단위 : %)

		2019	2020	2021	2022	2023
		전체	자기자본순이익률	4.0	4.9	9.8
중소기업	자기자본순이익률	2.7	3.3	7.0	5.7	4.3
	매출액순이익률	2.0	4.0	6.6	7.3	4.5
	매출액영업이익률	4.1	5.4	8.2	5.7	4.2
중기업	자기자본순이익률	2.8	3.8	6.2	5.4	3.9
	매출액순이익률	2.8	3.9	6.2	7.1	4.3
	매출액영업이익률	3.3	-1.9	33.8	18.4	11.9
소기업	자기자본순이익률	1.7	-0.8	12.6	7.9	6.7
	매출액순이익률	-2.6	4.8	8.8	8.2	5.9
	매출액영업이익률					

위 지표값이 역위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문감사 기업 제외  
자료 : 원양어업 통계조사

**참고 2**

**'23년도 우리나라 어업생산동향**

○ '23년도 어업별 품종별 생산량과 생산금액

(단위 : 톤, 백만원)

어업별	품종별	생산량	생산금액	비고
<b>합계</b>		3,678,417	9,288,361	
연근해어업	소계	955,955	4,367,256	
	어류	729,743	2,539,810	
	갑각류	89,241	690,403	
	패류	79,873	337,250	
	연체동물류	48,171	740,392	
	기타수산동물	5,012	47,562	
	해조류	3,916	11,839	
해변양식업	소계	2,269,357	3,137,860	
	어류	79,662	1,119,445	
	갑각류	6,996	132,350	
	패류	414,641	942,809	
	기타수산동물	26,285	87,408	
	해조류	1,741,772	855,847	
원양어업	소계	410,226	1,098,609	
	어류	340,959	867,779	
	갑각류	35,781	26,951	
	연체동물	33,487	203,880	
내수면어업	소계	42,879	684,636	
	어류	31,088	628,187	
	갑각류	369	6,281	
	패류	11,359	47,060	
	기타수산동물	62	3,108	

○ '23년도 어업별 어류 생산량과 생산금액

(단위 : 톤, 백만원)

어업별	품종별	생산량	생산금액	비고
<b>합계</b>		1,181,452	5,155,222	
연근해어업	어류	729,743	2,539,810	
해변양식업	어류	79,662	1,119,445	
원양어업	어류	340,959	867,779	
내수면어업	어류	31,088	628,187	

□ 공표되는 통계의 해석방법 및 이용 시 유의사항

- [산업분류 및 조직규모] 기업의 산업분류 기준은 2023년, 기업의 조직분류 기준은 2023년을 포함한 최근 3개년도임. 따라서 기업의 산업분류 및 조직규모가 이전 연도 조사의 기업 상태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 필요. 특히, 중기업 및 소기업의 경우, 변동사항 다수 있음  
예) A 기업- 2022년 원양산업, 중기업 / 2023년 기타산업, 소기업
- [어선현황] 어선통계는 허가척수와 2023년도 실제 조업을 한 선박 척수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별도로 표기하지 않은 통계의 경우 허가척수(실제 조업하지 않은 선박과 허가를 유예한 선박의 경우 이전 선박제원을 사용)를 기준으로 함
- [생산통계] 생산통계는 동해어업관리단(조업감시센터)에서 국립수산물과학원을 거쳐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수산정보 업무포털)로 전송되는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작성. 본 통계조사의 생산 통계는 2024년 6월 1일 기준 해양수산부 수산정보 업무포털의 생산통계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한 것임
- [수출통계] 수출통계의 경우 한국원양산업협회를 경유(무역업체 포함,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 제외)하여 서울세관에 신고한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본 통계조사의 수출 통계는 무역업체의 실적은 제외하고,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은 포함함. 수출금액은 달러로 표기되어 해당 월의 월평균환율(기획재정부 주요경제지표(2024년 1월 발표) 2023년 월별 환율)을 이용하여 환산한 금액임
- [선원현황] 선원의 경우 본인의지의 하선이나 사고 등에 의한 하선이 잦음. 고용 계약의 변동이 심하고 복잡하여 임금통계 작성시 기업마다 다른 기준으로 계산하여 작성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실제 선원의 임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산출식은 다음과 같음

---

산출식

---

	$h$ : 관찰 분류값
$\widehat{Y}_h = \frac{\sum_{i=1}^{n_h} w_{hi}}{\sum_{i=1}^{n_h} (m_{hi} \times t_{hi})}$	$n_h$ : 관찰 분류값의 어선 수
	$w_{hi}$ : 분류값 h에 해당하는 어선 중 i번째 어선의 총 연간급여액
	$m_{hi}$ : 분류값 h에 해당하는 어선 중 i번째 어선의 평균 조업 선원 수
	$t_{hi}$ : 분류값 h에 해당하는 어선 중 i번째 어선의 승선기간(개월)
	$\widehat{Y}_h$ : 분류값 h의 1인당 월평균임금

---

- 통계표와 도표 안의 수치는 통계 처리 과정 중 소수점 이하에서 반올림 처리하여 세부 항목의 합이 전체 합계 또는 세부 항목간의 소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참고사항

지표 분류	지표명	내용
손익의 관계비율	총자산세전 순이익률	기업의 총자산운용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총자산에 대한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하 세전순이익)의 비율로 측정  * 총자산세전순이익률 = 세전순이익/총자산 × 100  한편 이 비율의 변동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지표를 매출액세전순이익률과 총자산회전율의 곱으로 분해하여 볼 수 있음  * 세전순이익/총자산 = 세전순이익/매출액 × 매출액/총자산  * 총자산세전순이익률 = 매출액세전순이익률 × 총자산회전율  예를 들어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높으나 총자산회전율이 낮은 경우에는 판매마진은 높았으나 기업의 판매활동이 부진하였음을 나타냄
	총자산 순이익률	총자산에 대한 당기순이익 비율로서 ROA(Return on assets)로 알려져 있음. 수익을 내기 위해 총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했는지를 나타냄  * 총자산순이익률 = 당기순이익/총자산 × 100
	기업순이익률	총자본에 대한 당기순이익과 이자비용 합계액의 비율로서 기업에 투하된 총자본의 종합적인 최종성과를 나타냄  * 기업순이익률 = (당기순이익 + 이자비용)/총자본 × 100
	자기자본세전 순이익률	자기자본에 대한 세전순이익의 비율로서 출자자 또는 투자자들이 투하 자본에 대한 수익성을 측정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이용  * 자기자본세전순이익률 = 세전순이익/자기자본 × 100
	자기자본 순이익률	자기자본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며 ROE(Return on Equity)로 널리 알려져 있음. 자본의 효율성을 측정하는데 이용  * 자기자본순이익률 = 당기순이익/자기자본 × 100
	자본금세전 순이익률	기업 활동의 기초가 되는 납입자본금에 대한 세전순이익의 비율. 앞에서 설명한 자기자본세전순이익률 산출을 위한 자기자본에는 납입자본금 외에도 잉여금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출자자의 지분에 상응 하는 정확한 이익률의 산정이 어려움. 따라서 자본금세전순이익률은 이에 대한 보조지표로 널리 이용  * 자본금세전순이익률 = 세전순이익/자본금 × 100
	매출액세전 순이익률	기업 경영활동의 성과를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 뿐만 아니라 재무활동 등 영업활동 이외의 부문에서 발생한 경영성과를 동시에 측정 가능  * 매출액세전순이익률 = 세전순이익/매출액 × 100
	매출액 순이익률	매출액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  * 매출액순이익률 = 당기순이익/매출액 × 100
	매출액 영업이익률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제조 및 판매와 직접 관계된 영업이익을 매출액과 대비한 것으로 영업효율성을 나타냄  * 매출액영업이익률 = 영업이익/매출액 × 100
	매출원가 대 매출액	매출액 중 매출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원가율 또는 마진율을 측정하는 지표

	<p>* 매출원가 대 매출액 = 매출원가/매출액 × 100</p>
변동비 대 매출액	<p>변동비는 조업도의 변동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이 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것은 조업도가 낮거나 설비가 지나치게 많음을 의미하고 반대로 과도하게 높은 것은 고정설비의 부족을 의미함. 따라서 이 비율은 적정조업도 및 투자설비규모의 판단에 중요한 지표</p> <p>일반적으로 재료비, 외주가공비 등은 변동비로 분류</p> <p>* 변동비 대 매출액 = 변동비/매출액 × 100</p> <p>* 변동비 = 총비용 - 고정비</p> <p>* 총비용 = 매출원가 + 판매관리비 + 영업외비용</p>
고정비 대 매출액	<p>고정비는 조업도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이 비율이 높으면 조업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의미하며, 경기불황 시에는 매출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정비지출은 줄지 않아 이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p> <p>일반적으로 감가상각비, 보험료, 임차료, 이자비용 등은 고정비로 분류</p> <p>* 고정비 대 매출액 = 고정비/매출액 × 100</p> <p>* 고정비 = 판매비와관리비 + 영업외비용 + (노무비의 1/2 + 제조경비 - 외주가공비 + 재고조정 중의 고정비)</p> <p>* 재고조정중의 고정비 = (매출원가 - 당기총제조비용) × (노무비의 1/2 + 제조경비 - 외주가공비) / 당기총제조비용</p>
인건비 대 매출액	<p>매출액에서 인건비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노무관리 및 인건비 결정에 이용</p> <p>* 인건비 대 매출액 = 인건비/매출액 × 100</p> <p>인건비는 손익계산서의 판매비와관리비 중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와 제조원가명세서 중 노무비의 합계액</p>
재료비 대 매출액	<p>매출액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원재료 이용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데 이용</p> <p>* 재료비 대 매출액 = 재료비/매출액 × 100</p>
재료비 대 영업총비용	<p>영업총비용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재료비 대 매출액의 보조지표로 이용</p> <p>* 재료비 대 영업총비용 = 재료비/영업총비용 × 100</p> <p>* 영업총비용 = 당기총제조비용 + 판매비와관리비</p>
감가상각률	<p>비상각자산(토지, 건설 중인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유·무형자산에 대하여 당기에 어느 정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이 비율이 높으면 유·무형자산에 대한 재투자비용 회수가 빠름을 의미</p> <p>* 감가상각률 = 감가상각비 / {유형자산 + 무형자산 - (건설 중인 자산 + 토지) + 감가상각비} × 100</p>
금융비용 대 부채	<p>기업의 부채는 차입금과 같이 이자를 부담하는 이자부부채와 매입채무, 선수금, 총당금 등과 같이 이자를 부담하지 않는 비이자부부채로 구분. 금융비용 대 부채 비율은 이러한 비이자부부채를 포함한 총부채에</p>

		<p>대한 금융비용의 비율</p> <p>* <math>\text{금융비용 대 부채} = \text{금융비용} / \text{부채} \times 100</math></p>
자산 ·자본의 관계비율	자기자본비율	<p>자기자본비율은 총자본 중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재무구조 지표. 자기자본은 금융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기업이 운용할 수 있는 자본이므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안정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p> <p>* <math>\text{자기자본비율} = \text{자기자본} / \text{총자본} \times 100</math></p> <p>* <math>\text{총자본(자산)} = \text{자기자본(자본)} + \text{타인자본(부채)}</math></p>
	유동비율	<p>단기채무에 총당할 수 있는 유동자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평가하여 기업의 단기지급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로서 유동비율이 높을수록 단기지급능력이 양호하다고 볼 수 있으나 과도한 유동자산 보유는 자산운용 효율성을 떨어뜨려 수익성을 저해</p> <p>* <math>\text{유동비율} = \text{유동자산} / \text{유동부채} \times 100</math></p>
	당좌비율	<p>유동부채에 대한 당좌자산의 비율로서 유동자산 중 현금화되는 속도가 낮고 현금화의 불확실성이 높은 재고자산 등을 제외시킨 당좌자산을 유동부채에 대응시킴으로써 단기채무에 대한 기업의 지급능력을 파악하는 데 사용. 산성시험비율 또는 신속비율이라고도 하는 이 비율은 기업의 유동성분석을 위한 보조지표로 사용</p> <p>* <math>\text{당좌비율} = \text{당좌자산} / \text{유동부채} \times 100</math></p>
	현금비율	<p>유동부채에 대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비율로서 당좌자산 중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유동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초단기 채무지급능력을 파악하는 지표. 종전에는 단기투자자산내의 단기금융상품을 분자항목에 포함하였으나 회계기준 변경으로 이를 제외</p> <p>* <math>\text{현금비율} = \text{현금 및 현금성자산} / \text{유동부채} \times 100</math></p>
	비유동비율	<p>기업자산의 고정화 위험을 측정하는 비율로서 운용기간이 장기에 속하는 비유동자산을 어느 정도 자기자본으로 총당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비유동비율은 일반적으로 100% 이하를 양호한 상태로 보고 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자금이 고착되어 있는 비유동자산에 대한 투자는 가급적 상환기한이 없는 자기자본으로 총당하는 것이 기업의 장기 안정성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기 때문</p> <p>* <math>\text{비유동비율} = \text{비유동자산} / \text{자기자본} \times 100</math></p>
	부채비율	<p>부채비율은 타인자본과 자기자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안정성 지표로서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판단. 부채비율은 자기자본비율과 역(逆)의 관계에 있어 자기자본비율이 높을수록 부채비율은 낮아지게 됨</p> <p>타인자본은 차입금, 회사채, 매입채무, 미지급금, 부채성총당금 등의 부채를 말하며 1년 이내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유동부채와 1년 이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비유동부채로 구분. 경영자 입장에서는 단기채무 상환의 압력을 받지 않고 투자수익률이 이자율을 상회하는 한 타인자본을 계속 이용하는 것이 유리. 그러나 채권회수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채권자는 부정적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기업의 부채비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추가로 부채를 조달하는 것이 어려울</p>

		<p>뿐만 아니라 과도한 이자비용의 지급으로 수익성도 악화되어 지급 불능사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p> <p>* 부채비율 = (유동부채 + 비유동부채) / 자기자본 × 100</p>
	유동부채비율	<p>자기자본에 대한 유동부채의 비율로서 자본구성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보조지표</p> <p>비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자본구성의 안정성은 물론 재무유동성도 불안정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p> <p>* 유동부채비율 = 유동부채/자기자본 × 100</p>
	비유동부채비율	<p>자기자본에 대한 비유동부채의 비율로서 자본구성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보조지표</p> <p>* 비유동부채비율 = 비유동부채/자기자본 × 100</p>
	차입금의존도	<p>총자본 중 외부에서 조달한 차입금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 차입금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금융비용부담이 가중되어 수익성이 저하되고 안정성도 낮아지게 됨</p> <p>* 차입금의존도 = (장·단기차입금 + 회사채) / 총자본 × 100</p>
	차입금 대 매출액	<p>차입금 규모가 매출액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차입금의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냄</p> <p>* 차입금 대 매출액 = 차입금/매출액 × 100</p>
자산·자본의 회전율	총자산회전율	<p>총자산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에 투하한 총자산의 운용효율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p> <p>* 총자산회전율 = 매출액/총자산</p>
	자기자본회전율	<p>자기자본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했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자기자본 이용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p> <p>* 자기자본회전율 = 매출액/자기자본</p>
	자본금회전율	<p>납입자본금의 회전속도 즉 자본금 이용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p> <p>* 자본금회전율 = 매출액/자본금</p>
	경영자산회전율	<p>영업활동에 직접 투입활동되고 있는 경영자산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데 이용되는 지표</p> <p>* 경영자산회전율 = 매출액/{총자산 - (건설중인 자산 + 투자자산)}</p>
	비유동자산회전율	<p>비유동자산의 효율적 이용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자본의 고정화 정도를 판단하는 수단이 되며 유동성분석에 있어서도 유용한 보조지표로 이용될 수 있음</p> <p>* 비유동자산회전율 = 매출액/비유동자산</p>
	유형자산회전율	<p>유형자산의 이용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자산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데 유용. 이 비율이 높으면 비유동자산의 유지를 위하여 지출되는 상각비, 보험료, 수선비 등의 고정비가 제품단위당 체감적으로 배분되어 원가절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냄. 그러나 영업규모에 비해 설비투자가 부진한 경우에도 동 비율이 높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함</p> <p>* 유형자산회전율 = 매출액/유형자산</p>
생산성	노동장비율	<p>생산과정에서 종업원 한 사람이 어느 정도의 노동장비를 이용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p> <p>* 노동장비율 = (유형자산 - 건설중인 자산) / 종업원수</p>

자본집약도	<p>종업원 한 사람이 어느 정도의 자본액을 보유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노동장 비율의 보조지표로 이용</p> <p>* 자본집약도 = 총자본/종업원수</p>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p>종업원 한 사람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지표로서 부가가치기준에 의한 노동생산성을 말하며 임금결정의 기준이 되기도 함. 노동생산성이 높다는 것은 기업이 보유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했음을 의미</p> <p>*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 부가가치/종업원수</p>
총자본투자효율	<p>기업에 투하된 총자본이 1년 동안 어느 정도의 부가가치를 산출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자본생산성을 측정하는 지표. 이 비율이 높으면 총자본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었음을 의미</p> <p>* 총자본투자효율 = 부가가치/총자본 × 100</p>
설비투자효율	<p>기업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설비자산(유형자산 - 건설중인 자산)이 어느 정도의 부가가치를 생산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총자본투자효율의 보조지표로 이용</p> <p>또한 “설비투자효율 × 노동장비율 =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로 표시되므로 노동생산성의 변동요인분석에도 이용됨</p> <p>* 설비투자효율 = 부가가치 / (유형자산 - 건설중인자산) × 100</p>
부가가치율	<p>일정기간 동안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액을 같은 기간의 산출액으로 나눈 비율로서 산출액 중 생산활동에 참여한 생산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의 비율을 나타내므로 소득률이라고도 함. 부가가치액은 산출액에서 다른 기업이 생산한 중간투입물인 재료비 등을 차감한 것이므로 기업의 생산효율성이 높을수록 부가가치율은 높아지게 됨. 부가가치율이 높다는 것은 기업활동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분배되는 몫이 크다는 것을 의미</p> <p>*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산출액 × 100</p> <p>* 산출액 = 매출액 + 제품재고증감 - 외주가공비</p> <p>* 제품재고증감 = 제조비용 - 매출원가</p>
노동소득분배율	<p>기업이 창출한 요소비용부가가치 중에서 노동력을 제공한 근로자에게 분배된 몫의 비중을 나타냄</p> <p>* 노동소득분배율 = 인건비/요소비용부가가치 × 100</p> <p>* 요소비용 부가가치 = 영업잉여 + 금융비용 + 인건비</p>

#### □ 연도별(시계열) 통계결과 및 분석결과 관리

- 본 통계조사 결과는 KOSIS, 해양수산통계시스템에 등록되어 연도별(시계열) 통계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

#### □ 성인지 관련 공표 통계 항목

- 종사자, 선원 등의 조사항목에 대하여 남성 통계, 여성 통계 각각 조사하여 결과 제공  
-종사자수, 선원승산현황 (국가통계포털)

## 2. 조사대상 기간/조사 기준시점과 공표 시기

### 조사대상 기간/조사 기준시점과 통계공표 시점

- 조사대상 시점
  - 설문 문항에 따라 전년 12월 말 기준, 혹은 전년도 한 해로 구성
- 통계공표 시점
  - 조사 기준시점 대비 익년 8월

### 조사과정별 소요되는 기간

	소요시간	실제(2024)	사유
조사기획	2개월	‘24.1월~3월	사업계획서 작성, 이용자 의견조사 실시
조사준비	2개월	‘24.2월~4월	조사표 변경 관련 협의 및 변경승인 신청, 조사지침서 및 작성요령서 등 작성, 조사원 채용 및 교육
조사실시	1개월	‘24.4월~5월	현장조사 실시
내용검토 및 자료입력	2개월	‘24.6월~7월	조사표 입력, 1·2차 내용검토
결과표 작성	1개월	‘24.8월	결과표 작성 및 분석
결과표 공표		‘24.8월	결과표 KOSIS 등록

### 조사 기준시점과 통계결과의 최초 공표일 간의 차이

- 연간통계로써, 시차는 9개월 미만으로 매우 짧은 시차를 나타냄

조사기준시점	통계결과 공표일	공표주기	시차
2023.12.31.	2024.8.31.	1년	244일

### 기간 단축 가능성

- 조사시기 변경에 대한 업체 의견 조사 후, 조사시기가 당겨진다면 기간이 단축될 가능성도 있음

### 참고사항

- 기존 원양어업 통계조사 공표일은 조사기준시점 대비 익년 9월이었으나 2018년부터 8월로 조기 공표(변경 승인 신청)

## 3. 공표일정

### 사전에 공개된 통계공표 일정과 공개방법

- 일정
  - ‘24년 8월

○ 방법

- 해양수산물통계시스템을 통해 공표일정 공개

□ 통계공표 일정을 작성기관 홈페이지 등에 예고

해양수산물통계시스템 서비스안내 통계바다 주요지표바다 정보바다 오픈 API LOGIN

통계바다 | 통계공표일정

통계시물 21건, 2/3페이지 - 해양수산물 국가승인통계에 대한 2024년 공표일정 정보입니다.

번호	통계명	담당부서	작성주기	공표시기	공표예정일
11	한국선원통계	선원정책과	매년	작성대상년도 익년 5월	2024-05-31
12	항만시설 및 능력현황	항만정책과	매년	작성대상년도 익년 6월	2024-06-30
13	수산물 검역 및 수출검사 통계	검역검사과	매년	작성대상년도 익년 6월	2024-06-30
14	수산물 가공업통계	수출가공진흥과	매년	작성대상년도 익년 7월	2024-07-31
15	통류어선통계	어선안전정책과	매년	작성대상년도 익년 7월	2024-07-31
16	원양어업 통계조사	원양산업과	매년	작성대상년도 익년 8월	2024-08-31
17	머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	소독복지과	매년	조사기준시점 익년 6월	2024-06-30
18	해양수산물통계조사	해양정책과	매년	작성대상년도 익년 10월	2024-10-31
19	국가해양선조사	수료측량과	매년	조사기준 년 익년 6월 중	2024-06-30
20	연안습지면적현황	해양생태과	5년	작성대상년도 익년 6월	2024-06-30

출처 : 해양수산물통계시스템(<https://www.mof.go.kr/statPortal/>)

□ 예고된 통계 공표일정 준수

- 가장 최근 공개된 2024년도 원양어업 통계조사는 2024년 8월 31일 공표되어 공표 예정 일인 2023년 8월과 동일

#### 4. 통계 작성방법의 비교성

□ 통계의 개념 동일 여부

- 통계의 개념은 매년 동일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연도별 조사 결과의 비교와 일관성 있는 통계 분석이 가능함

□ 분류체계 동일 여부

- 일부 변경사항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매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었음

변경된 분류기준

분류기준	기존	변경	비고
조직규모	(2014) ① 대기업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체 ② 중소기업 : ㉞ 종사자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	(2015) ① 대기업 : 없음(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②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견기업 추가

	<p>하,          ④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 1,000억 원 이상 또는 평균 매출액 1,500억 원 이상인 경우 제외          (2018)          ① 대기업 : 없음(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② 중견기업 : 평균(연간)매출액 1,000억 원 초과          ③ 중소기업 : 평균(연간)매출액 1,000억 원 이하</p>	<p>: 평균(연간)매출액 1,000억 원 초과          ③ 중소기업 : 평균(연간)매출액 1,000억 원 이하          (2019)          ① 대기업 : 없음(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② 중견기업 : 중기업, 소기업 기준 초과한 경우          ③ 중기업 : 어업 기준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000억원 이하          ④ 소기업 : 어업 기준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80억원 이하</p>	<p>○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중기업 소기업으로 분류</p>
<p>산업분류</p>	<p>(2015)          · 원양어업, 제조업, 도소매업, 기타</p>	<p>(2016)          · 원양어업, 기타</p>	<p>○ 기존 매출액 비중에 따른 산업종류 구분(원양어업, 도소매업, 제조업, 기타)으로는 도소매업, 제조업, 기타 기업체 수가 2개 이하로 마스킹 처리되므로 원양어업과 기타로 구분하여 산업분류별 자료가 보여질 수 있도록 결과표 변경</p>

□ 분류기준 변경 전·후 비교분석

○ 조직규모

- 기존 대기업, 중소기업의 조직규모 분류에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체는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이용자에게 기업규모면에서 잘못 인식될 수 있었으나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으로 조직규모를 변경함에 따라 중견기업으로 분류되어 원양업계의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음

○ 산업분류

- 기존 산업분류는 원양어업, 제조업, 도소매업, 기타로 구분하였으나 통계법에 따른 개별 정보 보호를 위해 응답자 수가 2-3개 이하의 결과항목은 마스킹(\*\*\*) 처리하여 결과는 미공개됨
- 원양어업, 기타로 분류함에 따라 마스킹처리 없이 모든 결과표가 공개됨

□ 조사 기준 시점 동일 여부

- 전년도 말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었음

## □ 조사 항목 동일 여부

○ 조사 항목들의 세분화 등 다음 표와 같이 수정되었음

변경된 조사기준

조사기준	기존	변경	비고
성별 구분	(2013) ○ 남, 여 구분 없음	(2014) ○ 남, 여, 계로 구분	○ 여성가족부의 성별구분 통계 작성 요청사항 반영하여 성별 구분
종사자 구분	(2013) ○ 근로자 구분 - 상용근로자 - 임시및일용근로자 - 기타종사자 - 승선원(한국인, 외국인)	(2014) ○ 근로자 구분 - 상용근로자 · 선원(한국인, 외국인) - 임시및일용근로자	○ 기간에 따라 근로자는 상용, 임시, 일용으로 구분되고 기업경영분석 등 타 통계에서는 기타종사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비교가능성 고려하여 기타종사자 삭제
재무상태표	(2013) ○ 유동자산 - 당좌자산 - 재고자산  ○ 비유동자산 - 투자자산 - 유형자산 - 무형자산 - 기타비유동자산  ○ 유동부채 ○ 비유동부채	(2014) ○ 유동자산 - 당좌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기타당좌 자산 - 재고자산 ○ 비유동자산 - 투자자산 - 유형자산 · 토지 · 설비자산(건축·구축물, 기계 장치, 선박·차량·운반구, 기타설비자산) · 건설중인자산 · 기타유형자산 - 무형자산 - 기타비유동자산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 기타유동부채 ○ 비유동부채 - 장기차입금 - 기타비유동부채	○ 현금비율지표 산출 위해 당좌자산의 하위항목(현금 및현금성자산) 추가 ○ 별도문항(15.유형자산)으로 조사하던 내용을 비유동자산의 유형자산 하위항목으로 추가하여 조사 ○ 차입금의존도지표 산출을 위해 단기차입금 항목 추가 ○ 차입금의존도지표 산출을 위해 장기차입금 항목 추가
손익계산서	(2013) ○ 매출액 ○ 매출원가 ○ 판매비와관리비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 법인세비용 ○ 당기순손익	(2014) ○ 매출액 ○ 매출원가 ○ 매출총손익 ○ 판매비와관리비 - 급여 - 퇴직급여 - 복리후생비 - 수도광열비 - 임차료 - 감가상각비 - 접대비 - 광고선전비	○ 반올림으로 인한 합계 불일치가 발생하여 단위변경 - 결과표 단위는 백만원으로 동일 ○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등 참고하여 항목추가 ○ 별도문항(17.판매비와관리비)으로 조사하던 내용을 판매비와관리비 하위항목으로 추가하여 조사 ○ 부가가치지표 등 산출을 위해 이자비용 항목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료</li> <li>- 운반·하역·보관·포장비</li> <li>- 대손상각비</li> <li>- 지급수수료</li> <li>- 기타판매비와관리비</li> <li>○ 영업손익</li> <li>○ 영업외수익</li> <li>○ 영업외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자비용</li> <li>- 기타영업외비용</li> </ul> </li> <l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li> <li>○ 법인세비용</li> <li>○ 당기순손익</li> </ul>	
제조원가 명세서	(2013) ○ 원재료비 ○ 연료비 ○ 전력비 ○ 용수비 ○ 외주가공비 ○ 수선비	(2014) ○ 당기총제 조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료비</li> <li>- 노무비</li> <li>-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료비</li> <li>· 전력비</li> <li>· 가스수도비</li> <li>· 외주가공비</li> <li>· 수선비</li> <li>· 기타경비</li> </ul> </li> </ul> ○ 기초재공품원가 ○ 기말재공품원가 ○ 타계정대체액 ○ 당기제품제조원가	○ 반올림으로 인한 합계 불일치가 발생하여 단위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과표 단위는 백만원으로 동일</li> </ul> ○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등 참고하여 항목추가 및 용어변경
제조원가 명세서	(2015) ○ 당기총제 조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료비</li> <li>- 노무비</li> <li>-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료비</li> <li>· 전력비</li> <li>· 가스수도비</li> <li>· 외주가공비</li> <li>· 수선비</li> <li>· 기타경비</li> </ul> </li> </ul>	(2016) ○ 당기총제 조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료비</li> <li>- 노무비</li> <li>-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료비</li> <li>· 전력비</li> <li>· 가스수도비</li> <li>· 외주가공비</li> <li>· 수선비</li> <li>· 감가상각비</li> <li>· 기타경비</li> </ul> </li> </ul>	○ 원양어업은 고정비가 크며 이에 따른 감가상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제조원가-당기총제조비용-경비에서 감가상각비 개별 항목으로 분리
수출국 추가	(2015) ○ 주요수출국	(2016) ○ 수출국	○ 어종별 국가별 수출현황 결과표 추가를 위해 주요 수출국 조사에서 전체 수출국 조사로 변경
허가기준 추가	<추가>	(2017) ○ 허가기준 기업체 및 어선 수	○ 원양어업통계조사의 기업체 및 어선 현황은 실조업을 기준으로 작성 * 정부 및 연구기관 등은 허가기준으로 원양어업 관리

			○ 원양업체 및 어선의 전체 규모가 보여질 수 있도록 기존 결과표(실조업기준)에 허가기준 기업체 및 어선 수 추가
--	--	--	---

**□ 조사 실시 시기 동일 여부**

- 매년 5월~6월 중 조사가 시행됨
  - 2018년 조사부터 공표시기 단축(9월→8월)로 인한 4월~5월 중 조사 시행

구분	조사 기간
연구용역	'12.7.9. ~ 8.10.
1차	'13.5.13. ~ 5.24.
2차	'14.6.9. ~ 6.27.
3차	'15.5.26. ~ 6.19.
4차	'16.5.16. ~ 6.10.
5차	'17.5.22. ~ 6.16.
6차	'18.4.23. ~ 5.18.
7차	'19.4.22. ~ 5.17.
8차	'20.4.20. ~ 5.14.
9차	'21.4.19. ~ 5.13.
10차	'22.4.18. ~ 5.12.
11차	'23.4.17. ~ 5.11.
12차	'24.4.15. ~ 5.9.

**□ 변경된 경우 변경 전·후 비교분석 결과**

- 성별 구분
  - 남, 여 구분 추가로 성별 통계 작성 가능
- 경영실태(재무상대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세분화
  - 항목 세분화, 단위 변경 등으로 타 통계와 비교 가능하며 세부적인 분석이 가능
- 수출국 추가
  - 기존 주요 수출국 조사에서 전체 수출국 조사로 변경하여 수출국별 수출현황 비교분석 가능
- 허가기준 추가
  - 허가어선 기준 기업체, 어선 현황을 추가하여 국내 원양업체 및 어선의 전체 규모 확인 가능

**5. 시계열 비교성**

**□ 시계열 발생 원인과 변경된 자료 이용 시 고려사항**

- 1차년도 조사부터 현재까지 조사가 단절없이 이루어져서 시계열적인 변화의 비교가 가능함
- 다만, 조사표별로 일부 문항 및 보기항목이 삭제되고 추가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각 차수별 변경사항을 보고서 내 작성함으로써 전후 비교가 가능함

○ 주요변수 변동내역

- 종사자 구분 : 근로자 구분이 2014년 이후로 변경

조사기준	기존	변경	변경사유
종사자 구분	(2013) ○ 근로자 구분 - 상용근로자 - 임시및일용근로자 - 기타종사자 - 승선원(한국인, 외국인)	(2014) ○ 근로자 구분 - 상용근로자 · 선원(한국인, 외국인) - 임시및일용근로자	○ 기간에 따라 근로자는 상용, 임시, 일용으로 구분되고 기업경영분석 등 타 통계에서는 기타종사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비교가능성 고려하여 기타종사자 삭제

- 재무상태표 : 하위 항목의 세분화로 일부 항목 추가

조사기준	기존	변경	변경사유
재무상태표	(2013) ○ 유동자산 - 당좌자산 - 재고자산 ○ 비유동자산 - 투자자산 - 유형자산 - 무형자산 - 기타비유동자산 ○ 유동부채 ○ 비유동부채	(2021) ○ 유동자산 - 당좌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기타당좌자산 - 재고자산 - 기타유동자산 ○ 비유동자산 - 투자자산 - 유형자산 · 토지 · 설비자산(건축·구축물, 기계장치, 선박·차량운반구, 기타설비자산) · 건설중인자산 · 기타유형자산 - 무형자산 - 기타비유동자산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 기타유동부채 ○ 비유동부채 - 장기차입금 - 기타비유동부채	○ 현금비율지표 산출 위해 당좌자산의 하위항목(현금및현금성자산) 추가 ○ 별도문항(15.유형자산)으로 조사하던 내용을 비유동자산의 유형자산 하위항목으로 추가하여 조사 ○ 차입금의존도지표 산출을 위해 단기차입금 항목 추가 ○ 차입금의존도지표 산출을 위해 장기차입금 항목 추가 ○ 합계 오류문제 해결을 위한 기타유동자산 항목 추가

- 손익계산서 : 하위 항목의 세분화로 일부 항목이 추가

조사기준	기존	변경	변경사유
손익계산서	(2013) ○ 매출액	(2014) ○ 매출액	○ 반올림으로 인한 합계 불일치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출원가</li> <li>○ 판매비와관리비</li> <li>○ 영업외수익</li> <li>○ 영업외비용</li> <li>○ 법인세비용</li> <li>○ 당기순손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출원가</li> <li>○ 매출총손익</li> <li>○ 판매비와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여</li> <li>- 퇴직급여</li> <li>- 복리후생비</li> <li>- 수도광열비</li> <li>- 임차료</li> <li>- 감가상각비</li> <li>- 접대비</li> <li>- 광고선전비</li> <li>- 보험료</li> <li>- 운반·하역·보관·포장비</li> <li>- 대손상각비</li> <li>- 지급수수료</li> <li>- 기타판매비와관리비</li> </ul> </li> <li>○ 영업손익</li> <li>○ 영업외수익</li> <li>○ 영업외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자비용</li> <li>- 기타영업외비용</li> </ul> </li> <l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li> <li>○ 법인세비용</li> <li>○ 당기순손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생하여 단위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과표 단위는 백만원으로 동일</li> </ul> </li> <li>○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등 참고하여 항목추가</li> <li>○ 별도문항(17.판매비와관리비)으로 조사하던 내용을 판매비와관리비 하위항목으로 추가하여 조사</li> <li>○ 부가가치지표 등 산출을 위해 이자비용 항목추가</li> </ul>
---	--	--

- 제조원가명세서(2014) : 하위 항목의 세분화로 일부 항목이 추가

조사기준	기존	변경	변경사유
제조원가명세서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재료비</li> <li>○ 연료비</li> <li>○ 전력비</li> <li>○ 용수비</li> <li>○ 외주가공비</li> <li>○ 수선비</li> </ul>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기총제조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료비</li> <li>- 노무비</li> <li>-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료비</li> <li>· 전력비</li> <li>· 가스수도비</li> <li>· 외주가공비</li> <li>· 수선비</li> <li>· 기타경비</li> </ul> </li> </ul> </li> <li>○ 기초재공품원가</li> <li>○ 기말재공품원가</li> <li>○ 타계정대체액</li> <li>○ 당기제품제조원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올림으로 인한 합계 불일치가 발생하여 단위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과표 단위는 백만원으로 동일</li> </ul> </li> <li>○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등 참고하여 항목추가 및 용어변경</li> </ul>

- 제조원가명세서(2016) : 경비 세부항목의 세분화로 감가상각비 추가

조사기준	기존	변경	변경사유
제조원가명세서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기총제조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료비</li> <li>- 노무비</li> </ul> </li> </ul>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기총제조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료비</li> <li>- 노무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양어업은 고정비가 크며 이에 따른 감가상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제</li> </ul>

	- 경비 · 연료비 · 전력비 · 가스수도비 · 외주가공비 · 수선비 · 기타경비	- 경비 · 연료비 · 전력비 · 가스수도비 · 외주가공비 · 수선비 · 감가상각비 · 기타경비	조원가-당기총제조비용-경비에서 감가상각비 개별항목으로 분리
--	---	--	----------------------------------

- 허가기준 추가 : 허가기준 기업체 및 어선수 신규 추가

조사기준	기준	변경	변경사유
허가기준 추가	<추가>	(2017) ○ 허가기준 기업체 및 어선수	○ 원양어업통계조사의 기업체 및 어선 현황은 실조업을 기준으로 작성 * 정부 및 연구기관 등은 허가기준으로 원양어업 관리 ○ 원양업체 및 어선의 전체 규모가 보여질 수 있도록 기존 결과표(실조업기준)에 허가기준 기업체 및 어선 수 추가

## 6. 국가간 비교성

동일한 조사목적에 갖는 외국 통계 명칭과 개요

○ 해외의 비교가능한 통계가 없음

동일한 목적을 갖는 외국 통계와의 직접 비교 가능 여부, 가능하지 않은 경우 사유 및 이용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한 검토

○ 해당사항 없음

통계자료를 국제 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국제기구명, 제공항목 등

○ 해당사항 없음

국가 간 주요 통계 내용을 비교한 통계표, 그래프

○ 해당사항 없음

## 7. 동일영역 통계와 일관성

동일하거나 유사한 통계의 명칭과 개요

## <한국선원통계>

### ○ 개요

통계명	한국선원통계	작성기관	해양수산부
작성주기	매년	조사기준시점	작성기준년도 12.31
조사기간	작성기준년도 익년 1월1일 ~ 3월31일	공표시점	작성대상년도 익년 5월
통계종류	일반통계	공표방법	보고서,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조사목적	선원의 근로실태를 파악하여 선원근로기준의 개선과 아울러 선원수급, 복지정책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며, 해양수산 미래 인적자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 도모		
조사근거	승인번호 제 123030호, 승인일자 2006-09-19 선원법 제81조 및 제107조 통계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승인통계지정, 통계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통계공표		
조사대상	선원법 적용대상 사업장 * 5톤 이상 선박(어선의 경우 20톤 이상) * 해양수산부 지정교육기관으로 해양계 4개 학교, 수산계 14개 학교 전년도 졸업생		
조사방법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각 선사에 조사표 배부 후 자료 취합		
유사점	원양어선에 탑승하는 선원 수 및 임금에 대한 조사		
차이점	원양어업 통계조사의 조사대상은 원양업체 및 어선 중 조사대상기간 조업실적이 있는 업체 및 어선이며 한국선원통계는 원양어선, 연근해어선, 외항선, 내항선 등을 포함함		

### ○ 주요 결과 비교

- 비교항목 : 원양어선 및 선원현황
- 작성기준
  - 한국선원통계는 조사기준시점(12.31.) 현재 취업하고 있는 선원법 적용 대상 사업장을 조사대상으로 작성기준년도 익년 1.1.~3.31.에 조사 실시함
  - 원양어업 통계조사는 작성대상기간(1.1.~12.31.)에 조업실적이 있는 어선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일반적으로 한국선원통계보다 조사대상 규모가 큼(원양어선에 한함)
- 주요 조사 결과 비교
  - 원양어업 통계조사와 한국선원통계 간 선박현황, 선원현황에 차이가 보이며 이는 통계간 조사대상 차이에 의한 것임.
  - 특히 외국인 선원의 경우 한국선원통계는 외국인선원관리지침(해양수산부고시 제 2017-171호)에 따라 조사기준시점(12.31.)의 송입업체 고용현황 보고내역으로 통계작성하며 원양어업 통계조사는 작성대상기간(1.1.~12.31.)에 고용된 선원현황을 개별 원양업체 조사 실시하여 조사대상 및 조사기간에 따른 차이 발생

## <어업생산동향>

### ○ 개요

통계명	어업생산동향	작성기관	통계청
작성주기	매월	작성대상년도	1일 ~ 말일
공표주기	매월	공표시점	조사기준월 익월
통계종류	조사통계	공표방법	언론, 인터넷, 간행물
조사목적	수산물의 수급정책, 한일, 한중 어업협정, 수산자원 회복사업, 원양산업 육성 등 수산업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및 수산관련 연구기관·단체 등의 연구 분석 및 평가 자료로 활용 제공		
조사근거	통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한 지정통계(제123022호)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근해어업, 해면양식업, 내수면어업, 원양어업</li> <li>- 계통 수협 위판장(175개소)</li> <li>- 비계통 전수(2,350호), 비계통 표본(3,000개 조사대상처), 내수면어로(200호), 양식(1,600호) *2021조사 기준</li> </ul>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통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수산부 수산DB→통계청(연계) →지방통계청(내검)→통계청(공표)</li> </ul> </li> <li>- 비계통조사(표본·전수·양식품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가→조사원→지방통계청→통계청</li> </ul> </li> <li>- 원양어업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수산물과학원→해양수산부 수산DB→통계청</li> </ul> </li> </ul>		
유사점	원양어업 생산량 및 생산금액 집계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업생산동향은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내수면어업 등을 포함하며 원양어업의 경우 품종별, 해역별까지 집계함</li> <li>- 원양어업 통계조사는 해구별 자료를 집계하여 어업생산동향보다 세부적인 자료 조회 가능</li> </ul>		

### ○ 주요 결과 비교

- 비교항목 : 원양어업 생산현황
- 작성기준
  - 원양어선은 매일 조업보고시스템을 통해 조업실적을 입력하며 해당 실적을 국립수산물과학원에서 검토 및 확정함
  - 원양어업 통계조사, 어업생산동향은 확정된 조업실적 자료를 가공하여 결과표 작성함

## <등록어선통계>

### ○ 개요

통계명	등록어선통계	작성기관	해양수산부
작성주기	매년	작성대상년도	1.1~12.31
공표주기	매년	공표시점	작성기준년도 익년 6월
통계종류	보고통계	공표방법	인터넷, 간행물
조사목적	어업의 기본적 생산수단인 어선의 등록사항을 파악하여 수산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국가승인통계로서 사회 전반에 걸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조사근거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근거하여 승인된 일반통계 승인번호 제 123013호, 승인일자 1978-08-24		

조사대상	전국 시·군·구에 등록된 모든 어선
조사방법	행정집계
유사점	원양어선 현황 집계
차이점	등록어선통계는 등록 기준 어선 현황, 원양어업 통계조사는 허가 및 실조업기준 어선현황 공표

○ 주요 결과 비교

- 비교항목 : 원양어선 현황
- 작성기준
  - 등록어선통계는 각 구·시·군별 원양어선 등록현황(행정자료)을 집계, 공표함
  - 원양어업 통계조사는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조업실적이 있는 어선을 조사대상으로 함
- 주요 조사 결과 비교
  - 등록어선통계와 원양어업 통계조사 간 어선 수 차이가 보이며 이는 조사기준(등록, 실조업기준) 차이로 보임

□ 동일영역 통계 간 작성목적/대상/항목, 통계수치의 유사·차이점 및 이유, 이용 시 고려사항

○ 한국선원통계 관련

<선박현황>

- 원양어업 통계조사: 조사기준년도 12월 31일 기준 해양수산부로부터 원양허가를 받은 모든 어선 중, 조사기준년도 1월 1일~12월 31일 기간 내 조업실적이 있는 어선 대상. 원양협회로부터 자료를 받아 선박현황 작성
- 한국선원통계: 조사기준년도 12월 31일 현재 운항 중인 어선 대상.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로부터 자료를 받아 선박현황 작성

<선원현황>

- 원양어업 통계조사: 조업 실적이 있는 어선의 조업시 평균 조업 선원 수 기입
- 한국선원통계: 조사기준년도 12월 31일 현재 조업중인 선원. 해양수산부 승하선자 DB 활용. 12월 31일 기준 여기 종료한 선박의 선원 수는 포함되지 않음.

<선원임금>

- 원양어업 통계조사: 조업 기간에 대한 월평균임금 공표. 1월 1일~12월 31일 기간 선원에게 지급한 연간급여액과 승선기간 조사하여 월평균임금=(연간 급여액/평균 조업 선원 수)/승선기간 계산
- 한국선원통계: 1개월에 대한 월평균임금 공표. 조사기준년도 12월 31일 기준 최근 3개월 지급한 월평균 임금 조사. 생산수당은 전체 생산수당을 12로 나누어 계산(12개월)

<기타>

- 외국인 선원 현황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로부터 자료를 받아 작성하며, 원출처는 원양산업협회임. 외국인선원 임금은 조사하지 않아 공표하지 않음.

## 8. 작성주기 차이에 의한 통계의 일관성

### (작성주기가 다른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통계의 명칭과 개요

- 선원 및 생산현황의 경우 한국선원통계, 어업생산동향과 일부 중복되지만 원양어업 통계 조사는 해당 통계보다 세부적인 자료를 제공하며 그 외 기업체 경영현황, 수출현황, 어선 어로원가 현황 등은 유사 통계 없음

### (작성주기가 다른 경우) 동일영역 통계 간 작성목적/대상/항목, 통계수치의 유사·차이 점 및 이유, 이용 시 고려사항

- 생산통계 관련, 어업생산동향은 월간 공표 통계이며, 원양어업통계조사는 연간 공표 통계임. 원양어업 특성상, 어선에서 보고되는 생산량과 양륙 후의 생산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생산 통계의 변동이 다수 있음. 따라서 잠정치로 공표되는 월간 통계와 일부 월의 데이터가 수정되어 집계된 연간통계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9. 잠정치와 확정치의 일관성

- 잠정치와 확정치를 구분하여 결과를 공표하지 않음

### 두 수치가 차이가 나는 요인 및 이용 시 고려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잠정치와 확정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또는 검토

- 해당사항 없음

### 공표 후 오류 수정사항에 대한 내용, 사유, 조치과정, 결과 등 기록·관리

- 해당사항 없음

## 10. 통계의 이용자 서비스

### 통계공표 방법

- 해양수산통계시스템(<https://www.mof.go.kr/statPortal/>)
  - 통계 결과표 제공
  - 담당부서 및 공표예정일 안내
-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https://www.ofis.or.kr/>)
  - 통계 결과보고서 제공

- 통계조사 안내 및 조사원 채용 등 관련자료 제공
- KOSIS(<http://kosis.kr/>)
  - 통계 결과표 제공
  - 통계설명자료(조사표, 조사지침서) 등 제공

□ 국가통계포털(KOSIS) 수록 여부

- 국가통계포털(KOSIS)에 수록되어 서비스되고 있음
  - 주제별-수산-원양어업통계조사

□ 통계서비스 경로별 이용자 접속횟수나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실적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 결과

- 마이크로데이터 관련 해당사항 없음(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 않음)

□ 통계 이용문의 관련 담당자 연락처

- (작성기관)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044-200-5367
- (위탁기관) 한국원양산업과 해외수산협력센터: 044-868-7838

## 11. 통계 설명자료 제공

□ 통계설명자료에 대한 소재 정보

- KOSIS 통계설명자료(<https://www.narastat.kr/metasvc/index.do>)

통계설명자료    통계별설명자료조회    조사표조회    용어조회    승인통계현황    도움말    통합검색    원양어업통계조사

---

검색조건 : 원양어업통계조사    검색확장 :  결과내 재검색

메타 DB 검색건수: 2건

1. 원양어업통계조사	Q 관련항목보기
2. 부산광역시수산업통계	Q 관련항목보기

□ 국가통계포털(KOSIS)에 통계설명자료 제공(통계개요)

- 통계명, 작성기관 및 부서(전화번호), 조사목적, 통계(활용)분야실태, 작성유형, 조사대상 범위, 조사대상 지역, 조사단위 및 조사대상 규모, 적용분류, 조사항목, 조사표, 공표주기, 공시기, 공표범위, 공표방법 및 URL, 조사대상기간 및 조사기준 시점, 조사기간, 조사주기, 조사계속여부, 자료이용시 유의사항, 주요 용어해설, 자료수집방법, 법적근거, 조사연혁, 조사체계, 승인번호, 승인일자, 통계종류 제공

국가통계포털(KOSIS)에 통계설명자료 제공(조사관리)

- 전수/표본관리, 조사업무흐름도, 조사원규모, 조사원교육훈련, 현장조사지도, 무응답률 및 무응답 대처 비표본오차관리 관련자료 제공

국가통계포털(KOSIS)에 통계설명자료 제공(참고자료)

- 작성지침서, 마이크로데이터 비밀보호, 집계표 데이터 비밀보호, 기타 참고자료 제공

간행물 또는 작성기관 홈페이지 등에 통계설명자료 제공(KOSIS 통계설명자료 외)

-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OFIS)에서 이용자용통계정보보고서 제공

## 12. 마이크로데이터 생성·관리

마이크로데이터 생성 방법

- 원자료(Raw Data) 수집
- 해외수산협력센터 통계 담당자가 오류 수정 및 무응답 대체하여 내용검토 후 마이크로데이터 생성
- 마이크로데이터 점검실시

마이크로데이터 관리 방법

- 마이크로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저장하여, 외장하드에 보관

## 13.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여부

- 기업체 정보보호를 위해 마이크로데이터를 외부에 제공하지 않음.(통계청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에 보존용으로 제출)

마이크로데이터에 대한 설명자료

-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서비스를 하지 않아 해당사항 없음(통계청 MDIS(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에 보존용으로 제출시에는 항목 및 코드집, 집계표, 보고서는 함께 제출함)

마이크로데이터 미제공 사유

- 원양어업 특성상 조사대상기업체 수가 40개사 미만으로 매우 적은데다, 특정 어법 및 해역(해구) 등의 정보를 보고 어떤 기업체의 자료인지 추측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보 보호를 위해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음

마이크로데이터 제공/미제공 관련 내부 규정(지침)

-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기업체 식별이 가능한 데이터의 제공을 피하기 위해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음

□ **이용자 맞춤형 통계산출 서비스**

- 최신 데이터에 대한 원양어업 생산 통계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매월 ‘원양어업 생산 동향’을 작성하여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OFIS)에서 제공하고 있음.

**14. 자료 수집, 처리 및 보관 과정의 비밀보호**

□ **자료 수집과정에서 응답자 비밀보호를 위한 지침이나 조치**

- 조사원 교육 시 조사원의 기업체 비밀·정보 누설 금지 및 응답자에게 관련 내용 고지하도록 교육

**2) 기업체의 비밀·정보 누설 금지**

- 조사원은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내용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통계법」 제33조, 제34조)  
-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통계법」 제39조)

- 조사원 근로계약서 상 보안 유지에 대해 고지

**제8조 (의무 및 변상책임)**

“을”은 「통계법」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에 규정된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위반시 「통계법」 제39조(벌칙)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는다.

- ① “을”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및 법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조사표에서 통계법에 따른 비밀·정보 보호됨을 안내



**2024 원양어업 통계조사  
조사표**



- 본 조사는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의한 승인통계로, 국내 원양업체의 생산·수출·경영실태를 파악하고, 국적선사의 어선별 생산·선원현황 및 어로원가 등을 파악하여 국가의 원양어업 정책수립, 연구기관의 연구분석·평가, 관련 업체의 원양어업활동을 위한 기초정보로 제공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 조사사항에 대하여 통계법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에 따라 성실하게 응답하여야 합니다.
-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작성 목적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 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사항 연락처 : 한국원양산업협회 해외수산협력센터 TEL. 044-868-7838

□ **자료 처리과정에서 응답자 비밀보호를 위한 지침이나 조치**

- 담당자의 보안서약서에 의해 비밀 보호

1.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각종 정보를 해양수산부 장관 및 해외수산센터장과의 사전 승인 없이 무단으로 유출하지 않는다.
2.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기밀에 대해 재직 기간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회장 및 해외수산협력센터장의 허락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3.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유지를 하여야 한다.

자료 보관과정에서 응답자 비밀보호를 위한 지침이나 조치

- 원양어업 통계조사 데이터는 암호화하여 외장하드에 보관하고 담당자가 관리
- 해외수산협력센터 보안지침 제5조 비밀유지 의무

## 15. 공표자료의 비밀보호

공표자료에서 응답자 비밀보호를 위하여 취한 조치나 방법

- 응답자 식별가능성 제거
  - 공표 자료는 집계표로 구성되어 있어 원천적으로 응답자 식별가능성 발생여지 차단
- 마스킹 처리
  - 「통계법」 제31조제2항, 제3항 및 제33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 개별정보 보호를 위해 결과표의 한 개 셀에 응답자 수가 2~3개 이하인 경우 조사대상의 개별정보 보호를 위해 결과표를 미제공하거나 마스킹(\*\*\* ) 처리하여 제공
  - 해당 내용 이용자 유의사항에 고지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과정에서 응답자 비밀 보호를 위하여 취한 조치나 방법

- 해당사항 없음

## 16. 자료 보안 및 접근제한

자료 유실, 유출, 훼손 등을 예방하기 위한 자료보안 관련 지침이나 조치

- (지적재산권) 위탁업체는 원양산업 통계조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지적재산권은 해양수산부에 귀속됨을 인정하며 해양수산부의 동의없이 동 지적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음
- (자료보존) 위탁업체는 업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로부터 제공받거나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기업체 및 개인의 정보를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 IX. 통계기반 및 개선

### 1. 기획 및 분석 인력, 사업예산

#### □ 통계기획 및 분석 인력

- 담당부서: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 업무별 담당 인력: 2명

#### □ 위탁기관 또는 수탁기관의 통계기획 및 분석 인력

- 위탁기관: 한국원양산업협회 해외수산협력센터
- 업무별 담당 인력: 1명

### 2. 통계위탁 조사

#### □ 통계작성을 위한 위탁업무 관리 사항

- 민간위탁 지침

민간위탁 지침	사업계획서
1. 사업계획수립 및 사업신청 단계 ○ 자체 홍보계획 수립·실시(자체 게시판 또는 홍보용 책자 등을 통한 홍보)	나. 조사준비 ○ 보도자료 작성·배포(4월) - 업체의 적극적인 조사협조 유도로 조사원의 원활한 업무수행 도모 ○ 조사실시 안내 및 업체별 응답담당자 배정 요청(4월) - 업체별 응답담당자 지정 요청 - 조사실시 안내 및 협조 공문 발송
3. 조사대상자 선정 단계 ○ 선정방식 : 모집단의 변동사항 파악·정비 후 조사대상자 선정	나. 조사준비 ○ 업체별, 어선별 명부 작성(3월) - 업체별, 어선별 생산·수출현황 파악 및 조사명부 작성
4. 이행점검단계 ○ 원양어업 통계조사 활용을 위해 이용자 현황 파악 및 의견 수렴 등을 실시 ○ 조사지침서 등 현장조사 자료를 작성하여 조사담당자에 대한 교육 실시	가. 조사기획 ○ 이용자 설문조사 및 사전회의(1~2월) - 통계내용 검토 및 협의사항 안내 나. 조사준비 ○ 조사원 교육(4월) - 교육실시 전에 업무분장을 실시한 후, 최소한의 교육을 이수토록 운영 - 조사개요, 조사방법, 조사지침 등 교육 및 조사표 작성 실습
○ 조사 대상에 대한 면접조사 및 온라인조사, 문헌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및 내부 관계자를 통해 작성된 자료에 대한 검증을 실시	라. 자료처리 ○ 결과표 작성 및 결과분석(7~8월) - 종합내검 및 결과보고서 작성 - 결과분석 관련 자문회의 개최
○ 분석된 자료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및 승인 받	마. 결과공표

은 후 공표 및 간행물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양어업-단독기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수산부 및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 게시(8월)</li> <li>- 원양어업 통계조사보고서 발간(12월)</li> </ul> </li> </ul>
-----------------	--

**□ 조사가 완료된 후 수탁기관으로부터 조사와 관련하여 제출받고 있는 자료 목록**

- 사업 완료 후 수탁기관은 보안기능이 있는 USB에 자료를 담아 제출
  - 조사기획서(사업계획서)
  - 조사명부 및 응답자 목록
  - 조사표 및 조사지침서, 작성요령서, 내용검토지침서
  - 원데이터, 마이크로데이터 등 데이터류
  - 현장조사 평가보고서, 자료처리 보고서 등
  - 최종 보고서

**3. 통계 품질관리 및 개선**

**□ 통계품질제고 가능성에 대한 검토 결과나 개선 발전계획의 수립 또는 추진 실적**

- 조사업무 벤치마킹을 위한 자문 요청 회의(10.21.)
  - 일시/장소 : ‘22.10.21. / (주)리서치앤리서치
  - 비표본오차, 무응답 감소를 위한 현장조사 방법, 오류감소를 위한 내검절차, 무응답대체방법, 통계청 정기통계품질진단 대비 방법
- 원양어업 통계조사 조사표 변경을 위한 전문가 회의(10.26.)
  - 일시/장소 : ‘22.10.26. / 세종마이스센터
  - ‘종사자현황’ 등 정의 및 용어 변경 필요성 검토

**□ 최근 3년간 통계 지적사례 및 조치결과**

- 해당사항 없음

**□ 과거 통계품질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과제 이행내역 (중점관리과제)**

- 정기통계품질진단
  - 분류기준의 명확화(‘18) : 관련 법령분류반영 및 전문가 검토 후 재분류 분류기준의 명시
  - 내용의 연속성 확보(‘18) : 홈페이지에 타 통계DB링크, 유사 통계표 엑셀 제공 등
- 수시통계품질진단
  - 조사표 항목 개선(‘20) : 행정자료 활용으로 응답오류 감소
  -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검토(‘20) : 업체의 정보 보호를 위해 비제공

## X. 참고문헌

### 1. 국제기준 또는 권고안

FAO

- Fishing Gear type

- <https://www.fao.org/documents/card/en/c/cb4966en/>

### 2. 동일통계 외국자료

FAO

- Global Capture Production

- <https://www.fao.org/fishery/en>

### 3. 기타 문헌

해당 통계가 수록된 국내외 보고서

- 해양수산 통계연보(해양수산부)

- <https://www.mof.go.kr/statPortal/bbs/publication/list.do>